

南北交易事例集(Ⅲ)

1994

統一院

南北交易事例集(Ⅲ)

목
차

I. 반입사례	3
1. 낙화생 (한국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 / 5	
2. 호두 (미원) / 22	
3. 냉동명태 (대양실업) / 34	
4. 로열젤리 (효원물산) / 44	
5. 백복령 (한백산업) / 63	
6. 백출·창출 (대하약업상사) / 78	
7. 무연탄 (쌍용) / 87	
8. 평양소주 (남북홍업) / 96	
II. 반출사례	119
1. 화학제품 (미래물산) / 121	
2. 선박용품 (기드엑심) / 127	
III. 위탁가공사례	139
1. 남여자켓 (대우) / 141	
□ 참고자료	149
1. 남북경제교류협력 실무안내 / 151	
2. '93년도 북한 GNP 추정결과 / 177	
3.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법령 / 185	

I. 반입사례

1. 낙화생(한국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
2. 호두(미원)
3. 냉동명태(대양실업)
4. 로열젤리(효원물산)
5. 백복령(한백산업)
6. 백출·창출(대하약업상사)
7. 무연탄(쌍용)
8. 평양소주(남북홍업)

1. 낙화생 2차 반입사례

- 한국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

가. 교역의 동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법률 제4239호 1990. 8. 1)이 공포되면서 우리 조합은 정부가 수입에 의존하는 낙화생을 기후, 풍토 조건이 거의 같은 북한산의 반입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방안으로 검토한 후 1차 반입(1991. 7. 20)을 시도하였으나 남포에서 선적한 화물을 중국에서 환적하였다 는 단순한 이유로 제3국산(중국산)의 위장반입 혐의로 인하여 물품이 압류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면서 많은 중소업자인 당 조합의 조합원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동시에 당 조합은 밀수업체로 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며 1년 여 법정투쟁끝에 북한산으로 확인되었으나 그간의 조합원의 경제적인 손실과 조합의 명예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추되어 이를 만회하여 명예를 회복하고자 2차 반입을 구상하게 되었다.

나. 2차 반입의 입안

1차 반입의 쓰라린 경험을 토대로 현실성있는 자료를 수집하면서 많은 인내와 자긍심 또한 동족간의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눈앞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이익보다는 남북교류협력 더 나아가 통일의 역군이라는 사명감의 토대위에 대북교역이 성사되게 노력하겠다는 자세로 임하였다.

1차 교역시 접촉하여 그래도 어느정도 친숙해진 북한무역상사에 2차 교역의사를 전달하면서 우리는 본격적인 접촉을 시도하여 북한에서의 낙화생 생산근황을 약간이나마 알 수 있었다.(주 생산지 : 황해남북도, 평안남도 서해안, 강원도 남부 및 야산 개간지 등) 또한 몇번의 접촉으로 우리는 서로 교역의 입장을 교환하였다.(공급가능 물량 및 품질을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한가지 터득한 것은 그들도 우리의 동족이라는 것, 무역실무가 미숙하다는 것등.)

그러나 실제로 교역협상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장애가 가로막고 있었는바, 첫째, 대북한 교류에 대한 이해부족과 기준이 없다는 점 둘째, 교역의 성사를 위한 정보교환이 부족하다는 점 셋째, 무역실무가 어둡다는 점 등이 교역 추진의 어려움이었다. 또한 국내상사간의 과당경쟁은 그들로 하여금 좋지않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가격결정에도 많은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정부 승인과정에서부터 선별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접촉을 거듭하면서 실질적인 상담에 들어가 견본 제시를 요구하여 품질을 검토한 결과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에서 수입하는 물건보다 품질이 우수하였다고 판단되어 반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다. 반입을 위한 계약

품질과 수량의 결정으로 다음 단계인 가격 및 인수 조건이 또 한고비가 되었다. 북한의 수출물품 가격결정은 “정부유일 가격”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조건을 내세워 자기내 가격에 맞추라는 이야기다. 상거래에서 흥정과 국제가격, 주변 여건의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역을 하려는 것이다. 1차 교역시 가격문제는 당 조합이 중국측과 협의한 후 중국과 북한이 재차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나 가격을 가지고 직접 상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가격협상을 위한 3일간의 마라톤 협상은 1차적으로 무산되었다. 조선대성무역상사 심양지사장이라는 책임자였으나 계약협상에는 본국에서 온 김과장이라는 사람의 결심이 더 우선하는 것 같았다.

첫째날, 서로의 가격 제시에서 우리측의 입장은 첫째, 국제 가격과의 비교 둘째, 현재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가격 비교 셋째, 유통공사에서 중국산을 수입하는 가격 등을 비교 설명하고 우리의 조건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측은

자기들이 제시한 가격은 “정부의 유일가격”이라 변동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루한 협상이 끝도 없을것 같아 가격문제는 뒤로 미루고 다른 일상의 대화로 분위기를 유도하면서 자연작전을 쓰기로 하였다.

마침 그날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일이었다. 투표에 참가하지 못한 나에게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면 처벌을 당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기권도 무방하다고 하고 당신들의 100% 투표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국내 거주자는 물론 해외 거주자, 여행자도 상주국 공관에 반드시 출두하여 투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거리감이 있는 행동이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나의 기권이 이해가 안간다는 표정이었으며 많은 출장비를 들여 여기까지 와서 투표도 못하고 상담도 실패하면 본국에 가서 처벌을 받지 않겠냐는 걱정어린 위로도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상거래를 떠나 동족간의 진정한 동포애로 받아 들이고 싶었다. 장시간 대화로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제안하니 사양했다. 몇차례 접촉에서의 경험으로 사양을 예견하였으므로 섭섭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2명 이상이 있을 때는 예외없이 사양하는 것이다. 아마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둘째날, 가격문제를 제외하고 협상이 가능한 문제부터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검수에 있어서 제시한 견본을 가지고 당 조합이 지정하는 검수인이 선적전 선적항에서 동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포장단위는 50KG/PP마대로 한다. 셋째, 매 포장 중간부위에 D.P.R KOREA를 선명하게 인쇄 한다. 넷째, 운송방법은 북한의 남포에서 선적하여 인천이나 부산으로 직항해야 한다. 다섯째, 선박은 양측의 협의하에 국적선 또는 제3국적선으로 한다. 여섯째, 대금결제는 물품이 한국 항구에 도착하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결제은행에 도착한 후 결제한다. 일곱째, 선적기일은 신용장 개설 후 45일 이내로 한다는 등 부수적인 문제점에 대한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격문제에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여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하였으나 북한의 사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강경입장을 취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전화상으로 지금까지의 상담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며, 많은 시간과 그동안의 호의에 감사한다는 말을 하며 내일 중국을 출발할 것이라고 하니 상당히 당황한 빛을 보이는 것이었다. 심양을 출발하기에 앞서 조선대성무역상사 심양지사장이 우리를 방문하여 그동안에 협의된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고 제의하여 왔다. 우리의 입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재정리는 무의미하다고 하자, 우리의 입장은 본국에 설명하여 최대한의 합의점을 찾자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가격에 대한 비준을 다시 받아올 것이니 좀 더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다. 상거래 특히 국가간의 무역에서 “참고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승산이 있다”는 옛 성현의 말에 따라 서로가 노력하여 보자는 여운을 남기고 헤어졌다. 헤어지기야 앞서 우리가 조사 정리한 가격에 대한 모든 자료를 넘겨주고 국가간 거래에 있어서 유일가격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속적인 거래를 위하여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상도의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헛되이 되지않기를 바란다면 좋은 소식이 빠른 시일내에 오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심양을 출발하였다.

라. 가격의 결정

농산물의 가격은 작황(생산수량), 산지, 품위, 생산후 보관 상태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관계로 적정가격의 합의점을 찾기란 매우 힘든 것이므로 품질감정의 노하우가 없이는 더욱 가격결정이 어려운 것이다. 대부분 수입상의 수입가격 결정은 객관적인 문헌상의 자료와 국내시장동향 및 일정마진을 부과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당 조합에서의 가격 결정은 이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것은 가격이전에 실수요자가 당 조합원이고 낙화생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용도별 품질의 품위를 구별할 수 있고 저장상태와 저장기간에 따른 품질변화가 가격의 변수인 것을 경험적으로 터득한 때문인 것이다. 바로 이것

이 농산물 가격결정의 노하우인 것이다.

또한 농산물의 반입시기는 국내 생산농가 보호측면에서 시장동향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공산품과는 달리 연중 1회 수확하는 농산물의 수입은 생산농가의 출하시기를 피해야만 국내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반입의 시기도 국내 생산품의 소진상태를 감안하여 거국적인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의 가격결정은 급할것이 없었다. 1월 중순 홍콩을 통하여 가격수정 제의가 왔다. 그러나 국내 여건상 만족하지가 않아 다시 검토하자고 회신을 하면서 국제가격동향 및 북한의 보관상태를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며, 한편으로는 북한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기로 하였다.

3월 하순경 수정가격을 통보 받았다. 이것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치이며 다시는 검토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였다. 품질대비 가격에서 만족할 만한 가격 제시이기에 응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재차 견본을 요구 검토한 결과, 반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체결에 임하였다.

당 조합이 실수요자 단체가 아닌 수입상이었다면 이러한 복잡하고 참기 힘든 인내는 없었을 것이며, 1차 반입시의 쓰라린 경험과 관계당국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한 당 조합의 불명예의 누명이 없었더라면 지금보다는 편안한 자세에서 성사되었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의 노하우를 더 얻게 되었다.

마. 반입시기(L/C 개설)의 결정

농산물 특히 낙화생의 반입시기는 4~6월이 적기일 것으로 사료되며 늦어도 우기(7월 하순~8월 중순) 이전에 도착하여 안전한 보관창고에 입고되어야 한다. 이 시기를 넘으면 장기보관에 따른 품질의 변질로 인하여 품위의 저하로 인한 상품으로의 가치상실의 우려마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반입의 시기를 7월 말 시한으로 정하고 검수를 선적항에서 선적직전에 지정한 검수인 입회하에 실시하기로 하였기에 7월 중순 검수인의 입북에 관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물품의 선적항 도착을 기다리던중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되었다. 7월 28일 협정일을 그들은 전승기념일로 하고 광복절(해방기념일)까지 대대적인 행사가 있어 7월 중순 이후에는 외국인의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납기연장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통제사회의 한 단면인 것이다.

우리의 무역관행으로 보아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나, 북한의 통제사회에서는 국가의 결정사항이라면 무조건 순응하는, 그로 인한 국제 신뢰도의 영향은 전혀 고려치 않는 그들의 행위에 다만 놀랄 뿐이었다. 반입시기의 연장은 우기를 기다리는 것이며 9월 중하순이면 국내산의 출하시기가 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저장시설을 중국 대비 감안한다면 품질에 관한 보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유추되어 납기연장에

따른 수정제의를 하였다.

'93년산 신곡으로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조건으로 또 한 신곡의 견본은 10월 중순까지 도착하고 품질을 검토한 후 다시 결정한다는 등 보다 완벽한 조건을 제시하고, 우리의 조건에 응하기를 권유하였다.

1차 계약위반에 따른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북한 측의 반응은 비교적 호의적이었으나 범세계적인 일기불순으로 생산량 감소에 따른 국제시세의 상승을 고려하자고 하였다. 당 조합측의 입장에서는 북한측의 제안에 수긍은 할 수 있으나 관례상 일단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상,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한 정부 당국에서도 시기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변경승인이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가격을 고수하여 반입일의 변경승인만을 받았다.

신곡 견본 입수 후 품질을 검토한 결과 건조상태, 선별, 탈각상태 등 모두가 양호하였다. 앞으로 운송, 반입만 순조롭다면 만족할 만한 교역이라고 자부하게 되었다.

바. 반입물품의 반응

금번 반입된 북한산 낙화생의 품위, 품질은 지금까지 정부 차원(유통공사)에서 수입한 물품(중국산)과는 현격한 차이의 호응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낙화생은 농산물인 관계로 공산품처럼 단순비교는 어려우

나 우선 국내생산품과 비교하여 입도, 선별, 탈피상태에서 별 차이가 없었으며 품질(맛, 색택 등) 면에서도 국산 재래콩과 비슷하였다. 다만 운송과정에서 포장재료의 불량으로 인한 파손품 발생량이 많았으나 전반적인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품질은 양호하다는 견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료수집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기획과 반입 계약, 단계별 점검, 국내 생산농가에 파급될 영향, 반입후 사후관리(판매과정에서 생산지 표시:북한산), 소비자 반응도 예상치 등 품질에서 소비자 반응까지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결과라 하겠으나, 이는 수출하는 북한측의 성실한 협조와 또 거래 쌍방간의 두터운 신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과라 사료되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교역은 몇가지 사소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또한 북한산 낙화생의 좋은 반응은 앞으로 남북간 교류·협력에 좋은 밀거름이 되었다고 자부하며 남과 북의 상부상조의 협조로 경제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차 반입의 쓰라린 경험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모든 준비와 점검은 철저히 하였다고 자부하지만 만의 하나 생각지도 못한 돌발사고의 우려가 염습하였다.

남포 외항 입항 후 매일 오전, 오후 2회씩 홍콩을 통하여 진척사항을 점검했다. 모든것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당 조합 물품은 선적이 끝났다는 소식과 동시에 혼적할 다른 물품의 준비 미비로 출항이 며칠 늦어지겠다는 선사의 통보에 다시

불안하였으나 5일후 완료되었다는 통보에 잠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혼적한 물품의 성하증권 중 유독 당 조합 물품만이 북한으로 부터 직접 발행되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선박출항에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며 이로 인한 체선료의 발생은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다.

홍콩중개인에게 진상을 파악하여 회신하라고 연락을 하니 아무 걱정말고 있으라는 것이었다. 선박의 출항은 예정대로 할 것이며 통관에 필요한 서류 일체도 선장이 휴대한다는 것이었다.

이와같이 북한 당국이 남한과의 거래를 공식화하지 않는 것은 내부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남북교역을 통한 인적·물적교류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는 북한과의 거래에 관한 내용들이 언론매체에 공개되는 것을 어느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금번 반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국적선사의 직항로 개설에 따른 운항시간의 단축과 선적항구의 정확한 증명으로 세관 당국의 까다로운 심사가 다소나마 누구러졌다 는 것이 대북교류의 향후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사. 운반선사의 선정 및 투입

1차 반입시 운송 도중 환적으로 인한 불상사가 계속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어 선사의 선택에 많은 고심을 하게

되었다.

홍콩으로 연락하여 선사를 알아보니 모두 북한입항을 꺼려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 입항료등 부대비용이 아시아 어느나라 항구보다 비싸다. 둘째, 선적물품 준비사항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체선료 과다지불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셋째, 입항허가서 및 선적허가서 발급확인 등 선적에 관한 체반사항이 무원칙하다는 등 해상운임 과다발생 원인으로 인한 운임결정이 어렵기에 화주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국내선사의 임대선박이 부정기적으로 월 2항차 정도 북한 남포에 입항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소문하여 알아 본 결과 역시 해상운임이 여타지역에 비하여 월등한 차이를 보이면서도 선적확인서 미발급으로 인한 별도 체선료의 발생시에는 화주 부담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항에 선박을 투입하고도 물량이 준비되지 않아 공선(빈배)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운송사에 부담이 간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분 운송은 1차분 운송 때보다 안심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국내선사이기에 믿을 수 있었고 둘째, 직항로를 따라 공해상에서 직접 인천으로 들여올 수 있고 셋째, 여러번 북한에 입항한 실적이 있기에 믿을 수 있고 넷째, 타 반입품과 혼적함으로써 북한 선적항의 증명이 가능하기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선박투입에 앞서 현품 검수원의 입북과 검수, 선적허가서 발급 등을 확인하고 선박의 투입을 시도하였다.

CODE NAME: "CONGENBILL". EDITION 1978

Shipper

Korea Ponghwa General Corp.,
Pyngyang, D.P.R. of Korea

BILL OF LADING

TO BE USED WITH CHARTER-PARTIES

B/L No.

Reference No.

Consignee

To the order of Korea Exchange Bank

Notify address

Korea Peanut Industry Cooperative
53-11 Yuido Dong Youngdeungpo ku
Seoul Korea

Vessel

m/v Ratler Nampo Port(D.P.R.K.)

Port of discharge

Inchon/Busan Port

Shipper's description of goods

Gross weight

Shipper's Description of Goods

93 Corp Peanuts

Virginian Type

AVERAGE A390X

Size: 34-38/38-48 per/oz

10,460 p.p bags

523 mts-net

528 mts-gross

720M3



(of which on deck at Shipper's risk; the Carrier not
being responsible for loss or damage howeverever arising)

Freight payable as per
CHARTER-PARTY dated _____

SHIPPED at the Port of Loading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on board the Vessel for carriage to the
Port of Discharge or so near thereto as she may safely get the goods
specified above.

Weight, measure, quality, quantity, condition, contents and value un-
less otherwise specified.

IN WITNESS whereof the Master or Agent of the said Vessel has signed
the number of Bills of Lading indicated below all of them for and date
any one of which being accomplished the others shall be void.

FOR CONDITIONS OF CARRIAGE SEE OVERLEAF

KOREA EXCHANGE CORPORATION

hours.

F-01-0-L-90005

Freight payable at

Number of original B/L

3/Three

Place and date of issue

Nampo D.P.R.K. 93/12/28

Signature

MASTER OF M/V RATLER

Printed and sold by
Fr.G.Knudsen Bogtrykhan A/S, 55 Toldbodgade, DK-1253 Copenhagen K.
Telex 4533921184
by authority of 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
(BIMCO), Copenhagen.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КОМИТЕТ ИНСПЕКЦИИ

ВНЕШНИХ ТОВАРОВ КОРЕИ

ПХЕНЬЯН КОРЕЯ 조선

Тел. адрес: KFCIC ПХЕНЬЯН



KOREA FOREIGN COMMODITY

INSPECTION COMMITTEE

평양 PYONGYANG KOREA

Cable address; KFCIC PYONGYANG

ORIGINAL

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No. 51-04-1230

날자

Date 28th Dec., 1993

발송인
(Consignor) Korea Ponghwa General Corp., Pyongyang, D.P.R. of Korea

수화인
(Consignee) Korea Peanut Industry Cooperative
53-11 Yuldo-dong Youngdeungpo-kn., Seoul, Korea

수출대상국
(Country of Destination) Korea

기호
(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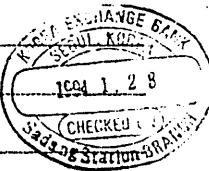
수송수단
(Means of Transportation) Ship

품명
(Commodity) 93 Corp Peanuts

산지
(Place of Origin) D.P.R. of Korea

수량
(Quantity) 10,450 P.P. Ba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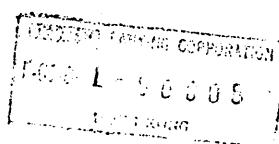
중량
(Weight) 523 m/t-net



상기 상품은 조선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었음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commodities were produced or
manufactured in Korea.)

Nampo
(Former Commodity Inspection Office)

소
(Director) 01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КОМИТЕТ ИНСПЕКЦИИ
ВНЕШНИХ ТОВАРОВ КОРЕИ
ПХЕНЬЯН КОРЕЯ 조선

Тел. адрес: KFCIC ПХЕНЬЯН.



KOREA FOREIGN COMMODITY
INSPECTION COMMITTEE
평양 PYONGYANG KOREA
Cable address: KFCIC PYONGYANG

ORIGINAL

검사증
(СЕРТИФИКАТ О ИНСПЕКЦИИ)
(INSPECTION CERTIFICATE)

No. 51-11-1230

날자

Дата

Date 28th Dec., 1993

발송인
(Отправитель товара)

(Consignor) Korea Ponghwa General Corp., Pyongyang, D.P.R.of Korea

수화인
(Получатель товара)

(Consignee) 53-11 Yuido Dong Youngdeungpo ku, Seoul, Korea

품명
(Наименование товара)

(Commodity) 93 Corp Peanuts

차호 또는 선박명
(№ вагона или наименование судна)

(Wagon No. or Name of vessel) m/v Ratler

검사결과
(Результат инспекции товара)

(Results of inspection)

Quantity 10,460 P.P Bags

N/Weight 523 m/t

G/Weight 528 m/t

Size: 34-38/38-48 per/oz



상수
(Зампхе
Inceptor)
대외상품검사위
권부
Kontora inspekcii vnochenih tovarov
Foreign Commodity Inspection Office

검사원
51
Inspектор
(Inspector)

L-90005
HONG KONG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위원회중앙식물검역소
CENTRAL PLANT QUARANTINE
SERVICE
AGRICULTURAL COMMISSION
D.P.R. OF KOREA



No. 22-120

수출상대국 Export to Japan

ORIGINAL 식물검역증
PHYTOSANITARY CERTIFICATE

본 증명서는 아래와 같은 식물부문 혹은 기타 화물에 대한 조사와 상품
검사에 근거하여 발행하는바

This certificate is based on the field-investigation and the inspection on the
plants; parts of plants or products thereof given below.

품명 93 Corp. Peanuts 포장 P.D. Bag
Name of produce Packing

수량 10,400 kgs 중량 523 mts
Quantity Weight

상기 화물은 수입국에서 규정한 감염병제충 및 잡물씨앗이 없음을 증명한다 즉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lants, part of plants or plant products described above
were thoroughly examined and found to be free from diseases, insect pest and weed
seeds stipulated in phytosanitary regulations of the importing country.

그밖에 실시한 소독
Disinfection treatment

소독처리시간
Duration of exposure

약제 및 그의 농도
Chemical and concentration

날짜
Date

차량 번호

증장번호

선박명 v Ratler

Number of wagon
Korea Ponghwa General Corp., Jones Peanut Industry Cooperative
화물 인 Youngdeungpo, D.P.R. of Korea 차 수 인 53-11 Yuido Dong Youngdeungpo ku
Consignor Consul, Kore

날짜
Date

1993년 12월 28일

국가식물검역원수표
Signature of State Quarantine Inspector

비고 : 본 식물검역증은 발급한 날부터 화물의 발송은 20일을 넘지 못한다.
Note: This phytosanitary certificate is issued not earlier than 20 days before the shipment.

J-L-90005
HONG KONG

양식 제5호

01-01
No. _____

ORIGINAL

위생검역증
SANITARY-QUARANTINE CERTIFICATE

이 물품과 그의 생산지와 모여놓는곳 및 그주변의 위생역학상태가 이상이
없음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no abnormality of sanitary epidemiologic conditions has
been found in the undermentioned freight as well as at the producing and gathering
districts, also in their circumstances.

품명
Name of goods 93 Corp Peau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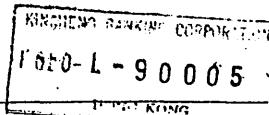
총량 (수량)
cross weight (quantity) 10,460 P.P Bags

정미총량 (수량)
Net weight (quantity) 523 mts

발급년월일
Date of certificate issued 28th Dec., 199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Sanitary Quarantine of D.P.R.K.

검역의사수표
Signature of health officer



2. 호두 반입사례

- (주) 미 원

가. 사업의 시작

대북교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교역가능성이 있는 품목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공감할 것이다. 당시가 이 사업을 시작하던 93년경의 상황에서 철강금속부문과 임가공부문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업자들에게 가능성이 있는 교역품목으로는 농임산물 분야가 거의 전부였다. 그중 호두는 수입자유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식물방역법상 베트남 등 몇개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수입금지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사실상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여서 북한에서의 반입이 거의 유일한 수입경로로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93년 9월부터 국내시장조사로 사업가능성조사가 시작되어 공급자 확보, 선박용선, 남포항 입항 후 통신단절 등 쉽지 않은 몇개월이 지난 '94. 1. 6에야 부산항에 물품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사업이 예상보다 상당히 지연되었으나

다른 호두수입업자들도 다 같은 상황이었고 국내 대보름 전에 통관을 마칠 수도 있을 듯하여 다소 기대감도 있었다. 바로 국내 구매자와 같이 부산으로 향하였다. 쉽지만은 않은 기간이었다. 또한 특수상황이란 탓에 선적시점에서 물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없어 품질에 대한 궁금증과 그간 중개상의 말대로 최상품질의 물품이길 간절히 바랬다.

적어도 괜찮은 정도의 품질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역작업이 한창인 배를 찾았을 때, 한눈에 멀리서 보이는 누런 황마포장에 북한의 상황이 정말 이 정도의 수준이구나를 절감했다. 기대감에 가마니를 비집고 꺼낸 호두는 우리의 기대수준이하였다. 노력과 기대가 커서 상실감도 컸지만 다음 단계를 준비하여야만 했다. 구매상의 의견은 호두수요가 연중 가장 높은 대보름에 맞출 수 있는 시기적 잇점이 있어 통관만 제대로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으니 계속 진행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구매상의 이런 입장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논의를 한 결과 중개상을 통해 북한측에 강한 항의를 하되 지불은 그대로 하기로 하고, 국내 구매상의 시장기회 욕구에 응하여 주기도 하며 장기적으로 북한을 가르치고 당사의 성실하고 순수한 노력을 북한에 전달하여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기자는 취지였다.

한편 국내 판매에 주력하는 동안 홍콩에서 활동하는 다른 중개상으로부터 새로운 호두 거래제의가 들어왔다. 이 중개상은 지난번 당사 호두 반입 배에 같이 실린 품질이 월등한 호

두를 중개한 업자였다. 당시는 물론 이때까지 그 호두가 국내에 반입된 호두중 최고 품질의 것임은 호두업자면 누구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중개상은 그때까지 국내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북한의 수출상으로부터 곤란한 처지에 빠진 상태였다. 중개상에 따르면 자신들의 경우 외에도 당시에 한국업체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몇 건 발생하여 북한에서의 한국업체 신용도가 문제되고 있는 때라 열악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지불을 해주었다는 당사 사례가 알려지며 북한의 공급선들이 당사하고라면 믿고 거래를 하겠으니 홍콩 중개상에게 중개를 하여 달라고 북한 공급자들이 부탁한 것이었다.

담당자로서는 당사의 의도대로 북한의 반응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에 반가웠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자 원산지 허위 조작이나 품질불량시 반송조치를 취하겠다는 조건을 거듭 확실히 한 뒤 피호두와 깐호두를 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품질의 기준은 그 중개상이 중개하여 반입된 그 최상 품질의 것이었다.

나. 거래흐름의 확정

3월 24일 국내은행에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하였다. 수혜자는 당사 홍콩지사였다. 중개상의 신용문제도 감안이 되었지만 북한을 세계의 열린 무역시장으로 이끌어 내어 남한과의 교

역을 보다 더 공개적으로 인정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북교역에 또 다른 진보된 발자욱을 더하려는 의도로 일반적인 대북교역의 거래흐름과는 다르게 원론적인 거래흐름을 채택하자는 입장에서 중개상과 당사가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는 홍콩 중개상의 대북교역에 대한 투철한 신념도 크게 한 몫을 하였다. 중개상도 당사의 이런 의도에 전적으로 동의하여 북한을 설득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었다.

거래흐름에 대한 1차 합의안은 당사가 당사 홍콩지사를 수혜인으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고 이를 받은 당사 홍콩지사가 북한으로 이 신용장을 양도(Transfer)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북한이 수락하면 사실상의 직교역이나 다름없는 바였다. 만일 이것이 수락되지 않으면 2안으로 홍콩지사가 북한 앞으로 홍콩의 한국계 은행에서 특수신용장(back-to-back L/C)이나 별도의 새로운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이었다. 이 경우 서울에서 발행한 신용장은 아니지만 수락되면 한국계 은행의 신용장과 누구나 인정하는 한국계 기업과의 교역을 북한이 공식 인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또한 한국을 교역상대국으로 공식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예상대로 북한측의 첫 반응은 강력한 반대였다. 그러나 이미 신용장을 개설하여 호두를 구입하려는 당사의 의지와 중개상의 끈질긴 설득과 압력에 결국 북한측 공급자는 2안 한국계 은행의 신용장으로 한국계 기업과의 거래라는 거래흐름에 동의를 하였다. 그러나 넘어야 할 고비는 여기서 끝

나지 않았다. 북한상사가 당의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똑같은 설득 과정이 있었지만 당측의 허락을 얻을 수 없어 결국 모든 선적서류상에 당사 홍콩지사를 수하인으로 그대로 표현하기로 하는 선에서 거래흐름이 북한과 최종 합의하였다. 더 이상 당사의 거래흐름을 고집하고 싸움을 하다 보면 한국내에서 시장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커기 때문이었다.

다. 거래조건 협상을 통해 본 북한의 현상황

거래흐름의 협상을 통해 북한내에서의 경제행위, 특히 무역 행위에 대한 통제는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어쩔 수 없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의 교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정도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물품의 포장을 놓고 협의할 때 포장재료를 보내줄 수 있느냐, 가급적 화물표시(Shipping mark)은 크게 하지 말아 달라, 종이위에 화물표시를 등사하여 마대에 붙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는 등의 북한측 요청으로도 북한경제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직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거래에서 북한측이 전신환 상환(T/T reimbursement)를 반드시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하여 온 점에서도 많은 면을 엿볼 수 있었다. 그들은 그간 경험으로 우리나라 상사들에 대한 신의가 약하여 가능하면 거래대금을 빨

리 회수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물론 어느 수출업자나 거래대금 미회수에 대한 불안이 존재하기는 하나 북한의 경우는 우리나라 상사와는 이 조건이 허용되지 않고서는 교역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집하였다.

그러나 당사를 포함한 모든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출업자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조건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입장인 것이다. 이에 대해 여러번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조정한 결과 당사의 그전 사례들을 들어 당사를 신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 결과 가까스로 그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남북교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북한측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상사들보다 더 공격적이고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교역을 원하는 경향이 있어 보였다. 이제는 관례가 되어 버린 선장편으로 모든 선적서류 원본을 한두 세트 보내준다는 것 또한 특이한 일이고 상대에 대한 신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 지연되는 선적

모든 조건이 합의되고 북한측으로 최종 신용장이 나갔다. 그러나, 선적기일을 맞춰 남포항에 들어간 배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선적 소식이 전혀 없었다. 중개상과 협의 끝에 선사에게 물품이 선적준비가 안되었으니 다른 화물로 채우든

지 철수하든지 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로 하였다. 1차 반입시에도 선적지연으로 상당한 손실을 경험한 당사로서는 당연한 조치였다.

그간 통신상으로 완벽하게 물품이 선적준비가 되어 있다는 북한측의 주장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였다. 모든 거래에 대해 의심이 가기도 하였다. 전번과 같은 수준 이하의 물품 품질에 대한 걱정도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중개상을 통하여 신용장의 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끈질기게 요청하여 왔다. 내륙 수송사정 문제로 선적을 위한 물품대기가 늦어졌다는 것이었다.

또한 물품의 품질보장문제를 계속 우려했던 당사에게 호두 품질보증담보로 북어를 같은 배에 보내주겠다는 제의도 같이 하여왔다.

물론 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고 우선 물품인수 후 사후에 판매하여 적당한 이윤을 배분하는 조건이었다. 당사로서는 호두품질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할 이유도 없고 물품 도착만을 기다리면 되는 일인 듯 했다. 중개상, 회사 관련자 모두의 논의 끝에 20일 가량을 더 연장하여 주기로 결정하였다.

또 다시 남포 외항에 배가 도착하여 접안을 기다리고 있다 는 소식을 접하고 퇴근하였다. 그러나 새벽이 되어 담당자에게 홍콩 중개상에게서 급보가 날아왔다. 선적 대기를 위하여 물품을 입고하여 둔 남포시 근처의 저온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물품이 거의 전소되었다는 것이었다. 청천벽력이었다.

계약서상의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되는 사건의 발생이었다. 여러 가능한 통로를 통하여 사건의 진위 파악을 시도하였다. 선사측, 중개상측 모든 곳에서 사실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형국에도 북한에서는 며칠의 말미를 주면 물품을 재수집하여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국내 구매자와 협의하여 내부적으로 사업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북한으로 통보하였다. 석연치 않은 사고라는 내부적 판단에다 시기상으로 보관 문제로 물품 품질에 대한 위험도 켰기 때문이었다.

마. 물품의 국내 도착과 품질

북한측에서는 그 후에도 계속하여 물건을 집하하면서 신용장의 선적기일과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더 이상의 사업연장은 무모한 일이라는 것이 모든 담당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끈덕지게 최고 품질의 물품을 주장하며 간청을 해왔다. 이번 사업을 성사시켜주면 장기적으로도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작은 기대감에 북한측이 전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그대로 실을 것을 요구했다. 신용장 유효기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자신이 있으면 물품을 보내라는 것이었다.

북한측은 어떤 불만도 없이 그대로 요구에 응해 왔다. 얼마 후 깐호두 일부와 북어만이 국내에 도착하였다. 호두의 포장 상태는 양호하였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일본으로 수출하는

송이버섯상자를 그대로 이용하여 호두를 포장하여 보내온 것도 일부 있었다. 전반적으로 정성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였다. 호두는 국내 호두 전문가 몇명과 같이 확인한 결과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판매 불가능한 상품으로 판명되었다. 반면 북어는 기대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크기가 조금 작고 덜 건조 되기는 하였으나 열풍건조나 냉동건조가 아닌 자연 해풍건조여서 맛이 좋아 상품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호두 반송은 당사나 국내 구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론이었다. 또한 북한에서도 품질상의 이유는 납득할 수 없다며 공인검정기관의 보고서를 근거로 반송하라고 자신있게 얘기해 왔다. 당시 중국산 농산물 위장반입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세관의 의심의 눈길이 있었지만 호두는 무사히 반송면허를 얻고 1회용 컨테이너로 홍콩으로 반송조치되었다. 북한에서 반입된 농산물의 반송조치로는 처음있는 일이었다.

호두는 모든 기대이익을 상실하였지만 서류상에는 별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북어였다. 북어가 시장성이 있다고 판명이 나기는 하였어도 제반 선적서류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 세관신고를 시작할 수 없었다. 우선 시장가격을 확인하고 이를 다시 북한으로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후 가격을 확정시키고 당사 홍콩지사를 통하여 호두와 같이 수출입계약을 다시 결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우리 측이 조사한 가격은 북한측이 초기 원하는 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결국 중개상이 손실을 일부 보기로 하고 이를

근거로 제반 선적서류가 중국을 거쳐 특급우편으로 우송되어 사업을 무사히 종료시킬 수 있었다.

바. 뒤돌아 보면

장기간에 걸친 북한물품 반입이 한 단락을 맺었다. 색다른 무역관습과 통상을 벗어나는 북한측의 무역행태에 가슴 조이며 보낸 순간순간이 쌓인 짧지 않은 기간이었다.

지금 살펴보면 대북교역 특히 농수산물 반입에는 여러 중요 확인사항들이 있겠으나 원산지 진위여부, 직항반입, 서류작업, 품질에 대한 보증 등이 그중 가장 중요한 점검 사항들인 듯하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사항외에도 열정을 갖고 달려드는, 다소 낭만적이기 쉬운 일반적 대북교역 담당자들이 특히 간과하고 빠져들기 쉬운 첫번째 사항은 북한측의 담당자들이 상당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을 다하려고 해도 그들의 경제 여건과 사회구조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위험요인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그들 상품중 우리나라에게만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많고 또한 북한 담당자가 인식하고 있는 상품 품질의 개념 또는 안목이 아무리 해도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정도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낙후되고 폐쇄된 그들 사회에서만 커온 안목의 한계같은 것을 말한다. 또한 경험적

으로 보아 그들의 경제행위는 결국은 당의 조정과 통제 아래에서 부분적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수출물품의 확보도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완전히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중개상들과 계약을 체결한다기 보다는 북한내 어느 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물품에 대해 여러 상사의 중개인들이 공히 우리나라의 여러 경로와 연락을 하여 동시에 계약관계를 시도하여 결국 최종적으로 북한의 원공급자에서 우리나라 수입상까지의 계약흐름이 가장 먼저 체결되는 업체가 그 물품을 인도받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 상관습이 아닌가 하고 추정된다.

둘째로 유념해야 할 사항은 그들의 빈약한 사회간접자본과 편의위주의 행정등으로 일어나기 쉬운 지연 및 서류상의 오류 등으로 일어나는 시간의 손실이다. 당사의 경우도 호두 1차 반입시 선적서류가 선장을 통해 들어온 서류와 은행을 통해 들어온 서류의 발행기관이 평양, 남포로 상이하게 발행되어 있어 이의 확인을 위해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고, 북어의 경우도 이런 류의 잘못이 발생했다. 대북교역의 경우 일단 서류잘못이 발생하면 그것은 곧 상당한 시간적 손실을 의미한다. 내륙운송, 물품집하 등의 지연도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는 철저한 믿음을 근간으로 일을 하되 무리수가 되는 일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충분한 대책이 없이는 가급적 시도를 안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비록 일반적으로 북한 측의 교역실무 담당자들이 교역상대 실무 담당자와의 성실한

관계를 중요시한다고 판단되나 외화벌이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어려운 상황등을 감안하여 볼 때 당이나 기관 등의 영향 아래서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듯하다. 화재 후에도 계약상의 불리함을 무릅쓰고 호두를 공급하려고 했던 당사의 경우도 북한측이 다급해진 상황을 해결해 기회이익을 보전하려고 한 그러한 경우가 아닌가 한다.

3. 냉동명태 반입사례

- 대양실업(주)

가. 추진동기 및 배경

당사는 국내 수산물 유통분야의 선두업체로서 그간 추진하여 온 수입품판매, 국내원양선사들의 원양어획물판매가 갖는 물자교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민족간 효율적 물자교류의 길을 넓혀보고자 국내 어민들의 소득증대 및 물가안정에 저해됨이 없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위주로 남북교역의 제1보를 내딛게 되었다. 그 대의나 취지로 볼 때 남북 직교역이 최선의 방법임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나 통신수단이 없고, 물품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궁리끝에 간접교역을택하였고, 중개인역은 홍콩소재 G.S.I가 맡기로 하였다.

나. 추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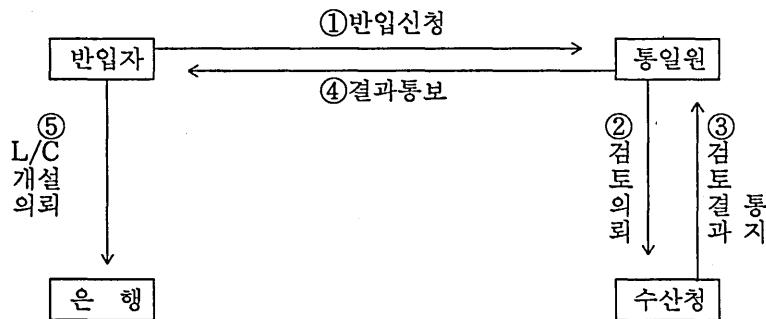
수산물 교역에 임하는 대부분의 업체는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현상에서 파생되는 문제로 고통받게 된다. 풀어 설명하자면 물자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예상되는 남·북간 동질성회복이나 이

로 인한 조기 통일실현이 하나의 이상이라고 볼 때, 공급물량 조절 및 안정적 물가유지로 궁극적인 어민의 소득증대 및 어민 보호를 해야함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수산물의 국내수급현실상 반출보다는 반입이 우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수입제 한품목의 경우 경유하게 되는 수산청에서도 똑같이 겪게 되는 문제였으며, 반입승인까지의 철차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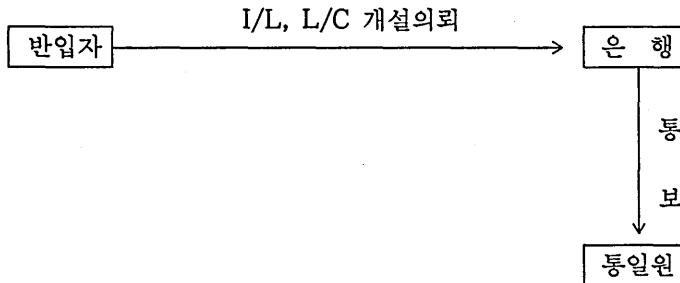
〈제 1 도〉

반입승인절차도

- 반입제한된 품목의 경우



- 반입자유화된 품목의 경우



당사는 '93. 10. 21 중개상 G.S.I로 부터 북한산 냉장명태 2,000M/T 공급이 가능하며, 이미 북한측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통보를 '93. 10. 23 받은 바 있으며, G.S.I는 서둘러 당사와 계약체결할 것을 통보해 왔다. 이에 당사는 서둘러 냉장명태의 국내수급동향, 가격동향을 여러모로 조사한 후 어민피해가 거의 예상되지 않아 냉장명태의 반입 신청을 하였으나, 검토 관서인 수산청의 견해는 당사와 달랐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측은 냉장명태의 보관 속성상 냉장상태 유지가 불가하여 냉동하여 냉동명태로 만들 수 밖에 없었다.

당사로서는 도덕적 책임을 느껴야 당연한 사안이었다. 이어 G.S.I는 냉동처리된 상태로 당사가 반입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재 전달하였고, 우여곡절끝에 '94. 2. 22 당사는 냉동명태 1,700M/T의 반입 허가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반입조건상 3월말 이후 반입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고,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북한의 전력사정이 나쁘다하여 냉동명태를 보관하는 북한측 보관창고에 제대로 전기가 공급될까 하는 우려가 앞서게 되었으며, 이런저런 생각으로 물건이 부산에 도착하기까지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지루하기만 하였다.

당사는 반입조건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중개상을 통해 이를 북한에 전달하였고, 중개상은 물

품 준비상황을 당사에 신속히 전달하여 진행상 어려움은 없었다.

다. 운송 및 통관과정

현행 남북교역의 한계점 때문에 당사는 가격조건을 선측인 도조건(F.A.S)으로 하였으며 운송선박도 러시아국적의 북한 입항 경험이 있는 선박으로 투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몇개의 국내 소재 선박회사 대리점과 운임요율을 협의한 바 있으나 북한측의 물품준비에 대한 신뢰부족, 손실(RISK)예방책 부족, 부두 협조 및 체선(DEMURRAGE) 등의 이유를 들어 회사별로 요율에 큰 차이를 보인게 특징중 하나였다. 배는 러시아에서 직접 북한 항으로 입항하였고, 6일간의 화물선적(LOADING) 작업 및 약 2일간의 항해끝에 그 화려한 부산입항을 알리는 통지를 대리점을 경유하여 선장(CAPTAIN)으로부터 입전받았다. 예정대로 물건을 부산소재 냉동창고에 입고하고서 반입과정상 필수단계인 수산물검사소의 수(반)입물품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물품특성이 있었다.

〈제 2 도〉 원양산과 당사반입분 비교

구 분	포 장	SIZE 선별	비 고
원양냉동명태	PAN당 20KG	양 호	채란시기였음.
북한산냉동명태	PAN당 17KG	다소 양호	포란태. 냉동상태 양호

당사 물품의 경우 전반적인 북한산 물품의 품질이 개선되었다기 보다는 다행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2년전에 타사가 반입한 냉동명태의 경우 크기(SIZE) 선별이 안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냉동상태마저 나빠 육질내부에서 별레가 발견되었다는게 현재까지 일반적인 북한산 명태에 대한 인식이었다.

수산물검사소의 검사과정에서 일반적인 냉동수산물의 이화학적 검사기준에는 전부 합격하였으나, 최근(정확히는 93년 11월) 강조되고 있는 원산지표시 의무강화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였다.

〈제 3 도〉

원산지 표시 비교

구 분	원산지 표시	비 고
원양산	안 함	반입물품으로 분류되어 원산지표시 유무확인없이 그냥 통관됨.
북한산	사실상불가(포장재가 없어 표시할 곳이 없음)	포장재가 없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하려면 헝겊으로 띠를 두르든지하는 별도 방책이 강구되어져야 함. 구체적 기준 모호.

북한산 수산물을 국내반입하기로 하여 마지막 거치는 통관절차에서는 반입면장이 발급되고, 관세는 부과하지 않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산 입증을 위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하였다.

〈제 4 도〉

북한산 증빙서류

- . 산지(북한산)발행 선적서류
- . 원산지 증명서
- . 조선수산물검사소 검사증
- . 항해일지(VOYAGE MEMO)
- . 거래체결관련 계약서 사본

현재 반입자가 세관에 북한산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서류뿐이고, 세관 또한 북한산 여부확인 방법으로 서류외의 다른 것(어족자원, 품종감정...)으로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세관측에서 반입자에게 서류이외의 다른 것으로 북한산임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할 시는 어려움이 있게 된다.

라. 대금결제 경로

대금결제는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었으며, 더우기 당사가 지급하는 입장이므로 결제보다는 물품 품질이 더 큰 관심사였다.

당사와 중개상인 G.S.I간에는 국제무역 거래 결제수단중 가장 보편적인 일람불신용장 조건이었으며, 중개상과 북한간의 관계 역시 이와 비슷한 조건이었다. 선적서류가 은행에 도착하기전 물품이 도착되어 신용장조건으로 물품을 인수한 후 통관한 것은 최근거리국가와의 무역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전혀 다를 바 없다.

마. 국내유통과정 및 품질평가

당사가 반입한 냉동명태의 경우를 포함하여 수입제한품목의 반입시에는 반입조건상의 판매시 필히 공영도매시장 또는 수협공판장 상장이라는 특이한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일반적 상장시에 전 물량을 매장에 전시하는 게 관례로 되어 있어 당사로서는 반입못지않는 판매상 예상문제로 많은 걱정을 하였으며, 결국은 표본(SAMPLE)상장을 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사전에 창고에서 물품확인을 거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그리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면서 당사가 반입한 북한산 냉동명태가 판매되었고,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이 물품이 북한산이고, 반입자가 대양실업(주)라는 사실이 전하여 알려진다고 생각하니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과거 몇회에 걸쳐 타사가 반입한 물품에 비해 괄목할 만한 품질상 차이가 있었고, 이 품질 차이가 북한산의 일반적 품질개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술한 바와같이 다행에 불과한 지는 알 길이 없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싶은 심정이다.

바. 교역효과 및 평가

우선 당사에 남북물자교류의 큰 흐름에 동참할 기회가 주

어겼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그 의의를
요약해 본다.

첫째, 북한산 수산물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
이다.

반입이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얼큰한 그 동태
찌개를 놓고 가족이 둘러앉아 그 정취에 잠시나마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물품에 대한 인식변화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그간 반입된 물품중 대부분은 상품으로 거래되기 힘든 상태
(크기 구분안됨. 품질불량)였기 때문에, 북한산에 대한 일반
인식이 나빴던 게 사실이나, 이번 당사 물품으로 인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셋째, 북한에 입항하는 운송선박회사들이 그간 가졌던 불신
을 다소나마 제거하였다는 점이다.

과거의 경우 현지에서 물품이 미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서 선박이 투입되어 겪게 되는 고충 및 입항 수속 과정에서
입항허가서(ENTRY PERMISSION)가 적시에 발급되지 않아
선박들이 고생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나, 금번 당사 교역과
정에서는 중개인의 주도면밀한 준비가 있었던 관계로 쉬운
운송이 가능하였다.

사. 교역상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

남북교역과정상 교역당사자는 다음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교역자의 영역을 벗어날 시는 필요시 제도적 정비도 따라야 된다고 본다.

첫째, 믿을만한 중개인의 확보이다.

남북 직교역이 규모나 여건면에서 불가한 부분이 많으므로 그 교량역활을 하여야 하는 중개인의 선택이 교역의 성패를 좌우한다.

둘째, 현지 검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겠다.

물론 남·북의 현 특수상황상 인적교류가 용이하지 않고,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사안이긴 하지만,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추진되어져야 할 방향이며 이것이야말로 교역량 확대의 관건이 될 것이다.

셋째, 강제상장의무의 폐지이다.

강제상장이 갖는 장점도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게 사실이다. 상장을 통해서 상장료등 중간단계 비용만 가중되어 결과적으로 가격상승의 요인이 되고, 상장에 참여하는 중매인들의 가격왜곡의 가능성도 있다.

넷째, 통관상의 문제이다.

북한산 반입과 비슷한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할 사례는 원양수산물의 반입이다. 원양어획물은 사실상 엄밀히 따지자면 수입이지만 분명 수입물품에 적용되고, 규제되어져야 할 조건

들이 면제되고 있다. 최소한 북한물품에 적용하는 기준이 분명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물품에 대한 범위의 문제이다.

북한산이라 함은 흔히 북한수역에서 북한배가 잡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명확한 범위지정이 필요하며 이는 통관상 야기되는 원산지가 북한인지 여부의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리라 본다.

4. 로열젤리 반입사례

- 효원물산(주)

가. 실패로 끝난 첫 대북교역

북한과의 교역은 나에게 있어 어쩌면 운명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27년의 무역경험을 가진 내가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 북한을 상대로 한 교역에 밤낮없이 뛰어다니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장사속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란, 북한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내가 오늘날 대북한교역만을 전문적으로 하게 된 것은 무역업에 대한 나의 평소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중소무역업체를 경영하면서 내가 터득한 소신이란 『작은 회사는 전문성이 있어야만 살아 남는다』는 것이다. 웬만한 무역분야는 종합상사에 의해 잠식당하기 일쑤이므로 중소기업만의 전문성을 살려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26살 때부터 미국, 유럽, 일본 등을 상대로 무역을 해온 나는 한때 플라스틱을 전문적으로 취급했었다. 걸프오일, 유니온 카바이드 등 유명회사와도 거래를 했다. 그러나 이 분

야 역시 대기업들과의 경쟁이 힘겹기만 했다.

'88년경부터 중국과의 무역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국교 수립 이전이어서 아직 국내 기업들의 대중국무역이 지금처럼 활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어 한중교역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중국과의 교역이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나의 새로운 도전의욕이 꿈틀거렸다. 북한과의 교역이라는 새 분야를 개척해 보고 싶었다.

1990년 처음으로 북한과의 거래를 시작했다. 홍콩에 있는 중개상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시멘트를 반입하는 프로젝트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남한의 무역업자가 북한측과 직접 거래를 트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홍콩교포, 재일조총련계 동포, 중국에 사는 조선족, 홍콩에 사무실을 둔 재미동포 등이 남북교역의 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내가 상대했던 중개상은 대학선배가 소개해 준 홍콩교포로 북한인사들과 교분이 많다는 것이었다.

첫 거래는 완전한 실패작이었다. 당시 국내에선 시멘트가 부족한 때였으므로 북한산 시멘트를 들여오면 상당한 이익이 남을 것으로 보였다. 시멘트를 살 수 있다는 홍콩의 중개상 말만 믿고 2만t의 시멘트를 주문한 뒤 배를 용선, 해주항으로 들여보냈으나 준비돼 있다던 시멘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시멘트 선적을 기다리다 보니 무려 60일간을 해주항에서 머물게 되었다. 결국 그해 6월에

주문한 시멘트가 도착한 것은 10월이었다. 그것도 주문량의 4분의 1에 불과한 5천 3백t뿐이었다. 반면에 배 운임과 체선료를 엄청나게 물어야 했다. 나중에 계산해 보니 약 2억원 이상의 적자였다.

북한측 무역관계자와 직접 상담을 했더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없을 텐데, 북한과의 교역경험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홍콩의 중개상만 믿고 추진했다가 낭패를 본 것이다. 중개상들 중에는 양심적으로 성심성의껏 중개역할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지나치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남북교역에 나서는 국내기업들이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전망에서 북한과 거래를 하려는 자세인 것과는 달랐다.

거기다가 중개상들은 우리나라의 무역규정에 어두워 때때로 커다란 실수도 저지르곤 했다. 다른 회사가 당한 일이기는 하지만 꿀이나 박하유 같은 반입제한 품목을 들여왔다가 부산세관에 압류돼 지금까지 2년이나 창고에 둑여 있는 사건도 중개인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나. 6개월만에 통관된 명태

두번째로 시도한 것은 구상무역이었다. 이쪽에서 비디오 7백50대와 TV 7백50대를 보내는 대신 북한측에서 명태 1천t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39만달러어치의 전자제품과 명태를

물물교환하자는 거래였다. 이때가 91년 10월로 당시 국내에서는 명태가 품귀상태여서 1천t을 팔면 10억은 될 것 같았다. 이 건만 성사되면 시멘트에서 손해 본 것을 전액 건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마음이 설레이기도 했다.

명태가 무사히 마산항에 들어와 냉동창고에 보관되자 이제는 빨리 통관만 하면 되었다. 나는 마산에 내려가서 냉동명태를 하역하는 작업도 보고 실물도 확인해 보았다. 선도가 완벽했다. 판매업자들이 서로 다투어 구매하겠다고 접근해 왔다. 정말 그동안 고생한 것을 하루아침에 보상받는 것 같았다. 수산청과 경제기획원에서도 명태값이 매일 뛰어오르니 빨리 통관절차를 밟아 유통시키라고 전화를 해 오는 등 관심을 갖고 있었다. 11월 3일에 마산세관에 통관서류를 접수시켰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마산세관측은 『원산지 증명서에 의하면 북한배가 소련 해역에 가서 잡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 북한산으로 볼 수 없다』며 문제를 삼는 것이었다. 세관측은 북한배가 소련해역에서 잡은 명태를 소련산으로 보아야 할지, 북한산으로 보아야 할지를 놓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세관측이 이 문제를 수산청에 문의해 본 결과 국내에서도 우리 선박이 소련 앞바다에 가서 명태를 잡아오고 있으며, 이 경우 국내 물품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회신이 나왔다.

이같은 유권해석이 나오자 세관측은 이번에는 이 명태를 어떤 북한배가 언제 어디서 잡았는지를 북한당국이 자세히

설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어야만 통관시켜 주겠다며 계속 통관을 보류시켰다. 경제기획원과 수산청이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조속히 풀어달라는 협조요청을 했어도 세관은 통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 하는 수 없어 북한측에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회답은 이랬다.『너희들이 북한사정을 조사하는 정보기관이냐』

냉동창고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명태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나는 마산세관에 세금을 선예치시키겠으니 우선 물품만이라도 통관시켜 달라고 통사정을 했지만 투서가 들어와 어렵다는 등 한마디로 쇠귀에 경읽기였다.

결국 이 문제는 통일원에까지 보고돼 지침서가 내려오는 곡절을 겪은 끝에 입하한지 무려 6개월만에 통관이 됐다. 그러나 이때는 KG당 1천원씩 하던 명태가 2백원으로 곤두박질친 뒤였으며 이미 다른 업자들이 소련이나 북한으로부터 명태를 사들여 재미를 보고 난 후였다. 뒤늦게 명태를 팔아 운임과 창고비를 지불하고 나니 수중에 한푼 남는게 없었다. 고생한 보람도 없이 39만달러를 고스란히 날린 것이다.

다. 북한 관계자와 상담에 성공

북한과의 교역이 계속해서 실패함에 따라 나는 심각하게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홍콩의 중개상은 시멘트와 명태의 실패책임을 몽땅 우리 회사에 덮어 씌우고는 연락 단

절상태가 돼버렸다. 북한과의 교역에서 계속 손해만 보게 되니 자금융통도 안되고 중소기업으로서 앞을 헤쳐나가기가 막막해 보였다.

그러나 이렇게 허무하게 물러설 수는 없다는 각오로 할로를 모색했다. 결론은 더 이상 홍콩의 중개상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반드시 북한무역 관계자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직교역루트를 잡기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마침내 일본에서 북한의 무역회사 인사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사람은 내가 북한과 교역을 하고 싶다고하자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동경의 상요무역회사 강사장을 소개해주고는 만나보라는 것이었다. 강사장과 만난 나는 솔직하게 나의 처지와 포부를 털어 놓았다. 홍콩의 중개상만 믿고 거래했다가 낭패본 이야기며, 북한물건을 들여올 때마다 손해만 본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측과 직접 교역을 하고 싶다는 뜻을 간곡히 전했다.

나의 꾸밈없는 희망이 북한측에 전달되었는지 차츰 긍정적인 반응이 보이기 시작했다. 드디어 3개월 후 북한관계자가 동경으로 와서 나와 첫 대면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다른 기업들보다 앞서 북한과의 직교역루트를 확보하게 된 나는 또다시 대북교역에 승부수를 띄울 수가 있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한 직교역이라기 보다는 거의 직교역에 가까운

통로를 확보한 셈이었다. 예컨대 일본을 통해 전화나 팩스를 넣으면 즉각 북한으로 전해져 수시로 의사교환이 가능해진 것이다.

라. 남한업체들 방해로 큰 손실입어

북한과 첫 직교역대상으로 삼은게 호두였다. 가짜 시비로 세관으로부터 3개월 조사받는통에 '93년 정월 대보름을 겨냥해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1백여톤의 호두가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혀장사를 하였다. 호두에서도 재미를 못본 나는 두번째 직교역대상으로 생명태를 지목했다. 그동안 개인적인 우정도 돈독해진 북한측 파트너의 배려로 파격적인 값에 생명태를 반입키로 한 것이다. '92년 10월 당국으로부터 1천t의 반입허가가 나왔다. 당시 우리나라의 생명태 총수요량이 2천t이었다. 나는 5백t급 러시아 냉동선 2척을 전세내 11월말경 청진으로 떠왔다. 하루에 4천달러의 용선료를 물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측에서 생명태를 실어주지 않는 것이었다. 사정을 알아보니 모 대기업이 북한측에 로비를 해 선적을 막고 있었다. 이 회사는 생명태 반입을 하려고 북한과 사전 합의하여 북한소유의 트롤선을 4척이나 투입, 정부의 반입승인이 나는대로 고기를 잡아 반입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승인이 나지 않아 초조한 상태였다. 북한측으로부터 소식을 들으니 몇몇 남한업체들이 『효원은 형편없이 조그만 회사라서

자금도 넉넉치 못하니 명태를 실어주면 안된다』며 방해공작을 펴고 있었다. 나는 오기가 발동해 물러서지 않았다. 북한측에 팩스를 보내 선적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결국 생명태는 몇 달을 끌다가 구정 전날에야 겨우 70t을 반입할 수 있었다. 그것도 세관에서 3일 머무는 바람에 상해버려 쓰레기값으로 처분해야 했다. 우리와 경쟁했던 대기업은 우리가 70t만 들여온 후 5백t 반입허가를 받아냈으나 50t밖에는 들여오지 못했다. 명태잡이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자기이익도 챙기지 못하면서 남의 사업까지 망쳐놓은 셈이다. 이번에도 선박대금, 열음값, 입항비, 박스대금 등을 합쳐 4억5천만원이 바다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거듭되는 교역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북한교역을 포기할 수 없었다. 가짜 호두시비 파동도 겪는 등 시련이 그치지 않았지만 그럴수록 오기가 되살아났다. 북한사람들과 거래를 하면서 묘한 감정도 생겨났다. 무언가 교역을 통해 그들을 돋고 또 우리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민족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동안 무역업을 해오면서 느끼지 못하던 감정이었다.

마. 성공리에 반입한 왕벌젓(로열젤리)

북한과의 교역에서도 남들이 안하는것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섰다. 무엇이 적당한지 아이템을 잘 골라야 하였다. 그

무렵 한국양봉협회에서는 국내 로열젤리의 생산량이 수요에 못미치는 점을 고려, 모 종합상사에 북한산 로열젤리의 반입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자 우리회사로 반입의사를 타진해 왔다.

사실 성인병 예방 및 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로열젤리의 주성분인 10HDA는 국제적으로 1.6%정도밖에 안된다. 그런데 웬일인지 유독 한반도에서 생산되는 로열젤리만 2.8%에서 3.8%까지 산출되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제품이다. 이는 4계절이 뚜렷한 우리 한반도만의 현상인데 북한도 같은땅, 같은 기후이니 이곳 남한에서 생산되는 로열젤리와 품질이 똑같아야 한다는것이 이곳 한국양봉협회 유영수 국장과 김재길 실험소장의 주장이다. 우리 국내에서는 인건비 상승과 밤낮으로 쉬지않고 작업해야 되는 매우 고역스러운 일이라 기껏해야 1년에 1.5톤에서 3톤밖에 생산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국내산은 사전 돈 있는 분들이 선금을 맡기고 장기적으로 독점하고 있으니 우리같은 서민들은 감히 국내산은 구경조차할 수 없는 아주 고급스러운 보약이되어 버린지 오래다. 국산이 1Kg에 600,000원씩이니 어디서민이 쉽게 대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사실을 귀뜸해 준 한국양봉협회 유영수 국장의 말을 듣고 『어! 이거 한번 해 볼만한 품목인데…』

나로 하여금 흥미를 끌기 시작하였다.

1993년 어느 여름날 무조건 김포 비행장으로 달려갔다. 북

경으로 날라가기 위해서다 물론 북한측 상사원에게는 북경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고…

『로열젤리라구요? 로열젤리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북한 상사원의 첫 마디가 잔뜩 기대에 들떠있는 나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여왕벌이 먹는 음식말입니다.』

『그거 꿀 아닙니까?』

『꿀은 일벌들이 먹는것이고 여왕벌이 따로 혼자서만 먹는 우유빛 색갈나는 음식말입니다.』

『아! 그러면 혹시 왕벌젖이 아닙니까?』

『왕벌젖이라구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린데 북조선에는 로열젤리를 왕벌젖이라고 하나보죠?』

『벌중에 왕이 먹는 음식을 북조선에서는 왕벌젖이라고 부르는데 사장선생님이 찾고있는 물건이 이것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그 왕벌젖이라는 것은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북조선에서는 왕벌젖을 전량 생약 원료로 쓰는데…? 불가능할 것입네다. 가져가실 생각은 생각조차 하시지 마시라구요.』

아이고! 이거 또 헛수고 한것이 아닌가. 중국에서 어렵게 만난 북한 상사원의 첫 마디가 공급 불가라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로열젤리를 수출한적도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쉽게 물려설 수는 없었다.

『남한에서 생산되는 로열젤리는 세계에서 최고의 품질입니다. 그나마 구입할 수도 없구요. 아마도 북한도 같은 땅 같은 기후이니 북한에서 생산되는 로열젤리도 남한 것과 똑같이 최고의 품질일 것입니다. 만약 최선생이 공급만 할 수 있다면 중국산보다 5배는 더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평양에 돌아가서 꼭 성사시켜 보십시오. 이 기회에 조선산 왕별젖이 세계에서 최고의 품질이라고 자랑할 수도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간곡히 부탁도 하고 설득도 한 후 북경에서 헤어졌다.

그후 10일도 못되어 북한 상사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사장 선생님, 축하합니다. 북조선의 관계하는 분들을 열심히 설득해서 사장선생님께 3톤을 우선 공급 시키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장선생님이 손해도 많이 보고 열심히 뛰시는 분이니 도와주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순간 나도 모르게 전화통을 대고 사무실이 떠나갈 듯한 큰 목소리로

『아이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최선생이 자랑스럽습니다.』 갑자기 흥분하여 떠드는 소리에 사무실 직원들이 무슨 일이 난나하고 어리둥절한 표정들이었다.

『선박을 곧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10HDA는 얼마나 산출 됩니까?』

『이곳 북조선 실험에서 2.83%가 산출되었습니다. 안심하시라구요.』

『이 사실이 다른곳에 알려지면 이곳 업자들이 서로 사겠다고 야단들일텐데…』

『걱정하지 마시라구요. 사장선생님께 독점으로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1993년 11월 3일 최초로 북한산 로열젤리가 북한의 원산항에서 이곳 부산항으로 도착하였다. 우선 1Kg짜리 10개를 이곳 저곳에서 챔플로 꺼낸후 한국양봉협회로 보냈다. 그런데 실험과정에서 10HDA가 2.4%밖에 산출 안된다는 것이다. 중국산, 호주산, 대만산 등의 10HDA가 1.6%에서 2.1%밖에 산출 안되는데 북한산이 2.4%나온다면 이 역시 우수한 제품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양봉협회의 생각은 북한산은 반드시 10HDA가 2.8%이상 산출되어야 북한산이라는 것이다. 2.8% 산출 안되면 다른나라 제품이라는 것이다. 한국양봉협회로부터 기대치보다 낮은 실험결과를 통보받고 하늘이 노래지는것 같았다. 계속되는 교역의 실패로 정말 기진맥진한 상태였고 이번 로열젤리마저 품질상 문제로 실패하면 나는 정말 설 땅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재정상태였기 때문이였다. 한국양봉협회에서는 혹시 북한에서 실험하는 과정과 남한에서 실험하는 과정상 차이가 있어 산출결과가 틀릴수도 있으니 북한의 연구소로부터 실험자료를 보내달라면 어떻겠느냐고 제의해 왔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 북한측은 쾌히 승락하고 실험방법 및 실험 통계수치가 수록된 서류를 즉시 보내왔다.

이것을 한국양봉협회에 보내주니 양봉협회에서는 『신주단』 모시듯 아주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좋아들 하는 것이었다. 해방후 40년이 넘게 북한으로부터 양봉에 관한 서류를 직접 받은것은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이며 이것은 한국 양봉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였다. 서류를 검토해 보니 남북한간 용어만 다소 달랐지 실험방법은 똑같았다. 다시 재 실험을 시작하였다. 북한측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곳 한국양봉협회에서 10HDA의 산출방법을 기술한 서류를 역시 북한측에 보내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양봉협회의 한 직원이 실험과정에서 실수한 것이 뒤늦게 발견된 것이다. 10HDA를 산출하는데 사용하는 시료를 잘못 투입하여 정확을 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은 북한산이나 우리 국내산이 다같이 10HDA가 2.8% 이상 산출되었다는 것이 공동실험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다.

그 즉시 나는 북한측에 사과하고 이곳 한국양봉협회의 실험결과를 보내주었다. 이 로열젤리의 성분분석 문제를 놓고 남북한간에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해 서로의 자료와 검사결과를 주고 받으면서 협의를 진행해 온 것도 아마 의미있는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듈다. 서로의 검사방법과 기구 시료등을 비교해 똑같은 기준에서 측정하려는 작업을 했다는 사실이 무언가 남북한간의 협력모델을 보여준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금년 1월 10일 나의 그동안의 실패를 보상해 줄 북한산 로열젤리 2.9톤이 서울에 도착하였다. 신세계 백화점에서 1Kg포

장으로 선을 보이자 기대대로 날개 돋친듯 팔려 나가기 시작 했다. 로열젤리는 위낙 비싼 식품이어서 그동안 100g 또는 200g포장으로 상품화 됐으나 과감하게 1Kg짜리로 내놓았는데 적중한 것이다.

바. 직교역 루트를 뚫어라

북한을 상대로 교역을 하면서 나만큼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도 드물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붙잡혀 갈 뻔했던 일이 두 번이나 있었고 반입물품이 없어진 적이 있었는가 하면, 일본 중국으로 뛰어다니면서 북한과 자주 연락을 취하는 생활을 수상히 여긴 관계당국이 미행을 했던 에피소드도 있었다. 어쨌든 갖가지 경험을 통해 이제 비로소 북한과의 교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은 셈이다. 이 기회에 그동안의 경험에서 얻은것과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북교역의 방향을 얘기해볼까 한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과의 교역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북측 파트너와의 직교역루트를 확보하라는 점이다. 나의 실패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개상에 의존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 또 선적과정에서 차질이 생겨도 현지상황을 파악하는데 번거로워 효율적인 대처가 불가능할 때가 많다. 직교역을 통한 신속한 통신체계의 확립 이야말로 남북교역 성공의 첫번째 관건이라는 게 나의 경

험에서 얻은 결론이다.

무엇보다도 직교역을 통해 상대방과 인간적인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경우 로열젤리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몇차례 손해를 보면서도 꾸준히 상대방과 성실한 거래를 해오면서 생긴 신뢰감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 같다.

물론 현재의 남북교역상황에서 엄격한 의미의 직교역은 성립되기 어렵다. 양측이 직접 계약을 맺고 물건도 직접 반출입 해야 하는데 남북한의 항구를 직접 연결하는 수송로를 북한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만은 중국에서 전 일본에서 전 직접 만나 체결할 수 있다. 요즘 중국 등지에서 북한 사람들과 만나 직접 상담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 중소무역업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사실상의 직교역이 가능하리라 본다.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필요가 있다. 백화점식으로 모든 물품을 취급할 게 아니라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확보하는게 유리할 듯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식 품임가공분야에 중소기업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보통 임가공이라면 원부자재를 보내주고 요구하는 규격 대로 제품을 생산케 해 다시 반입해 오는 형태를 말하는데, 그러자면 기술지도, 품질검사 등을 위해 현지방문이 가능해야 한다.

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역할분담해야

그러나 현재 기술인력의 방북이 불허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간단한 작업이 아니면 임가공교역이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몇몇 대기업에서 원단을 북한에 보내 작업복이나 가방 등을 만들고 있으나 더 이상 복잡한 작업을 요하는 임가공교역을 꺼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식품임가공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은 굳이 원부자재를 북한에 보낼 필요가 없고, 현지에 가공시설이 있으므로 간단한 주문에 의해서도 원하는 형태의 제품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조림을 이런 방식으로 들여온다면 북한에서 잡은 생선을, 북한의 통조림공장에서 남쪽이 요구하는 규격으로 가공하면 될 것이다. 가죽, 완구, 와이셔츠 등 의류, 목재 등의 임가공도 전망이 있지 않을까 싶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분담도 생각해봐야 할 점이다. 대기업에서는 커다란 프로젝트나 임가공교역, 아연괴, 금괴 같은 비교적 규모가 큰 원자재의 도입 등이 바람직하다. 농수산물이나 약재 및 소규모 물자에까지 대기업이 나선다면 남북교역의 활성화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에 의해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또한 남북교역과정에서 각 기업간에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질서를 잡는 일도 중요하다. 어떤 품목이 수익성이 있다고해

서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등의 폐단이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곤란하다. 작년의 경우 평양소주가 반입돼 인기를 끌자 몇몇 업자들이 뒤늦게 뛰어 들어 가격이 1년도 안돼 2배로 뛴었는가 하면 가짜 평양소주가 들어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우리 회사가 북한산 로열젤리 장사에 재미를 보았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국내업체들이 북한측에 로열젤리를 공급해 달라고 너도나도 부탁하는 바람에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둔갑하여 남한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북한상사원이 귀띔해 주고 있다. 특히 대기업은 경쟁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간의 자유경쟁은 자연스런 것이지만 남북교역에서 만큼은 자제해야 한다고 믿는다.

남북 직교역을 위해서는 기업인의 방북허용과 직항로 혹은 육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물론 핵문제 등 남북관계 진전의 추이에 따라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리라고 보지만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당장의 어려움이 한 둘이 아니다. 중개상을 통해서 교역을 하다보니 앞서 나의 경험에서 도 나타난 것처럼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빚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개료 부담도 있으므로 무역회사나 소비자들에게도 불리한 것이다.

직항로 문제 역시 당장 아쉬운 대목이다. 북한의 남포항에서 인천항으로 곧바로 내려오면 될 것을 일단 공해상으로 나갔다가 백령도 남쪽으로 우회해서 오는 바람에 수송비 측면에서도 매우 비경제적이다. 더구나 우리쪽에서 북한으로 갈

때는 그나마 공해상을 거치는 편법도 허용이 안돼 홍콩이나 대련항을 거쳐야하므로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 남북교역 활성화돼야

또한 정기적인 배편이 없는 것도 남북교역의 발전을 가로 막는 커다란 장애요인이다. 작년부터 국내 해운사가 제3국 적선을 용선해 한달에 2항차를 운항하고는 있으나 적기에 물건을 실어나르기에는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정기적인 직항문제는 우리 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북한측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문제이므로 북한측도 자세전환이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개선가능한 것으로 북한 물품에 대해 포용력을 발휘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 북한에서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농수산물마저 우리의 무역규정상 제한품목이라는 이유로 반입이 금지되고 있는 것들이 많 은데, 이는 남북교역을 내부거래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하겠다. 또 나의 명태사건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수산물 등 계절변화에 민감한 북한산 물품은 세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지금처럼 조사하는데 몇 달 씩 끌게 아니라 해당세금을 예치도록 해 우선 통관시킨 뒤 조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한다.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남북교역은 양쪽에 모두 득이 된다

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북한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사실 남한만큼 유리한 교역상대가 없다는 생각이다. 팔이니 호두, 땅콩, 명태니 하는 것들을 수출할 곳으로 남한만한 곳이 어디 있겠는가.

북한은 남북교역을 하면서 미쳐 예상치 못한 수입원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예로 북한에서는 땅콩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남한에서 사가니까 요즘은 대동강변에도 땅콩을 심어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기업활동은 분명히 이익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다. 남북교역도 마찬가지다. 지금 남북교역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 중에는 더러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앞으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경우 등을 대비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업인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남북교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시행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도 남북간에 서로 이익이 돌아오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정부에게만 기댈게 아니라 기업인 스스로의 분발도 필수적이다. 적어도 남북교역에 있어서만은 그동안에 우리 기업들이 보여주었던 여러가지 부조리한 관행들을 탈피해야만 할 것이다. 남북교역은 기업활동이라는 측면과 함께 통일과정의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5. 백복령 반입사례

- 한백산업

가. 추진동기 및 배경

무역이라는 상거래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상대 방간의 신뢰라고 배웠으며 한민족 한핏줄이건만 서로 다른 정치체제 하에서 근 50여년이라는 긴 세월을 대치상태에 있는 북한과 과연 얼마나 서로 믿고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들속에 친지의 소개로 알게 된 홍콩에 소재한 Y모회사의 K모씨의 소개로 북한과의 교역을 시작해 보기로 했다. 중개인 K모씨는 재미교포로서 이미 북한에 합작무역 회사와 농산물을 협동생산가공하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수산물 및 농임산물 일부를 구상무역 형태로 북한측과 거래를 하고 있었다.

당사는 K모씨가 북한측에 많은 무역실적을 갖고 있었으며 개인적인 친밀감이 느껴지는 사람으로서 북한과의 교역을 하는데 안도감이 들었다.

'92년 가을 모임에서 만난 친구의 얘기인즉 북한산 한약재

백복령 40톤이 홍콩에 있다는 것이다.

시장조사를 해 보아서 가능하면 인수를 하였으면 한다는 것이다. 그때까지 대북교역에 무지했던 당사는 당시 한약재 시장 상황이 북한산 백복령만 들여오면 한약재 유통에도 큰 도움이 되고 이익도 많이 남을 수 있다는 판단에 들여오기로 결정하였다.

그후 무조건 홍콩에 있는 백복령을 들여오기 위해 동분서 주 하며 뛰어 다녔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우수운 일인가? 정부의 반입승인은 물론 북한 물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갖는 여러가지 절차를 하나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백복령은 의약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보사부장관의 의약품 수입자 확인증도 필요했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원에 한하여 배정되는 쿼터물량이 있어야만 정부에 반입승인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지금은 그런 자격들을 다 갖추게 되었다. '92년까지 북한산 백복령은 일부 대기업에서 해마다 100톤내지 200톤 정도 반입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당사는 중소기업이지만 '93년도에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백복령을 반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백복령이라는 한약재의 특수성은 한가지 약재로 백복령, 백복신, 적복신, 적복령 등 여러가지로 쓰이며 소나무 밑에서 자생적으로 기생하는 일종의 균 덩어리라는 것이다.

그 덩어리 중에서 소나무 뿌리가 끼어 썩어있는 것은 복신이라는 약재로 쓰이며 색깔이 적색인 것은 적복령 또는 백복령 등으로 나뉘어 쓰인다는 것이다. 북한산 백복령과 중국에서 들여오는 백복령은 색깔의 차이가 약간 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백복령은 붉은색을 약간 띠고 있으나 중국산은 백색으로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의약품을 수입하려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별도 추천이나 쿼터배정 물량이 있어야 수입을 할 수 있으며 중국산 백복령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쿼터배정을 받아 대량으로 해마다 수입이 되고 있었으며, 북한산은 이와는 별도로 정부의 반입승인이 있어야만 하는 제한된 품목이다.

특히 북한산은 앞서 말했듯이 남한에서 생산되는 자생 백복령과 품질이 동일하여 국민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북한은 남한보다 산악지대가 많아 오히려 한약성분은 남한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일부 한의사들의 의견도 있었다.

그래서 당사는 세밀한 시장조사와 본격적인 백복령 반입을 추진키로 했다.

나. 추진 과정

백복령이라는 한약재가 앞서 밝혔듯이 제한승인품목이기에 당사는 먼저 통일원에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홍콩 중개회사에서는 북한의 조선만수무역회사라는 곳의 직원들이 중국에 와 있으니 접촉승인이 났으면 그들과 빨리 접촉을 해 보라는 것이었다.

홍콩의 중개인은 당사가 북한산 백복령을 사주면 북한에서는 홍콩측에 그 결제대금으로 비누와 설탕을 사서 올려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사는 북한과 구상교역을 생각하며 당사가 직접 백복령을 반입후 설탕이나 비누를 반출해 보겠다고 하였다. 의외로 홍콩측에서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고 홍콩에서 1차 제시한 백복령 가격에 당사는 최종구매자를 물색하여 가계약을 하였다.

며칠후 중개인의 연락을 받고 북한측 상사원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여 '93년 ○월 ○일 북경으로 출발하였다.

북경의 ○○호텔로비에 나와 있던 홍콩의 중개인과 만나 여장을 풀고 나니 북한사람을 만난다는 긴장감에 한편 가슴이 설레였다.

그날 저녁에 조선만수무역회사의 수출과장○○○과 직원 ○○○ 두사람과 호텔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저녁식사를

하며 상담에 임했으나 첫 대면은 부자연스럽기만 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경계의 눈초리로 보는것 같았다.

나도 역시 백복령 상담에 필요한 말 이외는 삼가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식사를 하며 술을 몇잔 마시자 분위기는 점차 부드러워졌다.

저녁식사를 한 식당은 한국기업에서 경영하는 북경에서는 많이 알려진 식당이었다. 그들은 우리나라 소주를 마시며 맛이 좋다는 말도 하였다.

그들과 상담도중 홍콩중개인이 1차 제시했던 가격보다 북한측에서 요구하는 가격이 비싸 당황했다.

나는 우리회사에서 생각했던 가격과의 차이를 밝히며 인하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들 얘기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국가 통제하에 「가격국」이라는 부서가 있어서 한번 가격이 결정되면 임의로 가격 조정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한국의 최종 구매자가 제시한 가격에 약간의 이익이 있어서 첫 거래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고 다음날 계약키로 했다.

그들은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친절했으며 국제적인 시사 감각도 엿볼 수가 있었다.

구상무역에 관한 얘기도 나왔으나 우리가 첫 거래에서 너무 욕심을 내는것 같아 신용장에 의한 거래도 결말을 내고 차후 거래부터는 구상교역으로 하기로 그들과 구두로 합의하였다.

식사후 북경소재 가라오케에 가서 술을 같이 마시게 되었다.

그들은 “울밑에 선 봉선화”라는 노래를 불러 같이 합창을 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다. 술자리는 밤 늦게까지 이어졌으며 그들도 상당히 만족해함을 느꼈다. 그들의 얘기로는 평양에 위치한 조선만수무역회사는 역시 평양에 소재한 조선만년보건총회사와 흡수통합되며 그들은 앞으로 조선만년보건총회사에서 근무한다는 것이다.

조선만년보건총회사에서는 신약 및 한약의 수출입과 한약재를 이용한 완제품 약제조등을 하는 북한내에서는 보건분야에서 최고 큰 회사라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백복령이라는 한약재의 첫 거래를 잘 성사시키면 북한에서 생산되는 모든 한약재에 독점 수입권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북한의 상사원들도 많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상사원들이 남한의 업자들과 제일 많이 약속하는 것이 어떤 거래 물건에 대한 독점권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날 계약을 끝내고 선적은 내가 귀국해서 홍콩에 통보하고 신용장이 개설되면 1개월만에 남포항에서 선적 키로 했다.

홍콩에서는 '92년도에 홍콩창고에 가져다 놓았던 40톤의 백복령도 북한으로 반송시켰으니 물량은 북한에 분명히 있다 는 대답을 했다.

당사는 국내 최종구매자와 상의끝에 200톤 계약 물량중 우선 100톤을 선적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측에 있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는 백복령이 쿼터풀목이기 때문에 당사가 쿼터배정을 받아야 반입을 할 수 있다고 하며, 통일원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반입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대답이었다.

당사는 보사부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통일원을 몇차례 씩 방문하며 결과를 기다렸다.

보사부에서는 보사부대로 '93년도 한약재 수급계획안이 안 나왔다고 하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보사부의 지시에 따르는 상황이라 어쩔수 없고 통일원측에서 해결해 주어야 하나 통일원측도 주무부서인 보사부의 '93년도 한약재 수급계획안이 나와야만 승인을 내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문제점은 농림수산부에서는 산지 한약재 재배 농민을 보호한다는 입장론을 폈으나 백복령은 국내에서 재배가 불가능한 자생약초인데 어떻게 한약재 산지 농민보호와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물론 백복령 한가지 약재에 대해서만 '93년도 한약재수급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한 상황인 대북한교역의 어려움도 정부당국에서는 이해해 주어야 할 것 같다.

북한측과는 통신도 안되고 쉽게 그쪽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것도 아닌데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선적스케줄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홍콩 중

개인측에서는 왜 선적스케줄을 안 잡느냐고 독촉이었다. 결국 우리는 무리한 방법을 택하여 물건을 우선 반입하기로 하였다.

마침 홍콩 중개인 소유의 선박이 북한에 올라갈 계획이라하여 그 배에 선적키로 홍콩측을 통해 북한측과 합의 당사는 물건을 받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최종구매자와는 북경에서 북한측과 정식계약을 한 후 다시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종구매자의 동의하에 물건을 먼저 반입 키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측에서 내려보낸다는 날짜에 물건을 실어 보내질 못했다. 최종구매자와 이제나 저제나 도착하길 기다리던 우리는 홍콩측의 실망스러운 대답을 듣고 말았다.

북한측에서 선적하기 위해 배를 보내라고 그렇게 독촉하더니 백복령 일부가 강원도에 몇 군데 나누어져 있어 남포항에 옮겨 놓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결국 우리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반입을 서둘러 추진하였으나 북한측의 사정으로 반입치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내에 백복령 100톤을 남포항에 갖다 놓은 후 홍콩을 통해 연락을 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던중 우리는 보사부담당자의 얘기중 백복령은 '93년부터 쿼터제에서 풀려 추천품목으로 전환이 되며 추천만 받으면 누구나 무제한반입이 가능한 거의 수입자동화 품목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다.

수입자유화가 되는 품목은 가격이 폭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불안해진 우리는 홍콩에 연락해서 북한측에 빨리 물건을 남포항에 갖다 놓을 것을 독촉하였다.

최종 구매자와의 계약 날짜도 임박해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사는 서두르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되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홍콩회사의 배로 남포항에서 선적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 배는 군산항으로 1993년 ○월 ○일 입항하였으나 군산 외항에 머물러 있던 중 한약재는 통관을 군산항에서는 할 수 없으며 인천항에서 통관해야 한다는 얘기 를 들었다.

결국 배를 인천항으로 돌려 1993년 ○월 ○일 하역을 하였다.

다. 운송 및 통관조정

국내에 두개의 선박회사가 북한에 제3국적선을 정기적으로 입출항시키고는 있으나 입출항 날짜가 불투명하고 용선료가 다른나라 용선료에 비해 북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비싸게 책정되어 있었다. 다행히 우리는 홍콩의 중개인이 배를 소유하고 있어 운송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1차 북한의 선적 약속 불이행은 일반 해운사와 용선계약을 했을 경우 화물 선적 유무에 관계없이 용선료를 전액 지불해야함은 물론 계약

된 날짜에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박출항이 지체될 경우
지체 배상금도 물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통관은 결국 보사부의 '93년도 한약재 수급계획안이 나온
후 통일원의 승인을 받아 어렵게 통관을 하였으며, 통관시에
문제점은 남북 직교역에서 북한의 상사원과 직접 계약한 서
류는 있으나 돈을 송금하는 홍콩의 회사와는 계약한 계약서
가 없기 때문에 세관 담당자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관세
를 포탈키 위한 위장반입에 관한 문제도 제기, 샘플을 채취하
여 세관에서 담당자가 나름대로 인천시내 한의원을 돌아다니
며 한의사들의 말을 종합, 국내에서 생산 시판되는 것과 품질
이 같다는 평가를 받고 통관을 해 주었다.

라. 대금결제 경로

북한측의 선적지연과 국내시장의 수입자유화 여파에 의한
가격폭락 등으로 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 홍콩으로 전신환송
금 하였으며 홍콩 중개상의 설득으로 북한측의 양보를 얻어
내 계약된 가격에서 인하하여 재계약하고 송금하였다.

마. 국내 유통과정 및 품질평가

어렵게 통관하고 나니 이번에는 판매가 되질 않았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하역후 통관이 늦어지자 그동안 백복
령은 중국에서 무제한수입되어 가격이 폭락할 대로 폭락, 구

매 희망자가 없었다. 반입하면 전량 구입하겠다던 최종구매자도 계약날짜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파기를 선언하고 구입을 않겠다고 하였다.

결국 우리는 전국의 한약재 유통시장을 둘며 적자를 감수하는 선에서 위탁판매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을 해서 어렵게 판매를 할 수 있었다. 북한산백복령의 품질은 국내 생산품과 동일하며 북한측에서 건조를 위해 잘게 부수지만 않았으면 국내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중국산을 쓰지 않으려는 일부 한의사들이 북한산 백복령의 품질이 좋다는 평가와 격려에 한편 그간의 고생이 큰 보람으로 와 닿는 것 같았다.

첫 거래를 무사히 마친 우리는 북한측과 다양한 거래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고 북한경제에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어 북한체제가 조금씩이라도 개방화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였다. 국내에서도 한약재 중 재배가 불가능하거나 생산이 저조하여 중국이나 일부 외국에서 대량수입이 필요한 경우 가능하면 정부의 지원하에 북한과의 교역을 늘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바. 교역상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

보사부에서는 백복령과 같은 경우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풀렸으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는 추천품목이라는 제한을

두었고 중국산 백복령은 업자들이 추천만 받으면 무제한 즉시 수입이 가능한 품목이 되었으나 통일원측에서는 추천품목이라는 이유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여 반입승인을 내주고 있는데 승인까지 20일의 경과는 무역에서 상당히 길고 중요한 날들인 것이다.

이러한 것은 과감히 풀어 수입자유화 품목과 같은 기준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라 앞에서 밝혔듯이 세관에서는 돈이 송금되는 홍콩과의 계약서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통일원에 직교역 승인을 얻어 북한 상사원과 직접 계약한 계약서를 갖고 도 세관직원의 의심을 받는 격이 되었다.

통일원에서는 간접교역이 아닌 직교역에 한해 이 문제에 관한한 세관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면 하는 또 하나의 바램이다.

또한 가능하면 국내 선박회사중 건설한 회사를 선정 남북 직항로가 더 많이 운항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아무리 북한 상사원과 직접 접촉한다하더라도 우리들은 북한측의 기업정보를 많이 알지 못하는 입장이다.

통일원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북한상대무역회사들의 정보제공을 많이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93년도 북한산 한약재 수급계획안 중 '92년과는 달리 수입자유화 품목과 쿼터품목 그리고 추천 품목으로 나누어 있던 것을 추천품목과 탄력운영품목으로 나누었으며 북한산 한약재 중 반하, 백출, 창출, 음양과, 만삼,

시호, 오미자, 지황 등에 한하여 물량을 결정,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는 정부의 직교역 승인을 받은 업체들에 한해서 샘플을 채취하여 선정을 하는 방법으로 업체가 결정되었다.

당사에서도 반하 50톤을 조선만수무역회사와 계약하여 신청하였으나 탈락하고 말았다. 정부의 경직된 운영으로 이미 계약이 끝난 물량에 한해서까지 반입 시도도 못해 본 체 북한측과 계약파기를 하였다.

이로 인한 신용의 실추는 물론 그간의 노력의 댓가는 물거품이 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좀 더 세밀한 계획안을 제시하여 업체가 이미 계약한 물량은 가능한한 반입이 되도록 힘써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반입승인이 나와도 북한측에 물건이 없거나 또는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반입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차피 선정이 되어서 북한산 한약재를 반입하려 해도 이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반입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면 업체들의 피해도 큰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반입승인을 내줄 때 기한을 길게 잡아 승인을 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간의 북한측 상사원 얘기를 들으면 북한측에는 석유가 모자라서 자동차가 원활히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로 인하여 유일한 수송수단인 기차는 물건을 수송하기 위해 움직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도 들었다.

그러다보니 그들도 북한의 여러곳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들

을 각 항구에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반입이 늦어진 경우 물론 정부에서 연장도 해 준다고 하지만 일차 승인시에 반입 날짜를 길게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사. 최근 접촉한 북한 상사원과 동향소개

최근 접촉한 북한상사원중 한사람은 수출과장의 직책을 갖고 있었으며 또 한사람은 일반직원이었다.

그들은 북한산이 아닌 다른나라 상품도 상담을 해 왔는데 특히 러시아산 녹용이나 모터보트 등에 관해서도 구입여부를 물었으며 이는 북한의 사정이 수출할 원자재가 점점 부족해져서 그리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전자제품은 북한측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이 있으나 남한에서 생산되는 것은 북한으로의 반입에 난색을 표했으며 가능하면 일본제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값이 싼 한국산 제품이 있으면 상표나 한글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반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대답이었다.

일본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그들이 요구하는 가격은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이다보니 일본현지 덤핑시세보다도 더 낮은 가격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들은 임가공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당사에 임가공 물량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남북의 기업활동이 늘어나서 통일한국에 밀거름이 되길 기원하며 정부 당국에 대북교역업체에 대한 각별한 지원을 요망한다.

6. 백출·창출 반입사례

- (주) 대하약업상사

가. 추진과정

당사는 한약재 전문 수입업체로서 지난 1990년도 부터 북한 한약재를 취급하였다. 당사는 회사의 규모가 작고, 지명도가 낮은 관계로 거래상의 명의는 효성물산(주)에 의존하여 왔으며, 지난 1990년도에 처음으로 홍콩의 금강개발유한공사를 통하여 북한과의 간접교역 형태로 한약재 반입을 성사 시켰다.

당시 효성물산주식회사 및 홍콩의 현지 법인인 GO BETTER LTD를 창구로 이용한 바, 동 거래에서 백출, 창출, 오미자 등 80여톤의 약재를 반입한 후, 이것이 북한내의 한약재 수출회사들에 알려지면서 북한에서 파견된 마카오 주재원 또는 중국 광주 소재 무역대표부 등으로부터 GO BETTER LTD에게로 약재 수출의사가 있음을 여러차례 제안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에서 제안한 품목 대부분이 수입제한에 둑여

있는 사정으로 반입승인을 득하기가 어려워 그 제의를 받아 들일 수 없었다.

1992년도 들어서면서 정부에서도 반입할 수 있는 한약제 품목을 늘리는 등 대북한교역의 기회를 넓혀주고 있는 가운데, 그해 6월 당시 효성물산(주) 과장으로 재직중이었으며 현재는 당사에 재직중인 고○○씨가 정부의 승인을 득하여 북한측 인사를 접촉, 한약제 거래 가능성을 타진 하였다.

동 상담후 6월 20일 북한의 만년보건총회사로부터 거래 관련한 FAX를 접수하였고 북한측 관련 인사들과 다시 북경에서 상담하여 가격, 납기등 계약에 관한 일체의 협의를 하여 약 500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계약물량을 반입하던 중 북한과의 한약제 직교역 승인 내용이 신문을 통해 발표되면서 그 양이 국내 수요량을 훨씬 초과됨이 알려지자 국내 시장에서 가격의 폭락 조짐이 있었고 이것이 얼마후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계약물량중 약 300 톤만 반입한 후 동전 거래를 종결한 바 있다.

1993년 8월들어 '93년도 북한산 한약제 반입에 대한 요강이 발표되면서 당사는 당사 중개인(AGENT)인 오○○씨를 통하여 북한의 광명성총회사와의 직교역을 추진하였고, 10월에 들어서 당사의 고○○씨, 효성물산의 오○○ 과장, 조○○ 과장 및 태창의 직원 1명이 북경에서 메리야스 임가공,

북한술 반입건, 한약재 반입건 등을 상담코자 북한의 김○○ 광명성총회사 소속 광명성무역회사 사장과 상담하였으며, 이 때 당사는 북한산 들쭉술 17,000병, 인삼술 10,000병에 대한 의상거래 및 한약재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였다.

또한, 11월초 당사는 다시 당시는 광명성총회사의 부총사장이며 현재 대성무역회사의 부총사장으로 영전된 박○○ 부총사장을 다시 만나 술 및 한약재 거래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술에 대해서는 신용장을 개설함이 없이 일단 선적키로(외상거래) 합의하여 12월초 반입 되었으나, 당사는 주류 수입 면허도 없을 뿐더러 판매망도 전무 하였으므로 전량 코티리퀴에 OFFER 자체를 인도하여 코티리퀴에서 직접 효성물산 홍콩지점으로 대금을 결제한 후 인수토록 하였다.

한편, 한약재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정부로부터 '93년 12월 30일자로 반입승인을 득하였으나, 승인서 내용중 대금결제 조건 및 주거래 은행등에 착오가 있어 이를 변경승인 요청한 바, '94년 1월 26일에야 승인이 나옴에 따라 북한측에 L/C 개설이 상당히 지연 되었다.

당사는 북한측에 신용장개설 지연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하고 되도록 '94년 3월 15일전에 선적완료하여 줄것을 요청했으나 3월 28일에야 선적할 수 있음을 알리는 FAX를 접수하였다.

당초 한약재 승인 품목 4가지에 대해 총 256톤중 226톤이

반입되어 통관을 완료하였다.

한편, 통관과정에서 승인사항에 있지않은 백출이 일부 발견되어 북한측에 이에 대해 문의한 바, 유첨 ①과 같은 FAX를 접수하여 이를 이미 정부에 보고 하였으며 세관측에서 당사로서는 책임이 없고 불가항력인 점을 참작, 통관허가 하여 주었다.

나. 한약재 거래상의 문제점

(1) 품질문제

공산품과 달리 표준화나 규격화가 이루어 지지않아 샘플만 보고 진행할 경우 샘플과 상이한 품질이 반입되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92년도 거래시 당사에서 반입한 복령은 생산후 4~5년이 지난 제품을 선적하여 현재까지도 약 60여톤이 재고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2) 가격문제

북한산 한약재는 대부분 중국산에 비해 가격이 적게는 20~30%에서, 많으면 약 50% 가까이 비싸다. 따라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한약재와는 관세차이를 감안 하더라도 다소 경쟁력에서 뒤떨어진다.

당사에서는 이 점을 계속 북한측에 설명 그들을 이해시킴으로써 소위 그들의 수출품 국가표준가격을 낮추는 노력을

해왔으며, 실제로 '92년도에 비해 상당한 가격인하를 받았다.

(3) 중국산 위장반입의 문제

현재 북한에서는 한약재의 수입 및 재수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는 그동안 일부 북한회사가 중국산 인삼을 수입하여 이를 개성고려인삼으로 수출하였다가 수입자들에게 이 사실이 들통나 큰 문제가 되었으며, 북한의 외화획득 원천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삼수출에 차질이 생기자 북한당국이 인삼을 포함한 모든 한약재의 수입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에서 북한산 한약재 반입승인시 직수송을 의무 사항으로 하여 승인한다면 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본다. 제3국을 거쳐 반입하는 것을 승인할 경우, 위장반입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북한측 상대방에게, “남한에서 승인받은 업체가 많은데 대부분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마 중국산을 우리나라를 거쳐 수입코자 하였다가 작년 12월 한약재의 금수 조치가 내려져 못하게 되었을 겁니다”라는 설명을 한바, 직수송시는 모든 수출허가 및 선적허가 등이 북한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제3국 경유시는 북한배가 빈배로 출항해 중국에서 물건을싣고 홍콩 등지로 수송한 후 놔물만 주면 선박 자체의 항해일지 등을 조작하여 얼마든지 반입경로를 조작할 수 있고 산지증명서, 검역증도

돈을 주고 구입할 수 있다하므로 제3국에서 이를 증개해 줄 회사만 있다면 직접 북한사람과 접촉할 필요도 없이 간단히 위장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직교역 여부 확인방법에 대한 문제

현재 직교역 여부를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는 계약서 및 제3국 상담지에 대한 입·출국 확인(여권 COPY)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으나, 사실 홍콩을 통하여 북한측의 계약서 양식을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직교역 여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상기의 두가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불완전하며 '92년, '93년도에 경험한 바와같이 직교역을 한다하고 이를 이행 못해 타 회사의 기회까지 박탈해 결국 남북교역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업체가 많음에 따라서 이를 개선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당사의 경험으로는 ① 직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남·북간에 FAX 교신이 있어야 하고, 이때 FAX 상단에 송신자 FAX번호 및 날짜등이 쪽힘으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직교역이라면 홍콩을 증개지로 하여 얼마든지 북한측과 FAX교신이 가능하다). ② 또한 예를 들어 북경서 상담 했다면 북경의 투숙한 호텔에서 북한인사와 같이 투숙했다는 증거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북한측 인사가 상담시 북경으로 올 경우 거의 100% 체제비용을 우리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이 아니면 상담을 위해 출장 나오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 경우 자연히 북한측인사의 국적, 이름등이 명기된 호텔의 컴퓨터 계산기를 통해 발행되는 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③ 특히 상담 및 계약시 북한측 인사와 상담장면을 찍은 사진등을 첨부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직교역을 위한 상담이 사실이라면 북한측인사와 상담 및 계약장면을 사진찍는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다. 당사의 북한인사 접촉내용

당사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당사 직원인 고○○씨가 북경의 ASIA HOTEL에서 북한측의 광명성총회사 무역담당 사장 김○○, 지도원이며 실무 책임자인 채○○, 봉제담당 김○○ 및 정보기관 사람으로 추측되는 이○○ 등을 만나 고구마 재배 반입건, 경옥고 및 아연괴 반입건에 대한 상담을 하였다.

본 상담에서는 이미 광명성총회사에서 북한의 농업위원회에 상정하여 허가를 받은 고구마재배 반입건은 효성물산 홍콩지점의 현지법인인 GO BETTER LTD와 광명성총회사간의 계약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북한산 경옥고 및 아연괴에 대한 계약도 체결하였으며, 이중 고구마 및 경옥고는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반입키로 합의 하였다.

계약서의 서명은 북한측의 채○○씨가 하였고, 남한측은 당사의 고○○씨가 하였으나, 계약서 자체를 고구마는 농업

위원회, 아연괴 및 경옥고는 대성무역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며
효성물산 또는 당사의 명의로 계약하는 것을 거리는 관계로
직교역에 대한 서명은 광명성총회사 자체에서 수출하는 거래
전만 가능하고 타 회사에 거래 연결하여 주는 건들은 아무래
도 되도록 직교역 형식을 빌리지 않으려는 인상을 받았다.

내용적으로는 남·북간의 직접 서명에 의한 거래이나 형식
적으로는 북한과 홍콩상사간의 계약형식을 따랐다.

광명성종회사
KWANGMYONGSONG GENERAL CORP.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평양시 보통강구역 세거리동
SECOPRI DONG, ROTTONGKARD DIST. PYUNG YANG, D.P.R. OF KOREA TEL : (850) 2-814117
TEL : (850) 2-814117

to : go Better Ltd HK 2/F
frm : 8528455747 FAX : 8528455747
attn : MR. DAVID OHRE KOO
c/o MR. YN SHIN

Re: 약속한 일정

지사의 4월 22일에 FAX 빼았습니다.
지사의 일정에 대해서 약속한 일정에 대해서는데
이전에 일정에 연기된 경우, 배송하지 종에서 상황을 고
려해 일정의 부족으로 경로를 찾고해야 했던 경우. 배송을
100여개국도 수리하고자 보내는 운송과 같은 경우입니다.
우체국은 가끔 배송은 험한 물건으로 운송상 문제로
제출이 아닌경우에서 경로에서 차해하여 찾기 어렵고 어렵고
경로에 지사의 FAX를 빼고 보내 배송 우편으로 보내거나
우체국 배송 기관이 찾을 가능성이 있으나 경로에서 경로의
수수료와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날짜 확정화면 주시면 그만
하게 되겠습니다.

7. 무연탄(코크스 원료) 반입사례

- (※) 쌍 용

가. 교역 동기

주물용 코크스를 생산하고 있는 A社에서는 국내판매 및 동남아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自社 코크스 제조원가 절감 및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그간 당사를 통하여 수많은 샘플을 수집하였고, 오랜기간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결과, 접결성(COKING)이 우수하고 타 성분도 코크스 제조에 적합한 북한산 무연탄을 발굴하였고 '93년도에 동 무연탄 10,999톤을 반입했었다.

A社에서는 동 무연탄을 코크스 제조원료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국내 주물업체에 공급하여 실제 사용해 본 결과 기존에 생산해 오던 코크스 품질과 전혀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주위의 만류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무연탄 반입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던 것이 결실을 맺게 되어서 당사로서는 커다란 보람이 있었으며, 실제 물건을 반입해 봄에 따라 북한과의 거래추진에 어

느정도 경험(KNOW-HOW)도 갖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A社에서도 북한산 무연탄이 실제로 반입될 수 있는지, 반입된다 하여도 기존에 테스트 했던 샘플과 같은 탄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등의 많은 의문이 있었으나, 본 선적을 통해서 이러한 의문들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북한산 무연탄의 사용 및 수입가능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A社에서는 기존에 사용하여 오던 수입 무연탄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는 북한산 무연탄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로인해 대폭적인 원가절감을 하게 되었다.

동시에 내수시장 확대 및 그간 동남아 시장에서 저가의 중국산 코크스에 밀려 부진했던 수출 경쟁력 회복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에 당사에 '94년도에 同 북한산 무연탄을 반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 당사에서는 지난번 선적의 경험을 십분 살려 홍콩 중개상을 통하여 북한과 연간계약을 체결하고 A社와도 상기 물량공급 계약을 여러가지 제반협의 끝에 체결하게 되었다.

나. 교역 내용

A社에서는 '93년 반입했던 무연탄의 사용량을 감안하여 연간계약의 첫번째 선적분(10,000MT±10%)에 대하여 3월 초에 인천항에 도착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사도 선적시기를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선

박은 '93년도에 당사 북한산 무연탄 선적을 위하여 배선되었던 동일한 선박으로 배선하였고 당사로서도 한번 경험이 있었던 선장이라 남포항에서 선적을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였다.

관련 신용장도 10,000MT±10%로 이미 개설되었고 물품 준비 상황도 이상없었으며, 북한에 입항하는 모든 배에 대해 조선대외운수회사에서 발급하는 입항 허가번호도 입수하는 등 모든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선박도 예정대로 남포항에 무사히 도착하였고, 선적항의 일 기불순으로 다소 접안일정이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하기와 같은 일정으로 선적이 진행되었다.

2월 23일 15:00 남포항 도착

2월 24일 16:30 접안

2월 25일 08:30 선적시작

2월 27일 08시 현재 3,500MT 선적

2월 28일 08시 현재 6,400MT 선적

3월 1일 11:30 선적 완료후 출항

선적되는 동안 하루 한 번 이상 선적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선적도 콤베어벨트 고장으로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다. 모든 상황이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이 남포항에서 선적을 마치고 출항하여 인천항에 도착하리라 예상했던 당사로서는 예기치

못했던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3월 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최종 선적수량을 확인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배는 이미 출항한 상태에서 3월 2일 선적수량을 확인한 바로는 선적수량이 신용장상의 수량 ($10,000\text{MT} \pm 10\%$)을 초과하여 총 11,661톤 선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물론, 신용장상의 수량과 금액만 정정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 되지만, 반입수량 및 금액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 수량의 변경을 위해서는 상기 기관의 승인이 재차 필요했고, 상대적으로 인천항 도착시기는 너무 촉박하여 통관등 제반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사로서는 난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同一 상황에 대하여 선사측과 선주측에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당사에서 요구한 선적 수량과는 관계없이 북한측은 일방적으로 선적지시를 $11,000\text{MT} \pm 10\%$ 로 지시 내린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사로서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이로인해 관계기관이나 실수요자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추후에 해결하기로 하고 이미 선적되어 남포항을 떠난후 옆기 때문에 초과 선적 수량에 대하여 당사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본 초과수량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신용장 변경을 득하여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통관을 하여

A社에 인도하였다.

다. 품질 평가

북한에서 반입하는 무연탄은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코크스를 만드는 원료로 투입되기 때문에 품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난 '93년 반입시 A社의 자체 분석결과 회분이 북한측 분석결과 보다 다소 높아 코크스 품질을 기준대로 유지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금번 선적전에도 북한측에 수차례 강조하여 품질 보장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었다.

금번 무연탄이 인천항에 도착하자마자 A社에서는 공장으로 무연탄을 운송시키기 전에 금번에 반입한 무연탄의 품질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하역중인 선박에 올라가 샘플을 채취하여 A社의 자체 분석 실험실에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회재성분이 다소 높아 A社에서는 동 무연탄을 코크스의 연료로 사용할 경우 코크스의 회재성분에 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하여 원료로서 사용에 난색을 표하였으며 원료로 사용할시에도 당초에 계획하였던 제반 생산비용에 추가의 비용 발생도 예상된다고 당사에 통보하여 왔다.

당사로서도 북한측에 계약된 규격과 다소 차이가 나는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북한측에서는 선적항의 분석결과를 계속 주장할 뿐 해결의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상기건으

로 오랜시간 지체할 수 없는 당사로서는 본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A社 홍콩중개상, 북한측을 설득하여 회재성분에 대하여 제3의 공인된 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 그곳에서 나온 결과를 최종의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제3공인분석기관의 회재시험 결과가 선적항의 분석결과보다 다소 높게는 나왔으나 A社에서 코크스 원료로 투입하여 사용하는 데는 커다란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듯 원료로 투입되는 무연탄이기 때문에 품질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적시에는 당사에서 요구하였던 품질과 다소 차이가 났었으며, 지척에 있으면서도 직접 가서 보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무척이나 답답하기만 하였다.

당사가 판단하건데 본 선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데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품질관리가 철저하지 못한데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 탄광에서 생산시 품질관리, 선적항까지의 내륙운송시 탄 관리, 선적항에서의 화물관리 및 선적을 위한 제반설비 등 모든것이 아직은 미비하고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으로 확인되었다.

라. 향후 반입시 검토사항

(1) 선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확인 요망

대북한 거래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사태가 일어날 가능성

이 당시 존재하므로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금번 사태도 선적진행 사항도 양호하고 순조로웠으나 3월 1일이 공휴일로 인해 연속적인 선적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선적수량을 초과하여 선적하여同一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측의 정확한 계약준수 미이행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선박회사 및 중개상에게 선적물량 준비 확인 및 선적 수량을 재차 인식시켜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2) 계약시 품질하자에 대한 정확한 보상책 강구

품질이 중요시 되는 물건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계약서나 신용장상에 하자 품질 선적시 별도조항 삽입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통관후 직접 그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후에 수입자로부터 사용 가능하다는 최종판결을 득한 후에 대금결제(NEGO)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북한측은 자기측에서 발행한 분석결과를 최종 분석 결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북한측 검사결과와 반입후 최종 수요가의 검사결과가 차이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국제적인 제3공인 분석기관을 선정하여 同 기관의 분석결과에 따라 해결할 것을 명분화 해야하며 이경우 품질하자에

대한 정확한 보상책도 함께 계약시 명분화 하여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통관시 제반 선적서류 확보 필요

남북한 간의 거래는 국내간의 거래로 인정하여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수입업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다른나라의 물건을 위장반입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에서는 북한물품에 대하여 통관용 서류에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을 위해 반드시 제반 선적서류와 함께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하다. 따라서 적기에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선장이 직접 제반 선적서류를 가지고 오도록 사전에 선박회사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 교역 효과 및 평가

금번 교역에서도 '93년도에 반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부딪혔었으나 결국 모두 해결되어 무사히 반입하였고, 이로인해 당사로서는 남북교역에 있어서 또 한번의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현재 북한이 체제유지상 개방되어 있지 않아 현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교역거래를 하기에는 많은 위험부담과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나, 사전에 제 위험요소를 최소화시키도록 모

든 사항을 철저히 조사 대처하면 나름대로 큰 문제없이 교역의 효과를 거둘수 있으리라 여겨지며, 지속적인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면 향후 남북교역에 많은 진전이 있으리라 기대되며 남북간의 상호이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한다.

북한의 핵사찰 거부와 김일성 사망등으로 남북관계가 다소 긴장되어 세계의 모든 시선이 집중 되었음에도 민간차원의 경제교류에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정부의 의연한 조치가 궁극적으로는 머지않은 장래에 단순한 교역차원 이상의 효과를 얻게 될것이라고 우리모두는 기대하고 확신한다.

현재 남북교역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을 단순한 무역거래가 아닌 그 이상의 효과와 또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지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를 지속적으로 가져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당사는 단순한 교역 차원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남북교역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8. 평양소주 반입사례

- 합자회사 남북홍업

가. 추진동기 및 배경

당사는 북한산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로서 정부의 외국산 주류수입개방조치에 따라 수입면허를 취득하고 북한산 평양소주와 대동강소주를 반입, 공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가 북한산 주류 그것도 소주를 대상으로 하여 회사를 창업한 이유는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소주에 대한 1천만 실향민의 향수와 호기심에 따른 확실한 시장수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일반적으로 북한상품의 조악성에 따른 불투명한 시장성과 만일 재고가 누적되는 경우의 변질과 유통기한 만료(OUT OF DATE)현상이 따르게 마련인데 “술”만은 오래 두어도 변질이 거의 없고 유행에 관계없이 재고 처리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북한소주를 주된 사업대상 품목으로

정하고 이의 반입에 관한 자료수집과 아울러 시장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때가 1989년 봄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는 북한측과 상담할 수 있는 아무런 대상자도 없었다.

첫번째로, 독일의 뮌헨에 있는 우리교포와 협의를 거쳤는데 거의 1년여에 걸친 상담끝에 얻어낸 결과는 우리나라 소주가격의 5배에 가까운 반입가격 요구로 무산된 것이다.

두번째로, L.A의 친북한 인사로 교포사회에서 김정일의 신임이 두텁고 모든 L.A지역 교민의 대북접촉창구 역할을 한다는 김모목사였다.

이 사람과 몇번의 시도를 하였으나 한마디로 「목사님과 술」이라는 명제는 어울리지 못하고 말았다.

세번째로, 일본의 교포를 통한 시도였으나 결국 여러가지 대북정책과 조총련에 대한 제약요소로 실패하였다.

네번째로, 중국의 거대 기업인 중신흥업공사(CCTIC)을 통한 시도였는바, 이들과 북한과의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이 심도있게 몇개월간 검토되어 실무선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총경리의 거부로 무산되고 말았다.

다섯번째로, 시도된 것이 중국에서 5개국 구성원 “두만강삼각지역개발추진위원회” (중국 국제상회부설)의 이사와 고문을 맡고 있는 분의 협력을 얻는 것이었다.

수차에 걸친 접촉끝에 상호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 내용은 그분이 중국에서 전구방식의 무역회사를 만들어

직접 이 사업에 참여키로 하는 한편 우리의 계열회사인 코리아와인마트가 수입하고 있는 모든 중국주류의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분과 우리가 몇개월에 걸쳐서 협의하는 동안 북한의 관계고위층과의 많은 접촉이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맨처음 북한소주를 반입키 위한 때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며 그동안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음도 물론이다.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특징적 사항은 협의 상대방과 우리들 자신 모두가 한결같이 북한소주에 대한 허황된 과대망상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모든 국제무역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 요건인 상품의 질과 납기등 거래조건에 관하여는 단 한번도 거론조차 없었으니 말이다.

이렇게 하여 북한소주의 반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1993년 초였다.

나. 추진경위

(1) 상담과정

북한산 주류를 국내에 반입하기 위해서 남과 북의 교역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로 해서 초기 상담과정은 그야말로 인내와 끈기의 연속이었다.

즉 국내의 주류시장의 규모 및 유통과정, 한국인의 음주문

화 등에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중국인에게 국내의 주류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그 내용을 듣고 북한에 가서 우리측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의 상담을 진행하기란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2) 시장 구조의 차이점

국내의 주류시장(대중주) 상황을 북한과 비교하여 본다면 국내에서는 대규모화된 생산설비를 바탕으로 대량생산, 저가 판매의 기본골조 위에서 자유경쟁판매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술을 제한없이 마실 수 있으나 상담기간중에 알게 된 북한의 음주문화는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른것이었다.

즉 규모면에서 소규모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이었고 생산되는 술은 자유판매가 아니라 배급제 형식을 띠고 있어서 전체적인 시장규모가 남한과 비교하여 볼때 엄청나게 적었으며 이러한 시장구조의 차이점 때문에 당사가 초기 평양소주 1차 분으로 개설한 신용장상 수량 160만병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는 북한식으로 볼때 160만병은 대단히 많은량인데 남한 주민은 매일 술만 먹고 사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당사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추후에 알 수 있었다.

(3) 물자부족 상황의 확인

상담을 통해서 사업내용이 구체화되면서 당사는 한가지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주를 담을 수 있는 병을 대량으로 만들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당사로서는 북한의 실정을 전혀라고 할만큼 모르고 있었지만 그간의 자료를 통해서나 상식에 준해서 생각해 볼때 그래도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주병 문제에 관해서 깊이 염려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당혹스러웠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말로만 들던 북한의 물자부족 현상을 대략적으로나마 알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당사에서는 중국측 파트너인 동방측과 협의하여 소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중국에는 여러곳에 유리병 생산공장이 있었으며 당사와 동방측에서 요구하는 병을 생산할 수 있었으나 생산이 되기까지는 또한 수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4) 술맛 감별사(SAMPLE 확인과정)

반입에 따른 제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당사로서는 또 한가지의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술은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음식료에 해당되는 관계로 식품위생법 등에 의한 기준이 설정

되어 있는데 만일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고자 하여 국내에 도착시켰는데 막상 관계기관에서 분석을 해보았을 때 기준에 적합치 않다는 판정이 나온다면 그야말로 사업의 성패가 달린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새삼스럽게 소주의 원료, 생산공정, 식품규격기준 등 소주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새롭게 점검하게 되었고 이때 많은 부분의 소주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파악된 내용을 중국측 파트너를 통해서 북한측에 전달하였으나 제대로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질 않았다.

왜냐하면 맛이라는 것을 말로 표현하여 전달하기란 여간 어려운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고 규격과 단위 그리고 사용하는 용어들이 상이하고 소주생산에는 비전문가인 관계로 더더욱 확신이 안되는 것이기도 했다.

이때야말로 직접 북한의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하는 수 없이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직접 생산된 시제품(SAMPLE)을 분석해 보고 시음해 보면서 확인하기로 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야기 될지도 모르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직접 중국과 북한의 접경 도시인 중국 단동시로 달려갔다.

물론 막상 생산된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동시로 달려

갔지만 역시 소주생산에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고 기본적인 분석방법만을 숙지한 상태였으므로 술맛에 관해서 기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국내생산 소주를 팩으로 준비해서 출장시마다 가지고 갔다.

이 기간 동안에 기타의 다른 문제는 대략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였으며 오직 술이 국내규격, 기준 등에 적합하게 생산되느냐가 중요했으므로 중국 단동시에 있는 호텔에 앉아서 중국측 파트너가 북한으로부터 가져다주는 평양소주 시제품을 단동 현지에서 분석해 보고 직접 시음해 보는 일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것도 쉬운일이 아니어서 평양소주의 맛을 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면 원래 입맛은 개인적인 차이가 심하고 규격화 내지는 정형화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그 의미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 국내소주 한번 맛을 보고 평양소주를 마셔보기도 하고, 아침에 마셔보고, 저녁에 맛을 보기도 하고 생각해 낼 수 있는 많은 경우를 스스로 설정해 가면서 맛과 기준을 점검해 나갔다.

그러나 이렇게 소주 시제품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 동안 국내에서는 국내유통을 위해서 진행하던 대리점 개설관계에서 계획보다 평양소주의 반입이 늦어지는 관계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고 그때마다 북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상대와 교역을 하다보니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으나 눈

에 보여지는 결과물이 없는 상태로 오랜시간 동안을 소비하다보니 내부적으로는 회사운영의 차원에서 경제적인 문제와 과연 평양소주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국내에 소개되었을 때 과연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가 하는 문제로 흔들림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5) 무역 및 거래 질서의 인식 부족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평양소주를 실지로 반입하는 단계에서는 그간의 어려움들을 극복했다는 뿌듯함과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설레임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난관은 거기에서 끝이 난것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북한과의 교역한 경험이 있는 중국내의 회사관계자들이나 국내업체 관계자들에게 듣고 있는 바가 있어서 대략적으로 계약내용 등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국가간의 무역거래형태를 채택한 마당에 설마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다.

일이 진행되는 내용이 비단 중국이나 북한에서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당사에서는 거의 매일이다 시피 중국측 파트너 회사와 전화를 통화하거나 FAX를 통해서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그리고 점검된 내용을 토대로 국내에서는 대리점망 조직과 국내운송체계의 확립, 대리점의 유통능력 확보를 위한 교육,

직원 채용, 운반용 차량구입, 홍보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국내에서는 국내대로 매일 매일 일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전화나 FAX상으로는 생산이 완료되어서 출발했다고 한 상품이 약속한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각양각색의 이유를 들어 가면서 납기를 지연시키고 있었다.

그때 대두된 이유들의 몇가지를 예로 들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상품(평양소주)을 싣고 갈 기차(빵통)가 부족하다

우리 상품을 싣고 가기로 한 기차(빵통)를 다른 지역에서 잡고서 보내주지 않아서 실어 보내지 못하고 있다” 등등 이루 열거하기도 쉽은 이유들로 인해서 계약서에 명기된 납기와 생산 스케줄을 어기기 일쑤였다.

이러한 많은 우여곡절끝에 평양소주는 대량으로 국내에 반입되게 되었다.

(6) 국내 시장 반응

많은 어려움이 있은후 평양알콜공장에서 생산된 희석식 소주(25도, 300ml)인 평양소주 1차분 80,000병이 1993년 7월에 인천항에 도착했다.

북한소주가 최초로 국내에 들어 왔다는 소식이 퍼지자 소식을 접한 각 요소 요소마다 예상대로 대단히 민감한 반응들을 나타냈다.

북한소주(평양소주)가 반입되어 시중에 판매되기 시작하자 각 매스컴에서는 앞다투어 소개해 주었다.

그것은 “평양소주”라는 상품의 상품성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40여년 동안이나 분단되어 있던 북녘땅에서 만들어진 소주라는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당사에서도 잘 알고 있었다.

어찌되었건 평양소주가 국내에 소개되자 당사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반응을 보여서 홍보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것이 사실이다.

평양소주가 시판되기 시작하면서 국내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당시의 대리점에서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즐거워 하였다.

아직 초보적인 단계라서 반입해 올 수 있는 물량이 위낙 적은 규모인 관계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소주시장 규모에 비추어 보았을 때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바램이 있었다면 어렵고 오랜기간에 걸친 노력끝에 시작한 북한소주 반입이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점진적으로 반입물량도 확대되고 상호간의 신뢰도 쌓여 나가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랬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위낙 반입물량이 적은 탓에 평양소주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는 국내에서 하루 소비되는 소주는 대략 6백만병에 육박하는데 평양소주가 반입되어 온 것은 1차로 80,000병 밖에 되지 않았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일부 매스컴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사실만을 보도하기에 이르렀다.

“평양소주 없어서 못판다”라는 제목하에 시중에서 평양소주가 대단히 인기가 있어서 값을 주고 사려고 해도 살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수많은 국내 업자들이 평양소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평양소주만 들여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

(7) 당사의 마케팅 전략

당사에서는 북한소주 반입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몇가지의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놓고 추진해 왔다.

그 기본적인 원칙이란?

① 소주는 국내에서 가장 대중적인 술로서 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술이므로 가격대가 국내 소주가격과 최소한 비슷하게 저렴해야 된다.

② 소주는 다른 술과 달리 저렴한 대중주기 때문에 규모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최대의 관건이다.

③ 북한소주를 국내에 반입 공급하는 것은 단순한 상품교역으로 인한 이윤추구의 목적만이 아니라 남과 북이 통일을 전제한 민족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제품이라는 것에 선도기업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자는 것이었다.

(8) 국내업자의 난립현상

앞절에서 소개된 바와같이 평양소주가 국내에 반입되어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호기심에 찬 소비자들이 한두병씩 찾게 되어 공급물량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품귀현상이 벌어지자 국내의 일부 무역업자 및 수입주류 취급업자들이 북한산 소주사업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였다.

물론 당사에서도 초기에는 북한과의 교역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2년에 걸친 오랜기간 동안 수많은 노력을 한끝에 반입해 올 수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2년여 기간은 국외에서 중국인 파트너를 선정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사업 진행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믿을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는 과정이었으며 국내에서는 국내대로 주류를 수입하기 위한 주류수입면허 등을 취득하고 반입승인에서부터 운반, 통관, 국내운송, 판매, 세금처리 관계 등 북한소주 반입사업에 관련된 제반 준비를 하는 기간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보도 내용에 평양소주가 없어서 못 판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빨빠른 무역업자들은 너나할것 없이 사전준비도 하지 않은 채 알고 있는 모든 채널을 통해서 평양소주 반입 노력을 했다.

당사에서도 알고 있지만 몇몇 업자들은 급하게 중국으로 달려가서 중국인 중개상의 말만 듣고 모든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일을 진행하다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한 경우를 익히 알고 있다.

그들은 중국이나 홍콩등을 통해서 평양소주를 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다시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북한측에서는 엄청난 오판을 하기 시작했다. 평양소주가 남한에서 대단히 인기가 높고 가격도 수출가격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그들은 아마도 자본주의 체제의 유통경로 및 과정 그리고 유통단계별 판매마진 등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최초에 당사와 동방측을 통해서 맺어진 독점공급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았고 이미 단가와 기한을 명시하여 개설한 신용장 물량을 다 소화하기도 전에 엉뚱하게도 가격인상 요구를 해 왔다. 그것도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터무니 없이 2배 인상 요구를 해 온 것이다. 정말이지 뜻밖의 상황이었기에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당사에서는 계약서에서 합의한 가격대로 이미 각 유통단계별 공급가격을 책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시점이었고 합의한 가격에 기준해서 각종 홍보를 이미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남감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중국측 파트너를 통해서 이미 계약된 물량을 중간에 가격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간의 상거래 질서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미 개설된 신용장에 의해서

160만병을 공급 완료하고 다음 거래분부터 가격협상을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설득을 시작했다.

그 설득과정에서 당사는 국내소주 유통과정에 대한 설명과 당사의 장기적인 사업계획등을 설명하여 설득하였으나 소득은 전혀 없었고 북한측에서는 계약내용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해 버렸다.

저들은 독점계약을 해 놓고 신용장을 개설한 상태에서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주장만을 내세울 뿐이었다.

즉 자기들이 납기를 지키지 못하고도 상대방측에 책임을 전가시키는가 하면 우리의 중국측 파트너가 북한에 가서 따지려고 하면 상대방에게 입국을 방해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고의적으로 계속 가격인상만을 요구하고 중국측에 보낸 포장재 등을 임의로 다른회사에 팔아 넘기는 것이었다.

(9) 2차 아이템 개발 추진(대동강 소주)

평양소주에 매달려서 북한측의 터무니없는 가격인상 요구와 공급중단 사태가 하루 하루 연장되어 가면서 당사에서는 무언가 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우리는 이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을 여러각도에서 분석해 보았다.

우리의 잘못인가 중국측의 잘못인가 우리의 분석결과 우리나 중국측이나 북한의 내부실상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물론 2차 아이템 개발은 단순하게 평양소주 공급중단으로 인한 궁여지책만이 아니라 애당초 남북교역을 시작하면서 남북간의 거래관계가 두 당사자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외적 요인으로 인해서 불안정할 수 있음을 알고 준비해 오던 터 이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한편으로는 천진의 파트너를 통해서 평양소주의 공급가격 환원과 공급재개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요녕성의 다른 국제무역공사를 통해서 추진하던 대동강소주 반입계획을 더욱 빠르게 진척시켰다.

(10) 중국 중간상의 농간과 국내업자들의 반응

평양소주가 남북홍업에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국내와 중국 중간상들에게서는 갖가지 소문들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요약해 보면 북한 조선식료무역회사에서는 앞으로 남북홍업에는 절대로 평양소주가 공급되지 않을 것이며 그 이유는 남북홍업에는 돈이 없어서 제품값을 받을 수가 없으며 심지어 남북홍업의 사장이 중국으로 도망을 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문들이 무성했었다.

그때 당사에서는 심히 불쾌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진실이 중요한 것이므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채 소문의 진원지를 파악해 본 결과 중국에 있는 H모라는 중간상이 그간 북한과 거래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조선식료무역회사에서 반출하는 평양소주를 구하기 위해 협안이 되어 가격을 불문하고 구

해 줄 수만 있으면 판매에는 걱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여러 채널을 통하여 국내업자들을 부추겨서 병당 55센트(FOB)까지 가격을 올리면서 이곳 저곳 국내업체들과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그런중에 당사에 대한 소문을 악의적으로 퍼뜨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국내업자들은 업자대로 너나할것 없이 평양소주를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달려가서 이사람 저사람을 붙들고 평양 소주를 공급해 달라고 애걸하여 2배 이상으로 올려진 가격으로 휴지조각에 불과한 평양소주 독점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귀국해서는 남북홍업은 평양소주를 공급받을 수 없고 자사만이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독점공급할 수 있노라고 큰소리쳤다.

즉 우리 국내업체가 중국측의 중간상과 협잡하여 상대회사를 모함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측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가는 사람마다 독점공급하면서 다른 상대방들을 끌어들인 것이다.

당사도 처음 계약당시 “독점적이고 안정적으로”이라는 조항을 삽입했지만 파기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큰소리 친 업체중에는 주류에 관련된 자격이나 준비가 전혀없는 사람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시키지도 못하면서 괜한 시장 및 거래질서만 혼란스럽게 만들고 북한 및 중국 중간상들이 기고만장할 수 있는 빌미만

제공한 꼴이 되어서 당사로서 카다란 낭패를 보았다.

국내업자들이 중국에 가서 평양소주를 공급받기 위해서 실현성없는 공급계약을 여러업자가 앞다투어 체결하는 바람에 평양소주 계약고는 당사가 파악한 경우만 계산하더라도 7,000~8,000만병 이상을 기록하게 되었다.

물론 생산공장인 평양알콜공장의 생산능력(월 20만병)을 생각한다면 웃지 않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지만(30년 생산분) 이로 인해서 조선식료무역회사의 류경섭사장은 외화벌이에 공이 크다고 하여 영웅칭호를 받았다는 소식이 평양중앙방송을 통해서 보도 되었다고 한다.

(12) 가짜 평양소주 사건

평양소주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던 '93년 12월말에서 '94년 1월초 사이에 중국에 있는 당사의 파트너로부터 심상치 않은 내용의 제보가 접수 되었다.

그 제보의 내용은 중국 단동시에 있는 단동주청이라는 술제조공장에서 비밀리에 가짜 평양소주를 제조하고 있다는 것 이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즉각 회의를 소집하여 만일 가짜소주가 생산되어 국내에 반입이 된다면 진짜 가짜를 불문하고 북한산주류 전체가 심각한 가짜논쟁에 휩싸이게 되고 이로인해 소비자들의 불신감이 유도된다면 어느품목 어느회사를 불문하고 사업의 진행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 판단하에 가짜 평양

소주 생산 및 국내 반입을 막아야 된다고 결론 내렸다.

그래서 당사의 대표는 급하게 중국 단동시로 출장을 떠나는 한편 중국에 있는 파트너에게는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만일 한점이라도 의혹이 될만한 부분이 있으면 북한소주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중국에서의 상황을 면밀히 알아보도록 요구했다.

다행히 당사의 파트너에게서는 가짜 소주제조에 관해서는 일체의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로 당사와 중국측 관계자와 함께 가짜 평양소주를 생산하고 있다는 단동주청을 방문하여 가짜 평양소주생산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사진촬영과 공장관계자의 생산사실 확인 내용을 녹음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 단동시에서 가짜 평양소주가 생산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증명할만한 증거를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로서는 향후 사업진행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

(13) 가짜로 몰린 대동강소주

가짜 평양소주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던 대동강소주 15,000병이 도착하여서 1차로 검역을 통과하고 원산지증명서, 위생검역증, 과경화물보관단 등 제반

통관 관련서류를 북한측 회사로부터 전달받아서 세관에 접수 시켰다.

그런데 기다리던 통관은 되지않고 관계기관으로부터 들어와 달라는 연락이 와서 들어가 본즉 남북홍업에서 금번 반입하는 대동강소주가 북한에서 생산되지 않은 가짜 상품이라는 제보가 관세청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통관이 불가능하며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수사를 착수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너무나 엄청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이미 세관에 제출한 서류가 북한당국과 세관에 의해서 발행되었고 그것이 원본임에 틀림이 없는데 가짜라고 할 수 있느냐며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만약 당사에서 반입하고자 하는 대동강소주가 북한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관계를 계산해서 충분할 만큼 담보를 제공할테니 선통관 후수사를 요구했다.

그 당시 당사 및 당사의 대리점은 이미 수개월째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하루가 중요한 때였으므로 빨리 통관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관계당국에서는 수사를 하겠다고 하며 당사가 제안한 방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당사로서는 떳떳하기 때문에 수사를 받을 것인즉 제발 빨리 수사에 착수하고 진위를 밝혀 줄것을 요구했다.

수사를 받는 과정중에 당사에서는 당당하고 의연하게 수사

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수사에 응했다.

이때 대동강소주의 최초 상담과정에서부터 최근의 상품도착에까지 일련의 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서류, FAX문, 기타자료 등을 제공하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정작 제보가 된 부분은 대동강소주라는 상품을 조선식료무역회사에서 등록한 상품인데 어떻게 다른 대동강소주가 반입 되었는가 하고 조선식료무역회사측에 따르면 대동강소주를 아직 한번도 반출한 적이 없는데 들어 왔다면 그것이 바로 가짜 대동강소주 아니냐는 논리였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본 대동강소주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북한회사는 조선삼천리무역회사이고 상표권 등록에 관한 문제는 북한의 내부적인 문제지 상표등록이 않은 제품이라고 북한제품이 아니고 반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항변하고 관련자료들을 제시하며 입증시켰다.

그래서 가짜 대동강소주라고 제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통관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당사로서는 기업윤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당사 나름대로 내용을 파악해 본즉 ‘대동강소주 가짜 제보’ 사건은 국내 모업체에서 대동강소주를 반입하고자 하는데 당사에서 먼저 반입하고 있음이 확인되자 가짜 제보를 통해서 당사 제품을 통관되지 못하게 막아놓고 시간을 벌어서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파렴치한 짓임을 알게 되었다.

다. 운송 및 통관과정

평양소주 반입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던 시기에 당사에서는 운송비용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착수했다.

그것은 소주는 병당 소비자가격이 대단히 싼제품인 관계로 운송비(국외 및 국내)가 차지하는 원가부담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두가지 방법 즉 남포에서 직접 인천항으로 오는 방법과 중국을 경유해서 오는 방법이 있었으나 당사에서는 후자인 중국을 경유해서 오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운송비 부담

남포, 인천간 직항로를 이용할 경우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관계로 위험부담이 많아서 소량씩(1회 선적물량: 1~20만 병) 운반할 경우 병당 해상 운송비만 해도 10센트를 요구해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중국경유하는 것에 비해서 3배가격이다.

② 도착일정의 불명확성

남포~인천간을 운항하는 배편의 스케줄은 비정기적이었으며 만일 인천출항을 한다고 해도 남포쪽에서의 진행 문제 때문에 도착기한을 예측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었다.(20일 이상 소요 된 경우도 있었음) 도착한 제품의 통관과정에서 사소한 몇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커다란 문제는 없었다. 다만

북한측에서 보내온 서류가 타이핑된 것이 아니라 손으로 쓴 것이라서 몇번 실랑이 한 경우가 있었으나 북한측에서 보내온 원본서류임이 확인되면서 통관할 수 있었다.

라. 국내유통과정 및 품질평가

국내유통과정은 당사계획에 충실하며 철저하게 당사대리점 을 통했다. 이는 당사가 북한주류사업을 장기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차기 시장질서 문란을 염려한 때문이었다.

시장에서의 평양소주에 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는 두가지 양태로 집약되었다. 그 하나는 국내 소주에 비해서 조금 순한 맛이 나서 여성들이 마시기에 부담이 없다는 것과 호기심에서 마셔 보았으나 품질면에서는 아무래도 국내 소주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다.

마. 결 론

첫째로, 북한과의 거래에 있어서 우리의 업체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덤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느꼈다.

즉, 정부당국에서 업자들을 사전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우리 업체끼리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우리만이 피

해를 보는 이런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저들은 창구를 일원화시켜 놓고 국가차원에서 진행시키는데 우리는 업자간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인하여 국내가격의 몇배를 주고 사오는 이런 거래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획일적인 국가체제인 북한과의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격체계인 북한과의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격체계등을 장래의 남북교역 및 통일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과열되었을 시에는 조정권을 발동하는 등 조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Ⅱ. 반출사례

- 1. 화학제품(미래물산)**
- 2. 선박용품(기드엑심)**

1. 화학제품 반출사례

- 미래물산(주)

가. 일반사항

미래물산은 아시아권과 미주에 석유화학제품을 매년 3,000만불 정도 수출하고 있는 중견무역상사로 당사의 거래회사인 홍콩의 T사는 구상무역형태로 북한에 인도산 철광석을 공급하여 주고 북한으로부터 철강제품, 실크, 시멘트 등을 공급받아 중국, 필리핀, 남한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 홍콩의 T사를 통하여 지난 몇년간 북한산 철강제품, 시멘트 등을 동남아시아 및 국내에 판매한 실적이 있었다.

나. 추진경위

'93년 11월 당사는 종합상사들이 메탄올을 북한에 공급한다는 점을 우연히 알게된 후 북한에 메탄올을 싣고 배를 보냈던 선사를 접촉하여 북한의 “KOREA 00 TRADING CORP., pyungyang” 회사가 화학제품을 전문적으로 수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홍콩의 T사에 정보를 줌과 동시에 당

사의 전문품목인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문의를 요청했다. 얼마 후 홍콩의 T사 사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으로부터 벤젠, 톨루엔, 페놀, 메탄올, 에탄올 등 기초석유화학제품에 대해 거래제의(INQUIRY)를 받아 당사에 알려 주었다.

일단, 홍콩의 T사가 북한과 큰 장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 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의 종합상사와도 큰 거래를 하고 있어 믿을만 하기는 하였지만, 지난 몇년간 철강제품 및 시멘트를 남한으로 반입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예로들면

- ① 선적될 물건이 부두에 준비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배를 보냈으나 물건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 ② 선적될 물건이 준비되어 있었더라도 배의 선장이 북한의 항구에서 실수로 물건의 도착지가 남한이라고 말해 북한 당국에서 선적을 해주지 않아 빈배로 돌아왔던 점 등이다.

또한 거래제의(INQUIRY)를 받은 제품이 모두 위험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대북한 반출승인을 득할 수 있을지 여부등으로 이 거래가 쉽게 성사되리라고는 생각치 않았지만 일단 국내의 제조업체들로부터 국내오퍼를 받아 홍콩의 T사에 오퍼를 냈다. 그러나, 홍콩으로부터 우리의 오퍼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말만을 반복하고 있은지 거의 한달이 지난 어느날 홍콩에서 북한과 이야기가 잘 되어 벤젠, 톨루엔, 페놀의 거래가 거의 성사단계에 와 있으니 우리의 오퍼가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요청의 전화가 왔다.

그러나 위낙 가격의 변동폭이 큰 석유화학제품과 지난 한 달동안 가격이 큰폭은 아니지만 소폭으로 인상되어 있어 국내 제조업체들이 다시 먼저의 오퍼가격을 유지하여 줄지가 걱정은 되었지만 재확인할 것을 요청하니 북한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모든 제조업체에서 흔쾌히 한달 전의 가격을 재확인하여 주었다.

당사는 즉시 홍콩의 T사에 오퍼가격을 재확인하여 주었고 그후 몇일만에 홍콩의 T사로부터 벤젠 2,000M/T, 틀루엔 500M/T, 페놀 550M/T에 대한 계약서가 왔다. 그러나 하기와 같은 몇가지 사항 등이 걱정이 되어 계약서에 서명하여 보내는 것을 몇일만 기다려달라고 홍콩의 T사에 요청하였다.

- ① 2,500M/T라는 물량을 한번에 받을만한 탱크 등의 하역부두가 홍남에 있는가?
- ② 위험물인 제품에 대해 정부로부터 대북한 반출승인을 득할 수 있는지?

우선 상기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에 3,000M/T 메탄올을 한번에 보낸 경험이 있는 국내의 선사와 종합상사를 통해 알아 본 결과 별 문제없이 3,000M/T의 물량이 홍남에서 하역이 완료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다음 통일원을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대북한 반출승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대북한 반출승인을 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주겠다는 확답과 함께 통일원제출 서류양식을 받아와 그 다음날 제출하였다.

서류를 통일원에 제출한 후 며칠이 지나 상공자원부에서 전화가 왔다.

통일원에서 당사의 페놀, 벤젠, 톨루엔의 대북한 반출승인 신청에 관한 협의문서를 심의한 결과 상공자원부 내부적으로 승인되었으니 며칠안으로 통일원에서 다시 연락이 갈것이라는 소식이었다.

며칠이 지나 1월 중순경 통일원에서 당사 대북한 반출건에 대한 승인서가 발행되었으니 찾아가라는 통지가 왔다. 통지를 받은 즉시 벤젠과 톨루엔의 제조업체인 D사와 H사에 그리고 페놀 제조업체인 K사에 최종 주문을 확인을 해주었다. 물론 남한의 물품이 북한으로 반출된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북한에 알려질 경우 북한이 물품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하여 제조업체들에게 선적완료 전까지는 절대 언론등에 이 거래에 대하여 공개하지 말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페놀의 경우 북한에서 요구하는 포장방법이 드럼이라 페놀 제조업체인 K사에서 드럼발주에서부터 페놀을 드럼에 넣는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1달이 소요되니 2월말 선적을 위하여는 즉시 내국신용장(LOCAL L/C)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홍콩의 T사에 주문을 재확인해 줄것과 더불어 상황설명을 하여 즉시 신용장개설을 요청하였다.

신용장이 당사의 거래은행에 도착할 동안 페놀 선적을 위하여 그간 북한에 여러번 배를 보낸적이 있는 T선사와 접촉

하여 500톤급의 파나마국적의 배를 '94년 2월말 정박기간으로 잡았으며 또한 벤젠과 틀루엔의 선적을 위하여는 T선사에 의뢰하여 중국국적의 액화화물선(LIQUID TANK VESSEL)을 역시 2월말 정박기간으로 용선하였다.

그동안 홍콩 T사가 개설한 신용장이 1월말 당사의 주거래 은행인 K은행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K은행에서 신용장을 검토한 후 대북한 교류시 만의 하나 있을지 모를 위험성에 고려하여 국제 유수은행의 지급보증확약 신용장(CONFIRMED L/C)없이는 내국신용장(LOCAL L/C)개설 뿐만 아니라 신용장의 매입도 받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페놀의 드럼작업 소요기간이 1달 및 배의 정박기간과 바이어 요청 최종 선적기일을 지급보증확약 신용장(CONFIRMED L/C)를 다시 받아서 내국 신용장을 페놀 제조업체인 K사에 열어주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K사에 찾아가 상황설명을 하니 K사의 담당이사가 고심끝에 내국신용장(LOCAL L/C)를 개설하여 주고 페놀 및 틀루엔, 벤젠을싣고 갈 배의 정박기간에 맞추어 모든 물품이 준비되었고, 드디어 2월말 배가 여수항에 닻을내리고 물품을 선적하여 북한으로 향하였다. 물론 배가 떠나기 전 홍콩의 T사를 통하여 하역항인 홍남에 화물열차의 탱크로리(TANKLORRY)가 당사의 물품을 인수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확인을 받았다. 배는 홍남으로 떠난지 3일만에 우려하였던 체선료에 대한 문제없이 하역을 끝냈다는 선사의 연

락을 받음으로써 북한으로 처음 반출하는 국내산 석유화학제품인 페놀, 벤젠, 톨루엔의 거래가 끝이 났다.

그후 몇달이 지나 다시 같은 품목에 대한 거래제의(INQUIRY)를 홍콩의 T사로부터 받았으나 당시 핵사찰 등으로 인해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상황으로 선뜻 응하기가 쉽지않아 다음기회를 보자는 회신을 하였다.

처음으로 국내외 석유화학제품을 북한에 반출면서 느낀점은

① 아무리 믿을만한 무역중개상이 중간에서 북한과 연락을 취해주고 물품대금지급에 대하여 제3국의 무역중개상이 보증을 한다하여도 만의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전혀 통제 및 접촉이 불가능한 북한지역과의 교류라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으로 반출하는 제품에 대하여 정부적 차원에서 수출보험등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② 이번 거래는 당사가 북한의 화학제품 전문수입상의 정보를 입수하여 홍콩의 T사에 거래제의(INQUIRY)를 요청하여 시작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볼때 분명히 농·공·수산업 제품에 대해서도 북한에 전문 수입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여 모든 원하는 국내 기업에 정보를 제공할 때 더욱 더 많은 거래가 성사되리라 생각된다.

③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남한의 물품이 북한에 반입되고 있는 것을 허용치 않고 있는바 대북한 반출물품이 북한에 도착한 후 얼마간은 언론등에 보도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선박용품 반출사례

- (주)기드엑심

가. 교역동기

북한내 모 무역상사에서는 그동안 자국내 어선에서 사용하는 선박용품 일체를 일본의 M사를 통해 일본에서 구입하였으나, 최근 일본 엔화의 강세로 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되는 등 기타의 여건이 맞지않는 관계로 결국 일본에서 필요 물품을 구입치 못하게 되자, 제품 품질이 양호하고 가격 또한 적정 수준인 한국제품에 호감을 갖고 있었던 일본 M사에서 위 사실을 근거로 당사에 거래제의를 해 옴에 따라, 당사에서는 북한과의 거래는 내국간거래로 인정되어 반입시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국내 판매시 가격경쟁력이 있으며, 반출시 자동수출품목은 은행승인 후 반출할 수 있어 서류 처리에 복잡한 문제가 없으며, 그리고 남북교역물품은 관계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기에 위와같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거래하기로 결정하였다.

처음에는 수수료 방식에 의한 일반적인 신용장으로 거래를

진행시키고자 했으나, 일본 M사에서 당사에서 원한다면 송금방식에 의한 거래도 가능하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송금방식에 의한 거래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동안 북한과의 거래시 대부분 해상운임을 남한측 회사에서 부담해 왔던 바, 이점을 고려하여 일본 M사에서는 자사 보유 선박이 있으니 한국항구에 접안이 가능하다면 직접 접안 가능한 항구에 선박을 보내겠다는 연락이 왔다.

또한 선박에 필요한 중유의 급유(BUNKERING) 가능여부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특수지역으로 반출되는 물품이기에 일본 M사에서는 선용품 일체에 원산지 미표시, 상표제거, 기타 한글표시를 해서는 안된다는 협조요청을 해왔다.

이에따라 당사에서는 위 사항을 인정하고, 국내 생산업자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이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해 주겠다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게 되었다. 이로인해 당사는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었다.

나. 교역절차

일본 M사의 대표이사가 조총련계 인사로 당사에서는 북한 주민 접촉승인을 받는 등 모든 행정처리를 관계행정기관과 상의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국내물품 공급업자에게 반출경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북한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가격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과거 북한과 거래경험이 있었던 업체 담당자에게 조언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에서 발행한 북한관련자료 등을 수집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제정치상황은 북한의 NPT 탈퇴선언, 핵사찰 불가 등으로 하여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으며, 이는 당사가 교역하는데 악재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당사에서는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돌발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일본 M사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북한 김일성이 사망했다는… 그리고 우리와의 거래는 당분간 보류하자는 말과 함께…

선박용품 생산업자 및 급유(BUNKERING) 관련 담당자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추후 진행사항에 따라 유연성있게 대처해 나가자는 협조를 요청했으며, 또한 관계담당자들도 거래중지가 아닌 일시 보류로 처리하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당사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해질 수 밖에 없었으며, 빠른 시일내에 가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피해만 커질 뿐이었다.

일본 M사에서는 더 이상의 연락이 오질 않았으며, 결국 당

사에서는 일본 M사의 연락을 무한정 기다릴 수만은 없었으며, 거래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내물품 공급업자에게 당사의 결정을 통보하고, 거래포기에 따른 절차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8월 17일 일본 M사에서 연락이 왔다. 모든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계약조건은 처음과 동일한 송금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또다시 중유급유(OIL BUNKERING) 및 선박용품 등에 대한 단가표 및 매매계약서를 재차 요청해 왔다. 그리고 계약 물품에는 원산지 미표시, 상표제거 등 어떠한 형태로든 한글표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시켰다.

8월 19일 일본 M사 보유 선박의 한국항구 입항문제는 관계행정기관의 자문을 구하여 입항이 가능하다는 통보와 함께 모든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급유(BUNKERING) 또한 정유회사 담당자와 상담을 하여 자사에서 제시하는 계약조건대로 진행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다.

선박입항 방법 및 절차는 업무관계상 당사에서 처리할 수 없는 관계로 선박대리점을 지정, 모든 업무를 위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일본 M사에서 급유(BUNKERING)대금 및 선박용품 결제대금 청구서를 발송하여 1차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급유(BUNKERING)대금은 일반적으로 처음 거래인 경우

선박 도착예정일 5일전까지 미화 및 기타 국제결제통화로 결제되어야 하며, 늦어도 예정일 3일전까지는 급유회사에 입금되어져야지만 급유가 가능하다.

위 사실을 일본 M사에 통보해 주고 재차 정확한 결제금액 산출작업에 들어갔다.

8월 20일 관계행정기관에서 보완서류를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일본 M사에 통보하여 처리되었고, 급유물량을 일본 M사에 재차 확인하여 공급받기를 원하는 물량을 확정지었다.

8월 23일 일본 M사에서 입항절차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 왔고, 또한 추가로 VHF 무선전화장치와 어군탐지기에 대한 카탈로그 및 기타 참고자료를 요청해 왔다.

그리고 선상에서 가능하다면 추후 거래에 대한 상담을 원한다면 상담자료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8월 25일 그동안 진행되었던 모든 업무에 대한 확인작업과 함께 확정된 급유대금 및 선박용품 등 기타 셈플대금을 송금해 줄 것을 일본 M사에 요청했다.

8월 25일 일본 M사에서는 모든 확인작업을 마치고 결제금액 전부를 송금해 왔고, 재차 입항절차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 왔다.

선박용품 일체의 생산 완료기간은 8월 25일, 완제품 일체를 26일까지 선적지 항구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급유 이외의 모든 반출물품 작업이 완료되었다.

선박 도착예정일은 28일 오전 10시경

급유 담당자에게 작업진행에 대한 확인을 받고, 8월 26일 반출물품은 관할세관에서 면장을 발급받고, 선적 준비 완료상태로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급유...

8월 28일 선박은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였고, 반출물품 선적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급유을 하기 위해 바지선을 기다렸고 예정시간에 도착하여 급유을 하려는 순간 주문했던 사양과 맞지않는 관계로 긴급사항이 발생되었다.

결국 28일 급유을 하지 못하고 일본 M사에 양해를 구하여 30일 급유 완료후 업무는 종결되었다.

※ 북한산 초물제품 반입

반입경위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홍콩소재 W사를 통해 거래제의가 들어왔고, 거래조건은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운임포함가격(C&F)이었다.

그러나 결제통화는 1차 거래시 미화로 2차이후는 북한의 핵사찰 불가선언 등으로 홍콩달러로 바뀌었고, 신용장방식에서 송금방식으로 수정계약되었다.

1차 반입물량은 초물방석 37,370PCS, 화문석 뜻자리 29PCS,

2차 반입물량은 초물방석 65,320PCS, 화문석 뜻자리 450PCS, 남비받침 7,700PCS

3차 반입물량은 초물방석 16,000PCS, 화문석 둑자리 450PCS, 남비받침 88,000PCS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산 초물제품의 반입시기는 계절상품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통 4~7월 까지가 반입적기이며, 판매시기는 일반적으로 7~8월이다.

북한산 초물제품의 품질은 제품 원료의 투명성, 제작의 숙련도, 건조상태, 바닥부분의 이음새 결합여부로 파악할 수 있으며 위 내용을 근거로 북한산 초물제품의 품질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는 제품색상이 불투명하지만 과거 동남아지역에서 수입된 제품보다 투명하며, 제품에 무늬를 놓은것도 복(福), 수(壽), 무지개, 원앙새, 봉황새 등으로 한국인의 정서와 친밀한 형태로 제작되어 일반소비자가 제품구매시 괴리감을 없앨 수 있다.

또한 제품의 원료가 동남아지역에서 수입된 것은 보통 대나무, 갈대 등으로 제작되었지만 북한산 초물제품은 통왕골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한국산 제품이 고가인 관계로 일반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없어 한국산 제품을 홍콩 등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 제작 가능여부를 조사한 후 반입한 관계로 제품의 짜임이 촘촘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짜여 있어 제작자의 숙련도도 우수하다고 인정되었다.

또한 바닥부분의 이음새를 보면 정상제품은 한글로
이어져 제작되었으나 불량품은 별도로 제작된 바닥부분
을 결합하는 형태로 제작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본 제품은 완전 건조상태에서 제작시 적
당한 수분을 공급받아 제작되어야 하는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북한산 초물제품의 품질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 반입시 유의사항

- 북한에서 중개상을 통해서 반입되는 초물제품
의 포장상태를 보면 대개 북한내 물자부족으로
말미암아 BOX 포장이 불량하다.(중국에서 보
낸 BOX 재사용, BENDING 부실 등)

또한 개별 BOX에 포장되는 제품수량이 일
정치 않아 계약수량보다 적게 선적되는 경우가
많다.

위와같은 문제를 감안하여 중개상을 통해 정
확하게 점검되어야 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중
개상과 적극적인 절충이 필요할 것이다.(추후
지급될 중개상 수수료조정 등)

- 중개상은 보통 북한산 초물제품 계약시 10%
과부족용인조건을 제시해 온다. 포장불량에 의
한 수량 부족을 내세워 이 조건의 수락여부를

중개상과 협의한다.

- 중개상과 북한 무역상사간에 체결한 계약서에는 계약단가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결국 중개상이 제시한 가격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선의 방법은 중개상에게 북한 무역상사와 계약한 계약서에 계약단가를 표시해 달라고 요청해야 된다.

(한국 세관에서 계약서에 계약단가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 통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 중개상과 계약시 보통 CIF나 C&F조건으로 계약되나 최종단계에서 중개상에서는 북한과의 계약시 본선인도가격(FOB)조건으로 밖에 계약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해 오며, 결국 해상운임을 국내 반입회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 문제는 계약체결시 중개상에게 정확하게 확인받아야 할 것이다.

다. 반출시 유의사항

- 당사의 이번 거래는 송금방식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류처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주지해야 할 것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는 원산지 표시, 상호 및 기타 한글표시가 되어서는 거

래 자체가 무효되므로 제품 생산시 특히 주의를 요한다.

- 북한과의 거래성사 여부는 국제정치사회의 변화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또한 관계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업무처리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우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 교역효과 및 평가

금번 교역을 진행하는 동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도출되었지만 결론적으로 여러측면에서 교역효과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① 전무했던 남북교역의 실무를 접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추후 거래시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으며,

② 남북교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계획된 일정으로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견해와는 달리 계절상품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과거보다는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직교역 가능여부를 점칠 수 있었다.

③ 또한 김일성사망 이후 첫 거래라는 점에서 매우 보람을 느끼며, 어려운 시기에 관계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남북교역을 추진하면서 결코 남북교역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으

로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들 가까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추후 남북교역은 남북통일로 가는 시금석이 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III. 위탁가공사례

1. 남여자켓(대우)

1. 남여자켓 위탁가공사례

- (※) 대 우

가. 추진동기 및 배경

'70년대 호황을 누리던 국내 섬유(봉제)산업이 상승하는 인건비와 질적 향상된 우수한 노동력이 타 산업으로 이탈됨에 따라 국내생산의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고 가격경쟁력 또한 점점 떻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국등 동남아 국가등에 관련 주문(ORDER)들을 발주하는 이른바 해외생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당사에서는 '92년 10월 남포조사단 방북등의 직·간접 접촉으로 입수된 북한의 봉제수준 및 임가공비 수준 등을 파악, '92년 제3국의 중개상을 통한 그룹사 작업복 위탁가공을 북한측에 발주함을 시발로 점차 품목 다양화 및 위탁가공 수량을 점차 증대하고 있다.

나. 추진과정

당사가 반입했던 남·여 자켓은 당사가 원·부자재를 전량

공급하는 이른바 위탁가공형태이나 관련업무수행을 보다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거래형태를 제3국의 중개상과 완제품 반입형식의 신용장 조건으로 계약 추진했으며, 추진과정은 아래와 같다.

(1) 주문품목 선정 및 가격결정

'92년도 그룹사의 작업복 반입경험 등으로 당사와 거래했던 북한회사의 봉제수준이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판매시 제품상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국내판매용 의류를 북한에서 생산하기 위해 당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내수판매 전문회사인 세계물산/신성통상과 관련업무를 추진케 되었다.

'93년 9월 세계물산/신성통상으로부터 '94년도 봄/여름 판매예정인 제품중 일부에 대하여 북한에서의 작업을 의뢰받고 생산의뢰된 제품들의 제품상 특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북한에서 생산가능한 품목(자켓 15,000매를 포함한 다수의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제품에 대한 임가공비를 제3국의 중개인을 통해 북한측에 의뢰했다.

북한측의 임가공비를 기준으로 모든 제비용을 포함하여 반입가격을 산정, 예정 소매가격과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남·여 자켓 및 바지 등을 북한에서 생산키로 결정하였다.

주력품목(MAIN PROGRAM)이 아니고 추가된 몇개의 품목(STYLE)에 대해서는 당사의 경험과 주변 가격경쟁 국가

의 임가공비와 비교하여 당사가 임의로 임가공비를 결정하여 관련업무를 진행한 후 북한측의 임가공비를 통보받아 임가공비에 대해 서로 합의한 경우도 있다.

(2) 관련업무 진행

관련업무(ORDER) 진행과정은 타 해외생산(OFF-SHORE BUSINESS) 진행방법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했으나, 현지에서의 원부자재의 재검수등을 당사가 직접할 수 없는 관계로 모든 관련서류 및 원·부자재 준비에 만전을 기했었다.

위탁가공발주는 제3국의 중개인을 통하여 북한측에 발주했으나, 자켓의 제품봉제상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중개인과 함께 북한측에 가공품의 성격 및 작업상 주의점등을 직접 설명했었다.

상담시 당사의 자켓부위별 명칭과 북한측의 명칭이 달라 서로 이해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으며 일일이 해당부위를 기준(ORIGINAL)견본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작업방법등에 대한 서로의 오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 작업의뢰서상에 국내에서 작업할 때는 무시될 수 있는 사항이라도 정확하게 적어 주고
- 기준(ORIGINAL)견본이 작업의뢰서와 틀림없이 똑 같아야 하며, 부위에 따라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는 반드시 그 부위에 부표(TAG)등을 달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았다.

본 상담을 위해서 당사가 준비했던 관련 문건은 기준견본(ORIGINAL SAMPLE)/형지/사입도 등 이었다.

(3) 견본작업/본작업

본 위탁가공교역상담시 관련주문(ORDER)에 대한 본작업 확인용(APPROVAL)견본을 북한측에 의뢰하였으며 견본제작과 관련하여 견본제작용 원·부자재/형지/작업의뢰서 및 기준견본을 준비했었으나, 숨-지 등 부피가 나가는 자재등은 현지에서 자체조달하여 사용케 했었다.

견본의뢰 후 10일 후에 접수한 견본을 확인해 본 바 자켓의 앞단에 다림질자국이 드문드문 번뜩이는것 이외에는 별 특이한 하자를 발견할 수가 없었으나, 본작업에 대한 생산 관리를 직접 할 수 없음은 물론 중간 수정이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에 북한측의 견본에 대해 당사의 지시와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수정표(COLLECTION TAG)를 붙혀 1매는 당사에 보관하고 1매는 관련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본작업시 수정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다시 북한측에 보냈었다.

본작업에 대한 작업현황을 상세히 접수할 수는 없었지만, 간간히 제3국의 중개인을 통해 작업현황을 통보받을 수가 있었다.

해당 작업공장의 정확한 소재지나 공장설비에 대한 정보

(INFORM)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4) 운송 및 통관과정

은행으로부터 관련건에 대해 반출·입 승인을 득한 후, 월 2회 부정기적으로 인천과 남포 사이를 운항하고 있는 00해운을 이용하여 반출·입을 했으며, 자체반출시 원단은 원단대로 부자재는 부자재대로 묶어 부품별로 컨테이너에 분리 적재하여 반출했었는데 작업 효율성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품목별로 원·부자재를 동일 컨테이너에 넣어 보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

반입시는 제3국의 중개상을 통하여 북한측으로부터 예상납기일과 납입가능 수량 및 박스수를 통보받고 00해운에 관련 선박의 화물적재공간(CARGO SPACE)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중개상에 통보, 선적케 했다.

국내 반입시 세관에 제출되는 서류중 원산지증명서(C/O) 등 북한측의 서류는 해당선박의 선장편으로 보낸것을 접수했으며, 기타 통관용 서류는 은행을 통하여 접수했다.

선박운항의 불규칙함에 당초 예상 총소요량 일수보다 15일이 더 소요되어 납기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5) 대금결제 경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모든 거래를 중개인과 신용장 방식으로 계약된 바, 중개인이 은행을 통해 보내온 서류를 당사가

결제했었다.

다. 국내유통과정 및 품질

반입통관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또는 랜덤(RAN-DOM)검사를 실시하여 OMPHALOS/UNIONBAY등의 대리점을 통해 판매가 되었다.

품질 관련하여는 몇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겠는데

(1) 원·부자재 관리면

반출한 모든 원·부자재는 평균 여유분을 3%를 감안하여 공급했었으며, 일부자재(특히 봉사)에 대해서는 북한측의 작업방법이 달라 당사가 계산한 소요량보다 더 들어(여유분 3%를 포함) 추가로 더 공급을 하였다.

납기일이 임박해서 북한측으로부터 일부 자재부족을 통보받고 지급조치하는 바람에 예상치 않았던 경비가 추가로 발생했었다.

이번 자켓 위탁가공의 경우도 원·부자재를 송출전 관리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재가 부족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상호신뢰속에 반출 전보다 더 세심한 원·부자재 관리가 요구됐으며, 북한측에도 자재부족으로 인해 작업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 주문량에 대하여는 원·부자재를 접수함과

동시에 전량 검수케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2) 재단 및 봉제측면

당사가 보내준 형지를 기준으로 작업이 이루어진 바 재단상 문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봉제측면에서는 단추달이불량/Q.Q구멍/오염등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며 대부분 본봉작업으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특수원단인(MICRO) 경우 바늘선택 잘못으로 바늘자국이 나 있는것을 발견하고는 바늘을 바꾸게 하였는데 특수원단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

(3) 완성 및 포장

본작업확인용(APPROVAL)견본 검사시에도 거론이 되었던 자켓의 앞단(PLACKET)등에 IRON자국이 완성품에도 가끔 나타났었으나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

박스는 현지 박스를 사용했으나 다른 포장자재는 당사에서 보내 주었다. 박스의 품질은 괜찮은 편이었다.

포장명세서상 수량과 현물을 비교해 보았으나 별 문제가 없었다.

라. 교역상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

(1) 운송 문제점

반출·입시 모두 부정기로 운항하는 선박에 의존하다 보니 납기 등에 문제가 있을뿐 아니라 원가에 미치는 부대비용이 많이 들고

(2) 당사의 검사원이나 생산관련자가 제품생산중이나 출하 전에 직접 현장에서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이 반입 되기 전에는 제품상태에 대하여 확신을 할 수가 없었다.

(3) 상기(1)과 (2)항의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부자재나 제품의 반출·입시 육로운송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생산관련책임자가 생산관련사항을 (작업감독, 제품검사 등)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자료

1. 남북경제교류협력 실무안내

- 가.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승인
- 나. 북한산 물품의 통관절차
- 다.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확인

2. '93년도 북한 GNP 추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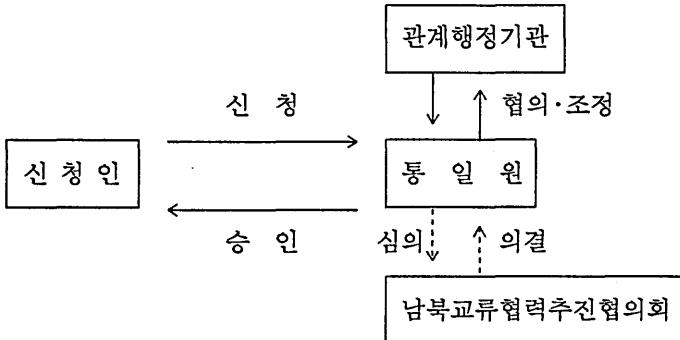
3.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법령

- 가. 세관법 ('93. 11. 17,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 나.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93. 12. 30, 정무원 결정 제80호)
- 다.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관한규정
('94. 2. 21, 정무원 결정 제8호)
- 라.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시행규정
('94. 2. 21, 정무원 결정 제9호)
- 마.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94. 3. 27, 정무원 결정 제13호)
- 바. 자유무역항규정 ('94. 4. 28, 정무원 결정 제20호)
- 사.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체류및거주규정
('94. 6. 14, 정무원 결정)
- 아. 외화관리법시행규정 ('94. 6. 27, 정무원 결정)
- 자. 토지임대법시행규정 ('94. 9. 7, 정무원 결정)

1. 남북경제교류협력 실무안내

가.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

-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수송장비를 운행하고자 하는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과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남한주민(법인포함)이 남북한간에 선박 등 수송장비(국적불문)를 직운행할 경우에 승인대상이 되고 제3국항구(홍콩, 중국, 일본 등)를 경유하여 남북한간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승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이내이며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구비서류

-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 1부
 - 운행계획서(운행경위 포함) 1부
(운행경위에는 운행일자, 운송경로, 수송화물내역, 화주 등의 내용을 포함)
 -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수송장비의 제원내역서 1부
(사용할 수송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보할 수송장비의 제원과 확보방법 및 기한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 1부(통일원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다)
- ※ 선박의 경우, 북한→남한간 부정기운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합의서 또는 북한 당국의 입항허가서 등 증빙서류 첨부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사항

을 증빙하는 서류 각1부

(수송장비 운행요원중 남한주민이 있는 경우에는 방북승인을 함께 받아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소정교육필증도 제출하여야 한다)

- 대리인임을 증빙하는 서류1부
(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운행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송장비운행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소정양식)에 변경사항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유효기간 만료전까지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변경승인신청 처리절차는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처리 절차에 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상호(명칭)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신분증서번호)
수송장비의 종류		수송장비명칭	
운행목적			
운행기간			
운행예정노선			
운행계획개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장비운행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뒷면

년 월 일

신청인 : (인)

통일원장판귀하

수수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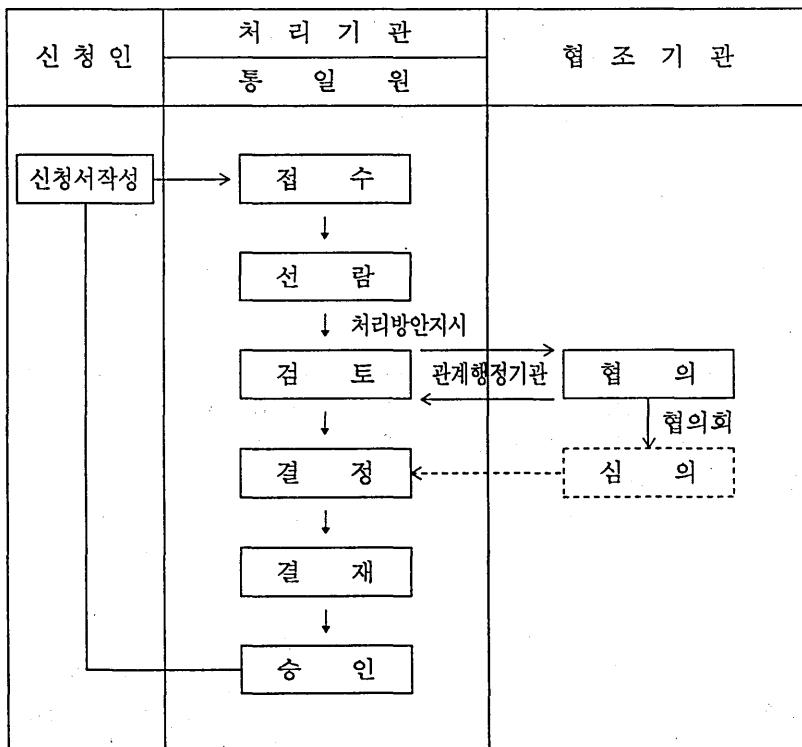
11313-02511민
94.5.31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첨부서류 1. 운행계획서(운행경위를 포함한다) 1부

2. 자동차등록 사본 또는 수송장비의 제원 내역서(사용할 수송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보할 수송장비의 제원과 확보방법 및 기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부
3.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통일원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영 제43조 제5호의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각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수송장비운행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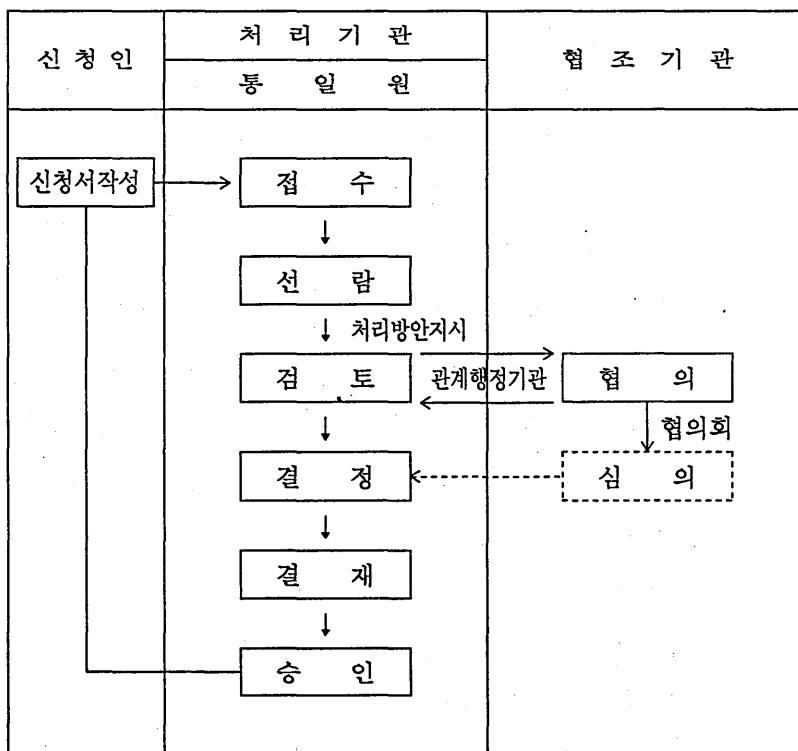
신 청 인	상호 (명칭)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신분증서번호)
	변경전승인번호		변경전승인일자
변경내용(변경을 요하는 사항만 기입하십시오)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장비운행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뒷면			
년 월 일			
신청인 : (인)			
통일원장관귀하			수수료
			없음

11313-02511민
94.5.31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첨부서류 1. 변경사항 해당서류 각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나. 북한산 물품의 통관절차

(1) 물품의 장치

가) 반입물품의 장치

-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일반수입물품과 같이 관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등 보세구역이나 통관장등 지정된 곳에 장치하여야 한다. 통관장이라함은 육지로 연결된 국경을 통하여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관검사 또는 통관을 하기 위해 관할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로서 향후 남북직교역이 실현될 경우 육로를 통한 물자 수송 및 통관 창구로서 많이 활용될 전망이다.

나) 반출물품의 장치

- 북한으로의 반출물품은 당해 물품의 제조공장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141조 규정에 의하여 부정수출 또는 부정환급금 우범성 정보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 업체의 성실도등을 감안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 관할내의 지정보세구역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게 하여 검사할 수 있다.

* 관세청자료, 알기쉬운 원산지 제도실무 p. 204.

- 이 경우 보세구역을 반출입하는데 소요된 운송비 등 관련비용은 반출자(화주)의 부담으로 하며,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후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세관장에게 반입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반입통관절차

- 북한에서 반입한 물품의 반입통관절차는 일반수입통관절차를 준용하므로 수입통관사무처리 규정(관세청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면허를 받아야 한다. 북한산 물품의 경우 관세 비과세 처리됨에 따라 반입물품의 원산지확인을 위해 전량 검사후 면허 처리하고 있다.
- 참고로 북한에서 직반입한 물품의 반입신고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양식 사용)
 - ② 반입승인서(자동승인물품인 경우 외국환은행장의 반입승인서, 제한승인품목인 경우 통일원장관의 반입승인서)
 - ③ 가격신고서(Invoice, 보험증서 포함)
 - ④ 선하증권사본
 - ⑤ 최근 2개월간의 선장확인 선박항해일지
 - ⑥ 원산지증명서
 - ⑦ 기타 검역물품인 경우 당해 검역증(식품인 경우 식

품검사 합격증) 및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서류

- 아울러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한 물품의 경우에는 직반입한 경우 제출서류의 ④,⑤만을 아래와 같은 서류로 바꿔서 제출하면 된다.

④ 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아국까지의 선하증권일체

⑤ 제3국의 세관등 권한있는 관공서가 발급한 단순경유증명서(후술)

(3) 관세등 제세부과

가) 관세

-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된 물품중(제3국을 단순히 경유한 물품을 포함한다)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된 물품중 원산지가 북한이외의 국가인 물품 및 제3국에서 수입통관된 후 반입된 물품은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나) 내국세 등

- 반입물품에 대한 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교통세등 내국세는 반입통관시 세관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 내국세등의 부과·징수시 과세표준에 사용하는 물품의 가격은 일반수입물품과 같이 관세평가시행

세칙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된다. 즉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실제 지불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반출통관절차

-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수출품과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수출신고서 양식사용)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레이다, 고성능컴퓨터, 야간투시경등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상(상공자원부 고시)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략물자의 부정유출 가능성에 중점심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5) 관세환급절차

-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수출물품과 같이 당해 물품의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 다만, 반출입승인을 동시에 받은 대북한 위탁가공 반출물품(북한에서 제조 가공후 재반입할 것을 전제로 반출한 물품 및 제3국으로 수출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관세등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 이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은 동 원재료가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나 위탁가공후

재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동 원재료가 국내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반입물품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6) 수출입승인 면제대상 남북교역물품의 통관처리

- 수출입승인 면제대상물품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본격적인 교역을 위한 예비적, 부수적 거래의 성격을 띠며 신속한 통관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그러므로 일반 수입물품의 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화주의 수입사유서에 의거 심사후 신속히 통관하여 주고 있으며, 그 이상인 경우에도 반입물품이 자동품목이고 그 수입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사유서에 의거 신속히 통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남북교역물품인 경우 반입물품이 비과세인데다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규정이 없어 그동안 통일원장관의 무환물품 반입 확인서를 제출받고 통관처리하여 왔는 바, 통관신속화등을 위하여 '94. 2. 15부터는 일반수입물품과 동일하게 통관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

(1) 원산지 증명서

- 원산지증명서라 함은 당해 물품이 당해국 물품(원산지증명서)이거나 통과물품(재수출원산지 증명서) 또는 당해 국에서는 가공만 거쳤음(가공원산지증명서)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해 국의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 등 권한있는 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말한다.
- 북한에서는 수출물품이 당해 국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산지증명서라 하지 않고 산지증명서(별첨 1참조)라고 부른다.

가) 원산지증명서의 수록내용 및 인정기준

- 원산지증명서는 발송인, 수화인, 발행번호, 발행일자, 당해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수송수단, 산지, 수출대상국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하며 국제협약 또는 국제관례에 맞게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산지증명서”등의 발송인, 수화인등은 수입승인서(또는 반입승인서)상의 송화인과 일치해야 하고 당해 물품 수량·중량도 수입승인서(반입승인서)상의 수량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사유규명을 위한 소

* 관세청자료, 알기쉬운 원산지 제도실무 p. 207.

명자료를 세관에 제출한 후 통관해야 한다.

- “국제협약 또는 국제관례”에 맞게 작성된 것이라 함은 국제상관행상 작성방식(일정양식 사용, 타 자등으로 작성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는 의미 이며, 북한은 아직도 사회주의 관행에 의거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간혹 원산지증명서를 손으로 작성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국제협약에 맞지 않으므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나) 사용언어

-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다) 발급기관

- 원산지증명서는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또는 “조선무역은행”등 북한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권 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 조선무역은행은 금괴, 은괴 등 비철금속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산하의 원산, 흥남, 평양, 남포, 송림, 청진, 해주, 송악산등 대외상품검사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2)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 비과세 인정기준

- 북한과의 교역은 내국간의 거래로 간주되어 북한산 물품에 대하여는 반입시 관세를 비과세 처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이 모두 관세 비과세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이 관세 비과세 처리되기 위해서는 남북교역대상물품으로 반입된 물품이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남북교역대상물품으로 반입승인을 받은 물품

- 북한산 물품이 관세 비과세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남북교역대상물품으로 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행 규정상 제한승인품목의 경우 통일원장관이 반입승인기관이고 자동승인품목인 경우 외국환은행장이 반입승인기관이므로 세관에서는 반입 통관시 제출된 세관용 반입승인서에 의거 남북교역대상물품으로 승인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처리한다.
- 반입승인서상 확인방법은 제한승인품목인 경우 통일원장관이 발급한 반입승인서에 의하여 확인하며, 자동승인품목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일반 수입승인서상에 남북교역대상물품임

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동 물품은 남북교역대상 물품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

- 다만, 대외무역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승인 면제대상 남북교역물품의 경우에는 상기의 반입승인서는 필요없고 북한산물품 반입사유서 및 그 소명자료를 세관에 제출하면 비과세통관이 가능하다.

나)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

-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관세 비과세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가 북한이어야 하며 반입통관시 세관에 이를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반입된 물품의 원산지확인 방법은 ①북한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 ②상품에 표시된 원산지표시 ③선하증권등 운송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산지를 확인한다.
-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치 않아도 북한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진등 객관적 소명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남북교역물품 통관규정 제14조)
-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0만원 이하인 물품

- 우편물(관세법 제15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개인에게 무상송부된 택송품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육세가 부과 되지 아니하는 휴대품이나 별송품
- 재 반출 조건부 일시반입물품
-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 명, 제조자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하는 물품

다) 북한에서 아국으로 직접 운송되었거나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 반입된 물품

① 직반입된 물품의 확인방법

- 북한은 내부사정상 아국을 직교역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북한의 공해상에서 운송선박이 출항시 신고한 국가로의 운항여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결국 북한에서 아국으로 직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선하증권상의 운송 목적지와 실제운송경로가 상이할 수 밖에 없어, 통관시에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과 당해 선박의 최근 2개월간의 기항증명서(ports of call) 및 선

박항해일지(voyage memo)에 의거 당해선박의
북한입항여부와 당해 물품의 북한선적여부를 확
인한 후 통관하여 주고 있다.

② 제3국 단순경유 물품

- 단순경유라함은 운송상의 이유등에 의거 제3국에
서 환적, 일시장치 등만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수
입통관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북한에서 제3국을 경유하여 반입한 물품이 제3
국을 단순히 경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
는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지 않은 물품 즉 제3
국에서 수입통관후 국내반입된 물품은 남북교역
대상물품으로 취급되지 않고 일반수입물품으로
취급되어 관세도 비과세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절차를 거친후 수입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3국 단순경유 여부 확인방법은 북한에서 경유
국, 경유국에서 아국까지의 선하증권에 의거 반
입물품이 북한에서 적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
고 아울러서 제3국에서 환적, 일시장치등으로 단
순경유하였음을 제3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
공서가 발급한 증명서에 의거 확인한다.

(3) 경유국별 단순경유 입증서류

- '92~'93년 현재 반입물품의 약 60%는 직반입되고 있고 25%는 홍콩, 10%는 중국, 5%는 일본을 경유 하여 반입되고 있는 바, 경유국별 단순경유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홍콩

- 홍콩 상공회의소 발행, 재수출원산지증명서(별첨 2)

나) 일본

- 일본세관 발행, 적려허가 통지서(積戻し許可通知書) : (별첨 3)

다) 중국

- 내륙운송의 경우 : 과경화물보관단(過境貨物報關單) : (별첨 4)

- 과경화물 : 국외에서 출발하여 기차로 중국대륙을 통하여 국외로 운송하는 화물

※ '92. 12. 1이전에는 과경화물입경보단(過境貨物入境報單) 및 과경화물출경보단(過境貨物出境報單)을 발급

- 항공 및 해상운송의 경우

- 진구화물재화청단 : 단수경유화물에 대한 증명서 (국외에서 운송을 시작하여 중국 항구 또는 공항

을 거쳐 원운송기구로 계속 국외로 운송하는 화물(통운화물：通運貨物)에 대한 증명서)

- 외국화물전운준단：환적화물에 대한 증명서(별첨 5)

(국외에서 운송을 시작, 중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서 운송기구를 바꾸어 국외로 운송하는 화물(전운화물：轉運貨物)에 대한 증명서)

- 중국내 보세구역 또는 보세창고에 일시 보관후 재반출되는 경우：진구화물보관단(進口貨物報關單)(별첨 6)

※ 이러한 물품은 전구화물(轉口貨物)이라 하며, 증명서의 “무역방식”란에 “전구무역(轉口貿易)”이라는 표시를 해야하고 규정된 기한내 반출해야 함.

[별첨 1]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КОМИТЕТ ИНСПЕКЦИИ
ЗНЕШНИХ ТОВАРОВ КОРЕИ
ПХЕНЬЯН КОРЕЯ 조선

Тел. адрес: KFCIC ПХЕНЬЯН



KOREA FOREIGN COMMODITY
INSPECTION COMMITTEE
평양 PYONGYANG KOREA
Cable address: KFCIC PYONGYANG

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No. 55-2-15

날짜
Date August 12, 1993

발송인
(Consignor;) KOREA Agricultural Products General
Trading Corporation, PYONGYANG, D.P.R.KOREA

수화인
(Consignee;) BOLIN HONGKONG Liaison Office

수출대상국
(Country of Destination;) HONGKONG

기호
(Mark;)

수송수단
(Means of Transportation;) PROVIDENTIA

제품
(Commodity;) Walnut Kernel

산지
(Place of Origin;) D.P.R.KOREA

수량
(Quantity;) 3,193 Boxes.

중량
(Weight;) N/W. 39,912.5 M/t. G/W. 44,702 M/t.

상기 상품은 조선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commodities were produced or
manufactured in Korea.)

대한민국
외교부
국장
서명

Foreign Commodity Inspection Office



총장
(Director) 서명

[별첨 2]

Shipper (Full Name and address) WAN WING INTERNATIONAL UNIT 303 TRANS HONG KONG COMMERCIAL B/D 41-43 CARNARVON ROAD, Tsimshatsui, KOWLOON HONG KONG.		PORT - HONG KONG
Consignee (Full Name and address) WOONG JIN PHARMACEUTICAL CO., LTD. 454-8 MANGKOO 3-DONG, JOONGRANG-KU SEOUL KOREA		
		CERTIFICATE OF ORIGIN -- RE-EXPORT
		ORIGINAL
Departure Date (on or about) FEB. 15, 1992		
Vessel/Flight/Vehicle No. GLOBAL SUCCESS V.201N	Place of Loading HONG KONG	
Port of Discharge SUNGKAN	Port Discharge & on Carriage	
Marks, Nos. and Consular No.; No. and Kind of Prohibited Description of Goods TOTAL ONE HUNDRED EIGHTY FIVE (185) CARTONS ONLY.		Journey or Voyage (in words and figures)
< N.S. > RAW MEDICINE ATRACTYLIS RHIZOMA		Brand Name or Label (if any)
		4,625KGS (FOUR THOUSAND SIX HUNDRED & TWENTY FIVE KILOGRAMS ONLY.)
		
Destination Country S. KOREA		
<p>I HEREBY CERTIFY THAT THE GOODS DESCRIBED ABOVE ORIGINATE IN D.P.R. OF KOREA.</p> <p>ISSUED RETROSPECTIVELY</p> <p style="text-align: right;"><i>J. Choi</i></p>		
<p style="text-align: right;">17 FEB</p> <p>THE 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 is THE HONG KONG AUTHORITY EXERCISING POWER CONFERRED BY THE Hong Kong Government for the issue of Certificates of Origin.</p>		

[별첨 3]

307 594 562
(3KHYK-03492)

E900 0139KHYK
93-09-01

積戻し許可通知書

神戸税関兵庫埠頭出張所長 職名

輸出者 MINAMI PROJECT CO., LTD.

税法第75条の規定により、あなたが申告した貨物の積戻しを許可します。

積戻許可日 1993.09.01 申告番号 307694562 船(機)名 COSMOS
積戻場所 KANKI-HYG 通関業者 3KHYK-1215 累出港 JPUKB KOBE - HYOGO
合計個数 668 BL 任番番号 05272 出港予定期 1993.09.06
保証運送承認期間 7日 A W B番号

品名
TOILET LINEN & KITCHEN LINEN

記事

貨物の記号等 AS PER ATTACHED SHEET



* 貨物記号 *
(積込年月日)

(注) この通知に係る処分について不服があるときは、その処分があつたことを知っ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2月以内に税關長に対して異議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별첨 4]

中华人民共和国海关
过境货物报关单

申报单位	出境运输工具及编号						
地址及电话	交货单据号						
出境口岸及日期	运单或提单号						
出境运输工具	出境口岸						
国际联运单证号	出境日期						
出境地海关关封号	出境运输工具及编号						
在有下列货物从_____国(地区)通过中国关境运往_____国(地区), 保证自入境之日起_____天内运输出境,在中国境内通过第_____线(地区)有_____ _____, 请予审核、查验放行。							
标记及号码	件数	货 名	商品编号	重 量	单 位	价 汇	封志号
				(公斤)			
总 数							
以上申报各项准确无误,如有违反《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出境货物监管办法》 及有关规定,愿意接受海关处理。							
申报单位签章 申报日期 年 月 日							
入境地海关 亚控、封缄和押运情况				出境地海关 复核放行情况			
此栏由海关填写 放行日期 其它	放行出境日期 其它						

[별첨 5]

[별첨 6]

中华人民共和国海关
进口货物报关单

中段单位证号		海关证号																											
进口口岸	丹东	运输工具名称及号码	汽车 4																										
经营单位	丹东市国际旅行社有限公司	贸易性质(方式)	转口贸易																										
收货单位		贸易国别(地区)	朝鲜/朝																										
合同(协议)号	92LITC54	原产国别(地区)	朝/朝																										
批准机关及文号		外汇来源	现汇/现																										
标记唛码	件数2500纸制	毛重(公斤)	5500																										
		净重(公斤)	5000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商品种类</th> <th>数量</th> <th>成交价格</th> <th>列币价格</th> </tr> <tr> <th>海关统计商品编号</th> <th>品名</th> <th>重量</th> <th>单位</th> <th>总价</th> <th>人民币</th> <th>外币</th> </tr> </thead> <tbody> <tr> <td>05119990</td> <td>鞋类</td> <td>5</td> <td>USD 1,000.00 HT</td> <td>21,000.00</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FOB DAK/US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商品种类		数量	成交价格	列币价格	海关统计商品编号	品名	重量	单位	总价	人民币	外币	05119990	鞋类	5	USD 1,000.00 HT	21,000.00						FOB DAK/USD			
商品种类		数量	成交价格	列币价格																									
海关统计商品编号	品名	重量	单位	总价	人民币	外币																							
05119990	鞋类	5	USD 1,000.00 HT	21,000.00																									
			FOB DAK/USD																										
关税完税价格		工商税完税价格		关税交款书号																									
税则号列及税率%		工商税税率%		工商税交款书号																									
关税税额		工商税税额		交款书签发日期 年 月 日																									
备注		签发证号		随附单据																									

海关放行日期

海关经办人(签名)



以上各项申明无讹

此致



2. 1993년 북한 GNP 추정결과

가. 개 황

- 북한은 1993년중 경제운용에 있어서 에너지 및 원자재의 공급원인 석탄 및 전력산업과 금속공업을 성장선도부문으로 지정하고 이들 산업시설의 정상 가동에 주력하는 한편, 주민생활개선과 외화확보를 위하여 농업 및 경공업부문생산 증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 그러나 1993년중에도 이들 「선도부문」의 생산이 활기를 띠지 못한 데다가 핵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외무역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에너지 및 원자재의 부족현상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제조업생산이 섬유제품 등 일부 경공업제품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였으며 농업생산도 냉해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이 결과, 북한의 국민총생산은 '93년중에도 마이너스 4.3%로 연4년째 부(負)의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북한의 현 경제상황은 '89년도에 비해서도 20% 이상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원, 한국은행조사2부 ('94. 6)

나. 주요 총량지표

- '93년중 북한의 경상GNP(미 달러화 평가)는 전년보다 2.8% 감소한 205억달러에 그쳤으며 1인당 GNP도 92년보다 39억달러가 줄어든 904달러를 기록하였다.
- 이에 따라 경제규모는 한국이 북한의 16배 정도로 크고, 1인당 국민소득수준도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가 전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북한의 대외거래는 '91년에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 거래규모가 급격히 줄어 들었으며, '93년에도 이와 같은 위축현상은 지속되어 무역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26억달러(한국의 1/63수준)에 머물렀다.

주 요 총 량 지 표

구 분	북 한 (A)		한 국 (B)		배 율 (B/A)	
	'92	'93	'92	'93	'92	'93
경상 GNP(억달러)	211	205	3,057	3,287	14.5	16.0
1인당 GNP(달러)	943	904	7,007	7,466	7.4	8.3
GNP 성장률 (%)	△7.6	△4.3	5.0	5.6	—	—
인구 (천 명)	22,336	22,645	43,663	44,056	2.0	1.9
무역규모(억달러)	26.6	26.4	1,584.1	1,660.4	59.6	62.9
수 출	10.2	10.2	766.2	822.4	75.1	80.6
수 입	16.4	16.2	817.8	838.0	49.9	51.7

다. 산업별 동향

- 북한의 '93년도 농업시책 방향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수리시설의 건설이나 간척지 개발보다는 농약의 원활한 공급과 비배관리(肥培管理)의 개선을 통하여 식량증산을 꾀해 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6~7월중의 집중호우와 8~9월중의 이상저온현상 등으로 인하여 농업에서 비중이 큰 미곡이 13.9% 감산되고 어업생산도 연료부족과 선박노후화 등의 영향으로 4.4% 줄어 농림어업 전체로는 7.6% 감소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식량난을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 광업의 경우에도 재정사정의 악화로 신규 광산개발을 통한 생산능력확장보다는 생산관리를 통한 증산에 역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대종을 이루는 석탄생산이 탄층 심화에 따른 근로환경 악화와 생산자재를 자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여건으로 인하여 7.2% 감산된 데다 철 등 금속광물생산도 12.2% 줄어 전체적으로 7.2% 감소하였다.
- 제조업은 금속공업부문을 외화가득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특수강의 생산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2차금속 제품의 생산을 증대시키는데 강한 의욕을 보였으며,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성장선도부문」의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소형 설비 및 부품 생산에 주력하였고 화학공업부문에서

도 농업증산을 위하여 농약과 비료생산에 역점을 두었다.

- 그러나 경공업부문에서 주민생활개선 및 대외수출전략과 맞물려 신발, 직물 및 피복 생산이 다소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장, 기업소 등이 에너지 및 원자재의 공급 부족과 노동의욕 상실 등에 영향받아 생산이 줄어듦으로써 제조업 전체로는 1.9% 감소하였다.
- 전력생산은 석탄생산 감소의 영향으로 화력발전이 15.9% 감소한 데다 수력발전도 용수부족으로 6.4% 줄어 전체로는 전년대비 10.4% 감소하였으며, 이같은 전력생산 감소는 에너지공급난의 주인이 되어 제조업생산을 위축 시킨 한편 수송부문의 애로로 작용, 북한의 산업 및 주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업은 북한정부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투자재원의 확보가 여의치 않았던 데다 시멘트, 벽돌 등 전자재의 부족 현상이 지속되어 전반적인 건설활동이 부진하였으며 특히 평양을 제외한 전지역에서의 주택건설활동이 저조하였다 데 기인, 전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9.7%)하였다.
- 서비스부문은 농산물 및 광공업품의 생산감소로 물동량이 줄어든 데다 에너지공급난이 겹쳐 상업활동과 운수활동 모두 감소하였으며 NPT 탈퇴선언 등으로 야기된 불안정한 대외관계로 인해 외래관광객도 감소함에 따라 음식숙박업 생산도 부진하여 관리행정 및 국방 등 정부 부문을 제외하고 보면 0.5% 감소하였다.

산업별 성장율

(단위 : %)

	북한			한국
	'91	'92	'93	'93
농림어업	2.8	△ 2.7	△ 7.6	△ 2.4
광공업	△11.9	△15.0	△ 3.2	4.9
광업	△ 6.8	△ 6.1	△ 7.2	△ 3.5
제조업	△13.4	△17.8	△ 1.9	5.0
(경공업)	(△ 4.4)	(△ 7.3)	(5.0)	(△3.3)
(중공업)	(△15.8)	(△21.0)	(△4.2)	(8.6)
전기ガ스수도	△ 4.5	△ 5.7	△ 8.7	12.7
건설	△ 3.4	△ 2.1	△ 9.7	△ 5.3
서비스	2.5	0.8	1.2	6.9
(정부)	(4.4)	(2.4)	(2.3)	(2.8)
(기타)	(△0.3)	(△1.7)	(△0.5)	(7.5)
국내총생산(GDP)	△ 5.1	△ 7.7	△ 4.2	5.5
국민총생산(GNP)	△ 5.2	△ 7.6	△ 4.3	5.6

라. 산업구조

- '93년 북한의 GNP 추정결과 나타난 산업구조면의 특징은 경공업부문의 생산증가와 중화학공업생산의 감소 폭 둔화로 90년 이후 계속 낮아져 왔던 제조업부문의 비중이 다소 높아졌다는 점이다.
- 그러나 북한은 최근 들어 산업정책면에서 경공업부문에

역점을 두어왔다고는 하나 경제운용의 대원칙으로 「자력갱생」 및 「軍產複合型 產業政策」을 고수해 옴으로써 농림어업과 광업 등 원시산업부문의 비중이 전산업의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주민생활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공업 및 건설업과 서비스부문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

(단위 : %, 경상GNP=100)

	북한			한국
	'91	'92	'93	'93
농 림 어 업	28.0	28.5	27.9	7.1
광 공 업	38.0	33.8	32.9	27.4
광업	7.9	9.2	8.2	0.3
제조업	30.0	24.6	24.7	27.1
(경공업)	(8.0)	(6.3)	(6.8)	(7.7)
(종공업)	(22.0)	(18.3)	(17.9)	(19.4)
전기 가스 수도	5.0	5.1	4.8	2.3
건 설	8.2	9.1	8.5	13.6
서비 스	20.9	23.5	25.9	49.9
(정부)	(13.0)	(15.0)	(16.8)	(8.0)
(기타)	(7.9)	(8.6)	(9.0)	(41.9)
국민총생산(GNP)	100.0	100.0	100.0	100.0

〈참 고〉

1993년 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 비교

	單位	北韓(A)	韓國(B)	倍率(B/A)
1. 인 구	千명	22,645	44,056	1.9
2. 경 상 GNP	億 \$	205 (211)	3,287 (3,057)	16.0 (14.5)
3. 1 인 당 GNP	\$	904 (943)	7,466 (7,007)	8.3 (7.4)
4. 경 제 성 장 률	%	-4.3 (-7.6)	5.6 (5.0)	—
5. 대 외 경 제				
무 역 총 액	億 \$	26.4	1,660.4	62.9
(수 출)	"	10.2	822.4	80.6
(수 입)	"	16.2	838.0	51.7
(무역총액/경상GNP)	%	12.9	50.5	—
대 미 환 율	원/\$	2.15	802.73	—
외 채	億 \$	103.2	440.8	4.3
〈순 외 채〉	〈〃〉	〈 . . . 〉	〈78.7〉	〈-〉
(외 채 / 경 상 GNP)	%	50.3	13.4	—
6. 예 산 규 모	億 \$	187.2*	474.0**	2.5
군 사 비	億 \$	56.2*	119.2**	2.1
7. 에 너 지 산 업				
석 탄	萬ton	2,710	944	0.3
발 전 용 량	萬Kw	714	2,765	3.9
발 전 량	億Kwh	221	1,444	6.5
원 유 도 입 량	萬ton	136	7,568	55.6

	單位	北韓(A)	韓國(B)	倍率(B/A)
8. 농 수 산 물 생 산 량				
곡 물	萬ton	388.4	557.4	1.4
(쌀)	"	131.7	475.0	3.6
수 산 물	"	109	334	3.1
9. 광 산 물 생 산 량				
철 광 석	萬ton	476.3	21.9	0.05
비 철 금 속	"	16.4	68.2	4.2
10. 중화학공업 생산량				
자 동 차	萬臺	1.0	205.0	205.0
조 선	萬G/T	5.1	338.3	66.3
강 철	萬ton	186	3,325	17.9
시 멘 트	"	398	4,680	11.8
비 료	"	160.9	411.3	2.6
11. 경 공 업 생 산 량				
직 물	億m	1.9	60.4	31.8
화 섬	萬ton	5.3	159.6	30.1
12. 사 회 간 접 자 본				
철 도 총 연 장	Km	5,112	6,517	1.3
도로 총 연 장	Km	23,219	61,295	2.6
항 만 능 력	萬ton	3,501	26,894	7.7
선 박 보 유	萬ton	88	638	7.3

주 : ()내는 '92년 계수임

* 북한의 원화표시 예산금액은 북한당국이 정한 상업환율(2.15/ \$)로 환가한 것임.

** 한국의 예산 규모는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준임.

3.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법령

가. 세관법*

제 1 장 세관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은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관세를 정확히 적용하여 대외무역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우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 2 조 세관수속은 이 법이 적용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세관수속절차를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 3 조 국가는 세관검사방법을 개선하고 검사수단을 현대화하여 국경을 통과하는 짐과 운수수단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 4 조 국가는 수입과 수출을 장려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거나 낮게 적용하며 수입과 수출을 제한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높게 적용한다.

*1993. 11. 17,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세관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세관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제 6 조 국가는 세관사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7 조 이 법은 우리 나라 국경을 통과하는 짐과 운수수단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우리나라 국경을 넘는 다른 나라 공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 2 장 세관수속

제 8 조 세관수속은 짐과 운수수단을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내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관수속에 필요한 문건을 세관에 내야 한다.

제 9 조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나가는 공민은 국경통로,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도착하면 몸짐과 돈, 유가증권, 따로 부쳐오는 손짐을 세관에 알려야 한다.

제10조 우리 나라의 국경역, 무역항을 거쳐 다른 나라에 중계수송하는 짐에 대한 세관수속과 그와 관련한 세관료금의 납부는 그 짐을 맡아 중계수송하는 기관이 한다. 우리 나라에 들여오지 못하게 되여있는 물자를 중계수송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우리 나라 무역항을 거쳐가는 다른 나라 배에 실여 있는 짐에 대한 세관수속은 그 배의 선장이 한다. 선장은 배짐명세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제1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을 통과하는 짐과 운수수단은 세관이 있는 곳으로만 들여오거나 내갈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관이 없는 곳으로 통과하거나 우리나라 해상에서 다른 나라와 물자를 주고 받으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고 세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 3 장 세관검사

제13조 세관은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짐과 운수수단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세관검사를 받지 않은 짐과 운수수단은 들여오거나 내보낼 수 없다.

제14조 세관검사는 국경통로, 무역항, 국제항공역, 국제우편국과 그밖의 지정된 곳에서 한다. 몸짐에 대한 세관검사는

렬차, 배안에서도 할 수 있다. 세관은 이동세관검사를 하거나 우리 나라 령토를 통과하는 다른 나라 짐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료금을 받는다.

제15조 세관은 국경역, 무역항 같은 세관검사지점에서 검사 할 수 없는 짐에 대하여서는 짐 도착지의 해당 기관에 세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짐임자는 도착지의 해당 기관에 제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검사를 의뢰받은 해당 기관은 신고받은 짐에 대한 검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 세관은 운수수단의 짐칸, 손님칸, 선원실을 비롯한 필요한 곳을 검사할 수 있다. 세관검사과정에 우리 나라에 들여오지 못하게 되여있는 물건과 통제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일정한 짐칸에 넣고 봉인할 수 있다. 봉인은 세관의 승인없이 뜯을 수 없다.

제17조 세관은 국가무역계획에 없거나 수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물자를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엄격히 단속통제하여야 한다.

제18조 세관은 국경통로,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설치된 국가품질감독기관, 검역기관을 비롯한 해당 전문검사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세관은 필요한 기술감정을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 세관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짐의 보관상태를 늘 검열하고 손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다. 정해진 기간안에 실어가지 않은 짐에 대하여서는 세관이 해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 우리 나라 무역기관과 합의없이 국경역,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들어온 다른 나라의 짐은 세관의 승인이 있어야 부리울수 있다.

제21조 잘못들여온 다른 나라의 짐, 국제우편물, 임자없는 짐, 남는 짐은 세관의 승인밑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 세관검사를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검사에 필요한 조건을 제때에 보장하며 세관검사에 텁회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관이 관할하는 짐과 운수수단을 옮기거나 다른 곳으로 내가려는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장을 뜯거나 다시 꾸리는 경우에도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짐을 나르는 기관, 짐관리자는 짐을 나르거나 보관하는 과정에 포장이 손상되었거나 그밖의 사고가 났을 경우 곧 세관에 알려야 한다.

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

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편지, 인쇄물 속에 돈, 유가증권, 물건을 넣지 말며 소포속에도 편지나 돈을 넣지 말아야 한다.

제26조 우리 나라 국경을 넘어다니는 공민은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기념품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직업적으로 우리 나라 국경을 넘어다니는 공민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작업용품과 생활필수품만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제27조 이사짐, 상속재산은 허가없이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낼 수 있다. 이사짐, 상속재산이라도 통제품은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들여오거나 내보낼 수 있다.

제28조 장사를 목적으로 국제우편물을 이용하여 물건을 들여오거나 내가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29조 무기, 탄약, 폭발물, 독약, 마약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 들여오지 못하게 되었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되여있는 물건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통제품은 들여오거나 내보낼 수 없다.

제30조 당 및 정부 대표단성원, 외교일군, 국제기구성원 그 밖에 따로 정한 일군의 몸짐과 손짐, 외교우편물과 외교신서물에 대하여서는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들여오지 못하게 되어있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되어있는 물건과 통제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검사를 할 수 있다.

제 4 장 관 세

제31조 세관은 관세를 정확히 물리고 그 납부정형을 장악통제하여야 하다. 필요에 따라 세관은 관세납부와 관련한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의 문건을 조사할 수 있다.

제32조 관세를 물리는 기준가격은 수입물자인 경우에는 국경도착가격, 수출물자인 경우에는 국경인도가격으로 하며 수출입물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매가격으로 한다. 관세률은 정무원이 정한다.

제33조 관세의 계산은 해당 물자가 수출 또는 수입되는 당시의 관세률에 따라 조선원으로 한다.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하는 해당 시기의 외화환산률에 따라 한다.

제34조 다음의 물자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다른 나라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보내온 선물
2.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여행자의 휴대품
3. 외국투자기업이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들여오는 물자와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자

4.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
5.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에 따라 관세를 물지 않게 되여 있는 물자
6. 국가가 따로 정한 물자

제35조 다음의 경우에는 이 법 제3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우리 나라에 오는 대표단성원과 외교일군,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기관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여 물자를 들여오는 경우
2.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자유경제무역지대밖의 공화국령역에 판매하는 경우
3.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여온 물자를 공화국령역에 판매하는 경우
4. 보세물자를 정해진 기간안에 반출하지 않는 경우

제36조 세관은 물자가 부패변질, 파손, 류실되었을 경우 정상에 따라 해당한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제37조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무역협정에 관세특혜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혜관세률을 적용한다. 관세특혜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관세률을 적용한다. 무역협정에 관세률이 따로 정해져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8조 관세률이 정해져있지 않은 물자에는 그와 류사한 물자의 관세률을 적용한다.

제39조 관세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세관이 발급한 관세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안으로 해당 은행에 물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관이 직접받아 은행에 넣을 수 있다.

제40조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공민의 짐과 국제우편물은 관세를 물어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수입하는 물자는 관세납부통지서를 발급하고 짐임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

제41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기간안에 관세를 물수 없는 경우 관세 납부기간연장신청문건을 납부기간이 끝나기 5일전에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은 관세납부기간을 10일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42조 관세를 초과하여 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관세를 문 때로부터 1년안에 더 바친 관세를 되돌려 줄 것을 세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은 15일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43조 세관은 관세를 잘못 계산하여 적게 받았거나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물자를 반출한 날부터 1년 안에 관세를 추가하여 물릴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고의적인 행위로 관세를 잘못계산하여 적게 받았거나 부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물자를 반출한 날부터 3년안에 관세를 물릴 수 있다.

제44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관세를 면제받고 들여온 물자를 정해진 용도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관세가 면제된 물자를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관에 알리고 해당한 관세를 물어야 한다. 관세를 물지 않은 물자는 팔고 살 수 없다.

제45조 보세기간에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보세기간은 보세공장, 보세창고에서는 2년으로 하며 보세전시장에서는 세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6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세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짐임자는 보세기간이 끝나기 10일전에 보세기간연장신청문건을 해당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은 보세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47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세물자를 가공, 포장, 조립하기 위하여 보세지역 밖으로 내기려는 경우 관세와 맞먹는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세관에 맡겨야 한다. 세관은 물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반입되면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돌려준다. 그러나 반출한 물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반입되지 않으면 세관에 맡긴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관세로 처리할 수 있다.

제 5 장 제재 및 신소청원

제48조 세관은 정해진 기간안에 관세를 물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매일 연체료를 물린다. 관세납부 통지서를 내준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관세를 물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와 연체료에 맞먹는 물자를 관세와 연체료로 처리하거나 해당 은행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돈자리에서 관세와 연체료를 공제할 수 있다.

제49조 세관법규를 어기고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짐과 운수수단은 억류 또는 물수한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50조 세관 수속과 검사, 관세납부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해당 세관과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상급세관에 신소청원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신소청원을 받은 상급세관은 그것을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1조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
는 신소를 처리받은 날부터 10일안에 해당 재판소에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보장하며 종업원들의 노동생활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외국투자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알선과 채용, 노동보수의 지불, 노동생활조건의 보장은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서 규제하지 않은 노동과 관련한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노동법규에 준한다.

제 3 조 이 규정은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외국투자기업에는 외국인투자기업(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외국기업이 포함된다.

제 4 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우리나라 인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사람을 관리인이나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으로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 5 조 외국투자기업이 받아들인 인력은 자연재해같은 불가

* 1993. 12. 30, 정무원 결정 제80호

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에 동원하지 않는다.

제 6 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노동보수액은 그의 노동직종과 기술·기능수준, 노동생산성에 따라 정한다. 노동보수에는 노임·가급금·장려금·상금이 속한다.

제 7 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제 8 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국민인 종업원들이 사회보험,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종업원을 대표하는 직업동맹과 노동계약을 맺어야 한다. 노동계약은 맺은 날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계약의 수정은 쌍방이 합의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노동계약文건을 기업소재지 노동행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10조 이 규정 집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노동행정기관이 한다.

제 2 장 인력의 채용 · 해고

제11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수를 자체로 정하며 인력알선기관과 인력채용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인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계약시에는 업종별·기능별·인력수·채용기간·인력비·노동생활보장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2조 인력알선기관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기업소재지 안에 있는 인력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기업소재지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일부 기능공은 다른 지역에 있는 인력으로 보장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지역 인력알선기관은 해당 기능공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13조 우리나라 기업소를 모체로하여 창설하는 합작기업, 합영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그 기업소의 종업원들 가운데서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제14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재지 인력알선기관이 보내주는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제15조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직업동맹조직, 해당 인력 알선기관과 합의하고 채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종업원을 해고시킬 수 있다.

1. 종업원이 직업병이나 공상이 아닌 병 또는 부상으로 치

료를 받은 후에도 이미 하던 일 또는 다른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기업의 생산경영 또는 기술조건의 변동으로 인원이 남는 경우
3. 기업이 파산에 직면하여 부득이하게 인력을 축소하거나 해산을 선포한 경우
4. 종업원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거나 노동규율을 엄중히 어긴 경우

제16조 종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직을 제기할 수 있다.

1.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해야할 사정이 생긴 이유
2. 전공이 맞지 않아 자기의 기술·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경우
3.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된 경우

제17조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업원을 해고 시킬 수 없다.

1. 직업병을 앓거나 일하다가 부상당하여 치료받는 경우에 종업원을 해고시킬 수 없다.
2. 병으로 6개월까지의 기간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3. 여성 종업원이 결혼한 경우와 임신, 산전·산후휴가, 젖먹이는 기간에 있는 경우

제18조 외국투자기업은 이 규정 제15조 1, 2, 3에 따라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제16조 2, 3에 따라 사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일한 연한에 따라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일한 연한이 1년이 못되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분의 노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주며 1년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개월 평균노임액과 일한 년도수에 따라 계산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제19조 외국투자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사직시키려는 경우에는 1개월전에 기업소재지 인력알선기관에 명단을 내야 한다.

제 3 장 기능공의 양성

제20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공화국 노동법규에 따라 그들에게 기술·기능급수를 사정하여 주어야 한다.

제21조 외국투자기업은 필요한 경우 기능공 양성을 위한 양성소 또는 양성반을 조직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은 외국투자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을 조직 운영할 수 있다. 기술인재 양성은 종업원·재직일군 양성, 학교졸업생

들의 취업전 양성의 형태로 한다.

제 4 장 노동시간과 휴식

제23조 종업원들의 노동일수는 주 6일, 노동시간은 하루 8 시간으로 한다.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노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할 수 있다. 계절적 제한을 받는 부문에서는 연간 노동시간 범위에서는 노동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4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시간외 노동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간외 노동을 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직업동맹 조직과 합의하고 시간외 노동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의 법에 따라 해당한 종업원에게 명절일과 공휴일 휴식, 정기 및 보충 휴가와 산전·산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명절일과 공휴일에 일을 시켰을 경우에는 1주일 안으로 대체휴가를 주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해마다 해당한 종업원에게 관혼상제를 위한 1~3 일간의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기간에는 왕복 여행일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제 5 장 노동보수

제26조 외국투자기업의 종업원 월 노임기준은 2백 20원(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1백 60원)보다 낮지 말아야 하며 힘들고 어려운 부문의 노임기준은 높이 정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정한 노임기준에 따라 각종 직제별 노임기준, 노임지불 형태와 방법, 가급금·장려금·상금기준을 자체로 정한다.

제27조 외국투자기업은 생산수준, 종업원의 기술·기능 숙련정도와 노동생산능률의 제고에 따라 노임수준을 점차 높여야 한다.

제28조 외국투자기업은 휴가 및 보충휴가 기간에 해당한 노동보수를 휴가를 들어가기 전에 종업원에게 주어야 한다. 휴가기간에 해당한 노동보수는 휴가받기전 3개월동안의 노동보수 총액을 실제 가동일수에 따라 평균한 하루 노동보수액에 휴가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휴가기간의 노동보수액 계산에는 노임, 가급금, 장려금이 포함된다.

제29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의 잘못이 아닌 기업의 책임으로 일하지 못하였거나 양성기간에 일하지 못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액의 60% 이상에 해당한 보조금을 종업원에게 주어야 한다.

제30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휴일에 일을 시키고 대체휴가를 주지 않았거나 노동시간의 연장작업, 밤일을 한 종업원에게 노임과 함께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의 50%에 해당한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밤일에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사이에 일한 것이 포함된다.

제31조 외국투자기업은 명절날과 밤 22시부터 다음날 6시 까지의 사이에 노동시간의 연장작업을 한 종업원에게 노임과 함께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노임액의 1백%에 해당한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제32조 외국투자기업은 세금을 바치고 남은 이윤의 일부로 상금, 기금을 세우고 직업동맹 조직과 협의하여 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는데 모범적인 종업원에게 상금을 줄 수 있다.

제33조 외국투자기업은 노임, 가급금, 장려금을 주는 날짜를 정하고 그 날에 내주어야 한다. 상금은 평가기간 다음 날에 주어야 한다. 노동보수를 주는 날이 되기전에 사직하였거나 퇴직, 해고시킨 경우에는 그 수속이 끝난 다음에 노동보수를 주어야 한다.

제 6 장 노동 보호

제34조 외국투자기업은 노동안전시설을 갖추고 그를 개선
완비하여 작업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고열, 가스, 먼지를
막고 채광, 조명, 통풍과 같은 산업위생 조건을 보장하여
종업원들이 문화·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노동안전 기술교육을 준
다음에 일을 시켜야 한다. 노동안전 기술교육 기간은 업종
과 직종에 따라 1~2주일로 한다.

제36조 외국투자기업은 여성 종업원들을 위한 노동보호 위
생시설을 잘 갖추어야 한다. 임신 6개월이 넘는 여성에게
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외국
투자기업은 탁아소, 유치원을 조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7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에게 노동보호용구, 작업필
수품, 영양식료품 같은 노동보호물자를 제때에 내주어야
한다. 종업원들에게 내주는 노동보호물자의 기준은 공화국
의 해당 노동법규에 준하여 외국투자기업이 정한다.

제38조 외국 투자기업은 작업도중 종업원이 부상, 중독과 같
은 엄중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노동보호 감독기관
에 제때에 알리고 관계기관의 사고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사회보험 · 사회보장

제39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공화국 공민인 종업원은 병 또는 부상, 일할 나이가 지나 일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보험 ·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는다. 사회보험 ·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은 보조금 · 연금의 지불, 정휴양 및 치료가 속한다. 보조금과 연금을 받으려는 종업원은 보건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보조금과 연금을 받아야 할 사유를 확인하는 문건을 외국투자기업에 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사회보험 보조금 지불청구서를 사회보험기관에 내어 확인을 받은 다음 은행기관에서 해당한 사회보험 보조금을 받아 노동보수를 주는 날에 해당 종업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정휴양소에 가고 오는데 드는 여비와 장례보조금은 해당 문건에 의하여 먼저 내주고 후에 청산받아야 한다. 사회보장에 의한 연금 · 보조금은 외국투자기업이 사회보험 기관에 신청문건을 내어 수속한데 따라 사회보장연금 지불 기관에서 달마다 정한 날에 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0조 사회보험 · 사회보장에 의한 보조금 · 연금은 공화국의 노동법규에 따라 계산한다.

제41조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은 사회보험기금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회보장기금은 종업원에게 받아들이는 사회보험으로 적립된다.

제42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양소, 요양소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정양소, 요양소의 운영비는 사회보험기금에서 낸다.

제43조 외국투자기업은 사회보험료를 납부, 사회보험기금의 지출에 대하여 기업소재지 사회보험기관과 직업동맹조직의 감독을 받는다.

제44조 외국투자기업은 세금을 바치고 남은 이윤의 일부를 종업원들을 위한 문화후생기금을 세우고 쓸 수 있다. 문화후생기금은 종업원들이 문화·기술수준의 향상과 군중문화 체육사업·후생시설 운영 같은데 쓴다. 문화후생기금의 사용에 대한 감독을 직업동맹조직이 한다.

제 8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45조 노동행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이 이 규정을 어기고 우리나라 인력을 채용 또는 해고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제46조 노동행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이 노동안전시설과 산업위생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 기간을 정해주어 시정을 하도록 하며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47조 벌금 적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벌금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벌금을 적용한 기관의 상급기관에 돌려줄 것을 제기할 수 있다. 벌금을 돌려줄 것을 제기받은 상급기관은 그것을 제기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8조 이 규정의 집행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공화국의 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서 해당한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다.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조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이 아래부터는 상주대표사무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규정에 따라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 3조 상주대표사무소 설치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치할 수 있다. 상주대표사무소에는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 4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은 3년까지로 하며 그 성원수는 5명을 넘을 수 없다. 상주대표사무소의 성원에는 책임자와 대표들이 포함된다. 통역원, 타자수, 부기원, 경리원을 비롯한 행정기술성원과 운전수, 정비원과 같은 봉사성원은 상주대표사무소의 성원에 속하지 않는다.

제 5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외국기업(이 아래부터는 본 기업

*1994. 2. 21, 정무원 결정 제8호

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통신연락과 자문사업, 경제기술자료의 소개와 같은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본 기업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거래당사자와 계약을 맺거나 대금과 물자를 주고받는 것과 같은 위임대리업무활동을 할 수 있다.

제 6 조 상주대표사무소는 본 기업의 위임대리업무활동 범위를 벗어나 자체로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들여다 되거리, 위탁판매를 하거나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수출물자를 구입하여 파는 것과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활동을 할 수 없다. 공화국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사이에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과 관련한 협정을 맺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제 7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설치 및 등록, 변경, 기간연장과 같은 신청문건은 조선어와 외국어로 만들어야 한다.

제 8 조 상주대표사무소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제 9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은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제10조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를 지대당국을 통하여 대외경제위원회

(외국금융기관은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에는 본 기업과 상주대표사무소의 이름, 책임자의 이름, 대표성원수와 대표들의 이름, 설치장소, 활동내용, 상주기관 같은 것을 밝히고 본 기업의 소재지 또는 소재국의 해당기관이 발급한 기업등록증서 사본, 거래하는 은행기관이 발급한 신용확인서, 상주하려는 대표사무소 책임자, 대표성원들의 위임장, 경력서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금융기관의 상주대표사무소 설치 신청서에는 본 기업의 최근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기본규약, 이사회 의 성원명단 같은 것을 더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외경제위원회, 중앙은행(이 아래부터는 심사승인기관이라 한다)은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 심의한 다음 상주대표사무소 설치를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사승인기관은 상주대표사무소의 설치를 승인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승인서를 지대당국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13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상주대표사무소 설치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지대당국에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신청서를 내어 등록하여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신청

서에는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의 내용을 밝히고 상주 대표사무소 설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대당국은 승인된 상주대표사무소를 등록하고 상주 대표사무소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를 등록한 날이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일로 된다.

제15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성원과 그 가족은 외국인의 체류 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체류증 또는 상주외국 인증 같은 것을 발급받아야 하며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과 관련한 규정에 따르는 출입질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16조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상주대표사무소와 그 성원은 해마다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5일 전에 지대당국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17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이름, 설치장소, 상주대표 성원수 를 변경시키거나 책임자 또는 상주대표를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당국을 통하여 심사승인기관에 변경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의 책임자 또는 상주대표를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에 그의 위임 장과 경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책임자가 결원이거나 1개월이상 자리를 뜨는 경우에는 상주대표 가운데에서 어느 한 상주 대표가 책임자의 대리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 주대표사무소는 해당한 내용을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알려 야 한다.

제19조 상주대표사무소는 공화국의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공화국 영역안에 있는 다른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20조 상주대표사무소와 그 성원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과 관련한 공화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소재지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고 해당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21조 상주대표사무소는 해마다 1월 안으로 지대당국을 통하여 심사승인기관에 연간사업 총화자료를 내야 한다. 연간사업 총화자료는 조선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상주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지대당국을 통하여 심사승인기관에 상주기간 연장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주기간 연장신청서에는 연장하려는 기간과 이유를 밝히고 상주기간 본 기업이 우리 나라와의 경제거래 정형을 밝힌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상주대표사무소에 필요한 운수수단, 사무용품, 생활용품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경우에는 세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운수수단은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등록하고 운전면허증과 차번호를 받은 다음 자동차 3자책임보험에 들어야 이용할 수 있다. 다른나라에서 들여온 운수수단, 사무용품, 생활용품은 팔거나 다른 목적에 쓸 수 없다. 부득이하게 팔아야 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를 문 다음 지정된 상업(무역)기관을 통해서만 팔 수 있다.

제24조 상주대표사무소는 필요한 건물을 세내거나 인력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 건물관리기관 또는 인력알선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세낸 건물, 채용한 인력의 관리는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건물양도 또는 노동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5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사업과 관련된 국내외통신은 공화국의 해당 체신기관을 통하여 보장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아래 국제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다.

제26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이 끝났거나 상주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주대표사무소를 철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철수하기 30일 전에 심사승인기관과 지대당국에 서면으로 알리고 세무 및 채권, 채무관계를 청산하여야 한다. 청산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는 청산사업이 끝난 날부터 7일 안으로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을 지대당국에 바치고 등록을 취소하는 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기관의 납세 확인문건을 지대당국에 내야한다.

제27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거나 변경 및 등록취소 수속을 하려는 경우에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해당기관에 내야한다.

제28조 심사승인기관과 지대당국은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 정형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주대표사무소는 검열일군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29조 상주대표사무소와 그 성원이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2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공화국 영역 밖으로 추방할 수 있다.

제30조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차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 해결한다.

라.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 2 조 이 규정은 공화국 영역 안이나 밖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 공화국 영역 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공화국 영역 밖의 조선동포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이, 외국기업에는 공화국 영역 안에 상주기구를 설치하고 경영활동을 하거나 상주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공화국 영역 안에서 이자, 배당금, 임대료와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과 같은 소득원천이 있는 외국회사, 상사 기타 경제조직이 속한다. 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외국투자기업이라 한다.

제 3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세금부과와 징수, 세

* 1994. 2. 21, 정무원 결정 제9호

금납부 정형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은 재정기관이 한다. 재정기관에는 재정부와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의 재정부서가 포함된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무정형을 검열하는데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제때에 보여줘야 한다.

제 4 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180일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기업의 소재지가 변동되었거나 통합, 분리되었을 경우와 등록자본, 경영범위, 업종과 같은 것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변경 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은 도행정경제위원회에 기업등록 취소 수속을 하기 20일 전에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 5 조 세무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무등록 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힌 세무등록 신청서에 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1) 기업의 명칭과 주소
- 2) 기업 등록날자, 등록번호
- 3) 기업의 경영방식과 업종
- 4) 경영기간
- 5) 종업원 총수(그중

외국인수) 6) 부지 면적 7)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 번호
8) 기업의 책임자와 재정부기 책임자의 이름

외국인은 세무등록 신청서에 이름과 국적, 주소, 여권번호, 체류증 발급날자, 체류기간을 밝혀야 한다. 세무변경등록을 하거나 세무등록취소 수속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무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세무등록취소 신청서에 기업의 명칭과 주소, 변경 및 취소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 6 조 세무에 이용되는 문서양식은 재정부가 정한다. 세무문서는 조선글로 써야 한다. 다른 나라 글로 쓴 경우에는 그 밑에 조선글로 번역해서 써야 한다. 세무문서에는 기업의 도장과 기업책임자 및 재정부기 책임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7 조 세무와 관련되는 문서(전자계산기로 기록하였을 경우에는 테프와 원판)는 거래가 일어난 순서대로 편철하여 문서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5년동안(재정부기 결산서, 고정재산 문서는 기업의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보존해야 한다.

제 8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바치는 세금은 조선 원으로 계산해 납부한다. 조선 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한 해당 시기의 외화 환율에 따라 한다.

제9조 세금은 수익인이 직접 신고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10조 세금은 재정기관의 확인을 받은 세금납부서를 내는 것과 함께 해당 은행에 납부한다. 세금을 받은 은행은 신고납부자 또는 공제납부자(이 아래부터는 납세의무자라 한다)에게 세금납부 영수증을, 재정기관에는 세금납부 통지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1조 귀국(임시 출국은 제외)하려는 외국인은 미납한 세금을 납부해야 출국수속을 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은 자기 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이 규정과 다르게 세금문제를 정했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외국투자가에는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이 포함된다.

제 2 장 기업소득세

제13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영역 안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에는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이 포함된다.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는 생산부문의 생산물 판매소득, 건설, 탐사,

개발부문의 소득, 상업(무역 포함)부문의 상품판매 소득, 금융부문의 이자 및 수수료 소득, 교통운수, 체신, 급양편의와 같은 봉사부문의 운임 및 요금 소득 같은 것이 속한다. 기타 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속한다. 1)이자소득 2)이익배당소득 3)재산의 임대 및 양도소득 4)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 및 양도에 의한 소득 5)기술고문, 상담, 기능공 양성과 같은 경영방식을 하여 얻은 소득 6)폐설물 및 부산물 처리에 의한 소득 7)이밖의 소득, 외국 투자기업은 공화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14조 기업소득세의 납세연도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세연도 안에 영업을 시작한 외국투자기업은 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은 해산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그해 해산을 선포한 날까지로 한다.

제15조 기업소득세는 총수입에서 원가와 기타 지출, 거래세를 공제하고 남은 결산이윤에 부과한다. 원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1)공업부문에는 원료 및 자재비, 연료비, 동력비, 물자구입경비, 새제품 생산비, 노임,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직장 및 회사관리비, 판매비, 보험료 2)상업부문에는 상품비와 유통비(수송비, 보관비, 포장비, 용기 손모 및 수리비, 상품자연감모비, 영업용 연료 및 전

력비, 노임, 대외판매 수속비, 비품비, 난방비, 조명비, 수도사용료, 사무비, 통신비, 연비, 선전비, 대외사업비, 노동보호비, 문화사업비, 대부이자, 보험료, 이밖에 유통비)
3)봉사부문에는 급양원자재비와 유통비, 교통운수 운영비, 체신운영비 기타 지출에는 환자시세의 변동으로 입은 손실, 기업이 파산당하여 받지 못한 채권, 판로가 막혀 체화된 제품을 실현하기 위해 재가공, 재포장하는데 든 비용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16조 작업기간이 1년이상 걸리는 건설 및 조립, 설치공사, 대형기계설비의 가공, 제작 같은 것을 하는 기업의 기업소득세는 납세년도마다 그 해에 수행한 작업량에 따라 얻은 수입금에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부과한다.

제17조 기업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1)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결산이윤의 14% 2)자유경제 무역지대 밖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결산이윤의 25%
3)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 부문, 공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결산이윤의 10% 4)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얻은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은 소득액의 10%,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에서 얻은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은 소득액의 20%

제18조 기업소득세는 결산이윤 또는 소득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9조 기업소득세는 분기별로 예정납부하고 년간결산에 의하여 확정납부한다. 분기결산이윤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소득세액의 1/4을 예정납부한다.

제20조 외국투자기업은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 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분기 재정부기 결산서를 기업소득세 납부에 앞서 재정기관에 내야한다.

제21조 외국투자기업은 납세년도가 끝난 때로부터 2개월 안으로 년간 기업소득세 납부서와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년간 재정부기 결산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낸 다음 년간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22조 기업소득세 납부서에는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번호, 결산이윤, 세율, 납세금액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재정부기 결산서에는 재정상태표, 원가계산표, 생산 및 판매 소득 계산표, 이익 및 분배 계산표, 손익계산표, 관리비계산표,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계산표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23조 공제납부장은 수익금을 지불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기업소득세 공제납부서와 함께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

다. 기업소득세 공제납부서에는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 번호, 지불항목, 지불금액, 세율, 납세금액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24조 외국투자기업은 경영기간이 끝났거나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해산되는 경우와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해산되는 경우 해산선포일부터 20일 안으로 바쳐야 할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납세담보금으로 세우고 청산안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담보금은 기업소득세로 돌릴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이 통합되거나 분리되었을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기업소득에 대해 결산하고 통합·분리 선포일부터 20일 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산·통합·분리되는 외국투자기업은 미납한 기업소득세를 다른 채무의 이행에 앞서 납부해야 한다.

제25조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소득이 생긴때로부터 15일 안으로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사가 얻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본사가 종합하여 납부하며 외국기업의 지사가 얻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지사가 신고 납부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본사와 지사의 기업소

득세율이 부문과 지역에 따라 다를 경우에는 각각 해당한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공화국 영역 밖에 지사를 설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다른 나라에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공제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기업소득세액이 이 규정에 밝힌 세율로 계산한 기업소득세액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지 납부한 소득세액 만큼 공제하여 주며 초과한 부문에 대한 기업소득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제27조 다른 나라 정부나 국제금융조직이 공화국 정부 또는 국가 은행에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 은행이 우리나라 은행 또는 기업에 낮은 이자율(런던은행들 사이에 제안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과 거치기간을 포함한 10년이상의 상환기간과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28조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난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장려하는 부문에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 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이 포함된다.

제29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

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난 해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준다. 금융기업이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줄 수 있다.

제30조 총투자액이 6천만원이상 되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철도, 도로, 통신, 비행장, 항만 등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난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제31조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주는 기간은 이윤이 난 해로부터 연속 계산한다.

제32조 외국투자기업이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 년도의 결산이윤에서 메꿀 수 있으며 다음 년도에도 메꾸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속하여 해마다 메꿀 수 있으나 4년을 넘을 수 없다.

제33조 기업소득세를 감면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소득세 감면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주소, 업종, 이윤이 생긴 년도, 총투자액,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 번호를 밝히고 해당기업설립 심사승인기관이 증명하는 문

건을 첨부해야 한다.

제34조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은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생산 및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 되기전에 철수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았던 기업소득세액을 바쳐야 한다.

제35조 외국투자기업이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을 공화국 영역 안에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하부구조건설 부문은 이미 바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다른 부문은 이미 바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되돌려 받거나 다음에 바쳐야 할 기업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신청서와 함께 재투자액과 경영기간을 증명하는 기업설립 심사승인기관의 확인문건을 내야 한다. 경영기간이 5년이 되기 전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수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받은 기업소득세액을 바쳐야 한다.

제 3 장 개인소득세

제36조 공화국 영역 안에 180일이상 체류하면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기간 안에 임시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체류 또는 거주기간에 포함시킨다.

제37조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할 소득에는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 개인기업소득(개인업 소득에 한함)이 포함된다. 개인소득 세를 바쳐야 할 소득이 현물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 것을 취득한때의 현지가격으로 한다.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에는 노임, 상금, 장려금, 가급금과 강의, 강연, 투고, 번역, 설계, 제도, 설치, 수예, 조각, 그림, 창작, 공연, 부기, 체육, 의료, 상담과 같은 일을 해 얻은 소득이 속하며 배당소득에는 이익배당금·잉여금의 분배소득 같은 것이 속 한다. 공업소유권 제공에 의한 소득에는 특허권, 실용신형권, 공업도안권, 상표권의 소유자가 그것을 제공하거나 양도해 받은 소득이 속하며 기술비결 제공에 의한 소득에는 특허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는 기술문헌과 기술지식, 숙련기능, 경험 같은 것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 속한다. 저작권 제공에 의한 소득에는 소설, 시, 미술, 음악, 무용, 영화, 연극과 같은 문학예술작품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 속하며 이자소득에는 예금·채권에 의한 이자소득이, 임대소득과 재산판매소득에는 건물, 기계, 설비,

자동차, 선박과 같은 재산을 임대하거나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속한다. 증여소득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을 증여받은 소득이 속하며 개인업소득에는 영업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상점, 음식점, 수리소 같은 것을 차려놓고 자체로 상업 및 봉사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이 속한다.

제38조 개인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노동보수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월노동보수액이 2천원 까지인 경우 면제하며 그 이상인 경우의 개인소득세율은 이 규정 부록 1에 정한 초과누진세율로 한다.
2.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율은 소득액의 20%로 한다.
3. 증여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이 1만원까지인 경우 면제하며 그 이상인 경우의 개인소득세율은 이 규정 부록 2에 정한 세율로 한다.
4. 재산판매소득, 개인업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율은 소득액의 25%로 한다.

제39조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고정재산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의 20%(노력비, 포장비, 수수료와 같은 비용)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인업을 해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거래세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40조 개인소득세는 다음과 같다.

1.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날마다 계산하여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다음달 15일 안으로 공제납부한다.
2. 수익인이 공화국 영역 밖에 있으면서 공화국 영역 안에서 얻은 재산판매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분기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는 다음 분기 첫달 10일 안으로 소득액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며 수익인이 공화국 영역 안에 있으면서 얻은 재산판매소득과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3. 개인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날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는 다음달 15일 안으로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4. 수익인이 공화국 영역 밖에 있으면서 공화국 영역 안에서 얻은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분기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는 다음 분기 첫달 10일 안으로 소득액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며 수익인이 공화국 영역 안에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공제납부자는 공제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41조 공화국 영역 안에 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이 공화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이 있은 다음분기 첫날 안으로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납세의무자가 공화국 영역 밖에서 이미 개인소득세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개인소득세액 범위안에서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문건에는 해당 나라의 세무기관이 발급한 납세문건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42조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1. 공화국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사이에 맺은 협정에 의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한 소득
2. 우리나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예금 이자와 보험금 및 보험보상금
3.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하는 은행에 비거주자들이 예금한 돈에 의한 이자

제 4 장 재 산 세

제43조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안에 가지고 있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에는 살

림집, 별장, 부속건물이 포함되며 선박, 비행기에는 자가 용배, 자가용비행기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44조 재산세는 재산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재산을 임대 했거나 저당잡혔을 경우에도 재산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 한다. 재산소유자가 재산소재지에 없는 경우에는 재산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된다.

제45조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안에 건물, 선박,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것을 소유한 때로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재산등록 신청서를 내고 재산가격을 등록해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넘겨 받은자가 공화국 영역 밖에 있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을 등록한다. 재산등록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국적, 민족별, 주소, 재산의 이름, 단위, 수량, 건평(톤수), 처음값, 대보수비, 내용년한, 사용한 년한, 건설(제작)년도, 평가한 가격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46조 등록하는 재산의 가격은 국가 가격재정기관이 평가하고 공증기관이 공증한 가격으로 한다.

제47조 등록된 재산은 해마다 1월 1일 현재 평가하고 공증 가격으로 2월 안에 해당 재정기관에 재등록한다.

제48조 재산의 소유자가 달라졌거나 재산의 등록값이 달라

졌을 경우와 재산을 폐기했을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20일 안으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변경등록 또는 등록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49조 재산세의 과세대상액은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한 재산가격으로 한다.

제50조 재산세는 재산을 등록한 다음달부터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된 재산가격에 이 규정 부록 3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제51조 납세의무자는 재산세를 분기가 끝난 다음달 20일 안으로 납부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산세를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다음 분기에 추가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52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외국인이 자기의 자금으로 구입했거나 건설한 건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구입했거나 준공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 5 장 상 속 세

제53조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외국인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공화국 영역 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화폐재산, 유가증권, 예금, 저금 및 보험금, 공업소유권, 저작권, 토지이용권, 채권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이 포함된다.

제54조 상속재산의 가격은 상속받은 때의 재산이 있는 현지 시장가격으로 한다.

제55조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상속시키는자의 채무액, 상속자가 부담한 장례비용, 상속기간에 상속재산을 보존관리하는데 든 비용, 재산상속과 관련한 공증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이 규정 부록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한다. 상속시키는자의 채무액, 장례비용, 재산의 보존관리에 든 비용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56조 상속자는 상속을 받을 때로부터 3개월 안으로 상속재산액, 공제액, 과세대상액, 상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밝힌 상속세 납부서와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상속세 공제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낸 다음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자가 둘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자별로 상속세를 납부한다. 상속세 공제신청서에는 상속자의 이름과 주소, 상속세의 공제항목과 금액을 밝힌다.

제57조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현물재산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재산 종류, 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밝힌 신청서를 해당 재정 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물재산은 상속받은 재산이어야 한다.

제58조 상속세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에 신청하여 3년 안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상속액이 2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면제한다.

제 6 장 거 래 세

제59조 외국투자기업과 개인업을 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수입에 대해 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 2)상업(무역포함)부문에서는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상품판매액 3)교통운수, 금융, 관광, 호텔을 비롯한 봉사부문에서는 운임, 대부이자와 예금이자와의 차액, 요금과 같은 봉사수입금

제60조 거래세는 생산, 상업, 봉사부문의 수입금에 부록 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부문별 세율에 따르는 전개된 항목의 세율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61조 납세의무자는 월중에 이루어진 수입금을 종합하여

다음달 10일 안으로 재정기관에 거래세 납부서를 내어 확인을 받은 다음 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62조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와 생산한 제품을 국가적 요구에 의해 공화국 영역 안에 판매하였을 경우 거래세를 면제한다.

제63조 외국투자은행이 우리 나라 은행이나 기업에 낮은 이자율(런던은행들 사이에 제안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과 거치기간을 포함한 10년 이상의 상환기간과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했을 경우에는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거래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64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상업,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에 대해선 거래세를 다른 지역보다 50% 덜어 준다.

제 7 장 지 방 세

제65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이용세가 포함된다.

제66조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액은 외국투자기업인 경우 기업의 월노임총액으로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월수입액으

로 한다.

제67조 도시경영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납부한다.

1.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의 월노임총액에 1%의 세율을 적용하여 날마다 다음달 10일 안으로 신고 납부한다.
2. 180일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및 재산판매 소득을 비롯한 월수입에 1%의 세율을 적용하여 날마다 다음달 10일 안으로 본인이 신고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 납부한다.

제68조 기업을 등록하거나 광업권, 어업권을 등록하는 외국투자기업과 면허증, 자격증을 받는 외국인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에는 등록세와 면허세가 포함된다.

제69조 등록면허세는 전당 이 규정 부록 6에 정한 세액에 따라 납부한다.

제70조 자동차를 소유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이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에는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자동자전차, 특수차가 포함된다. 특수차에는 기중기차, 연유차, 시멘트운반차, 지게차, 굴착기, 불도젤, 뜨락또르 같은 것이 속한다.

제71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때로부터 3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신청서를 내어 자동차 이용에 대한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자동차이용에 대한 세무등록 신청서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과 국적, 민족별, 주소, 자동차의 번호, 종류, 좌석수 또는 적재중량, 취득날자를 밝혀야 한다.

제72조 자동차 이용세는 해마다 2월 안으로 이 규정 부록 7에 정한 세액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제73조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하여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에 신고하여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자동차 이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 8 장 제재 및 신소청원

제74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세금을 정한 기일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일이 끝난 다음달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매일 0.3%에 해당한 연체료를 물린다.

제75조 재정기관은 세금납부 의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물린다.

1. 정한 기일안에 세무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소득세 납부

서, 소득세 공제납부서, 재정부기 결산서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2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공제납부자가 세액을 적게 공제했거나 공제한 세액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납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과 함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까지 벌금을 물린다.
3. 장부, 전표, 증빙문건을 위조·폐기했거나 원가, 비용, 소득액 같은 것을 사실과 맞지 않게 계산하여 탈세한 경우에는 탈세액을 받는 것과 함께 탈세액의 4배까지 벌금을 물린다.

제76조 재정기관은 벌금을 물어야 할 대상자에게 벌금통지서를 보내며 벌금을 물어야 할 대상자는 벌금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물어야 한다.

제77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78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세금을 받은 재정기관의 웃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청원을 받은 재정기관은 30일 안으로 신소청원을 처리해야 한다.

제79조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는 외국투자 기업과 외국인은 그것을 처리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소재지 또는 거주지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외국투자가(이 아래부터는 ‘투자가’라 한다)는 자유 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기업은 투자가가 자본을 단독으로 투자하여 창설하며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공화국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도 지대 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제 3 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법인으로 되며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투자가와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 4 조 외국인기업의 창설 및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이 규정의 규제내용에 넣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따른다.

제 5 조 외국인기업은 원칙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94. 3. 27, 정무원 결정 제13호

보험기관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 6 조 외국인기업은 재정부기 문건과 공화국의 기관, 기업 소에 내는 문건을 조선어로 써야 하며 외국어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 2 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제 7 조 투자가는 다음과 같은 부문에 외국인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

1. 전자공업, 자동화공업, 기계제작공업, 동력공업부문
2.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업부문
3. 건재공업, 제약공업, 화학공업부문
4. 건설운수 및 봉사부문
5. 이밖에 필요한 부문

제 8 조 외국인기업은 다음의 조건 가운데에서 한가지라도 만족시키는 경우에라야 창설할 수 있다.

1.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과 최신설비로 장비되어야 한다.
2.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한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3. 생산제품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제9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승인하지 않는다.

1. 공화국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지장을 줄수 있는 경우
2.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국토 및 자원에 피해를 줄수 있는 경우
3. 설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경우
4. 생산제품이 국내외에서 수요가 없거나 적을 경우
5. 업종과 경영방법이 인민들의 전전한 사상감정과 생활기풍에 맞지 않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는 경우

제10조 다음과 같은 부문에는 외국인기업을 창설할 수 없다.

1. 출판·보도·방송부문
2. 체신부문
3. 이밖에 국가가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금지한 경우

제11조 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위한 수속을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외국인기업 창설 신청서를 도행정경제위원회에 내야 한다(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 신청서에는 투자가의 이름·주소·직무, 외국인기업의 책임자의 이름·국적·직무, 외국인기업의 명칭·업종·생산품종 및 규모·총투자액·등록자본·거래은행·투자방식과 기간·주요생산 기술공정자료·생산제품의

실현대상시장과 실현방식, 기업의 기구·종업원수 및 노력
채용과 관련한 자료, 건설부지 면적과 희망하는 위치, 용
수, 동력 및 원자재 소요량, 연도별 생산계획, 경영기간,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투자
가에 대한 국명 문건, 투자하는 기계설비 및 자재 명세,
투자하는 공업소유권, 기술비결과 그에 대한 설명서, 투자
가의 자본신용확인서, 이밖에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외국인기업의 기본규약에는 기업의 명칭, 주소, 기
업의 창설목적, 경영범위, 생산규모, 총투자액, 등록자본,
투자방식과 기간, 기업의 기구 및 그 직능, 이사장·사장·
부기장·재정검열원의 임무와 권한, 경영기간, 해산 및 청
산, 기본규약의 수정절차,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시켜
야 한다.

제14조 외국인기업의 기본규약은 기업창설을 심사승인한 기
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외국인기업의 경제타산서에는 기업의 명칭, 총투자
액과 등록자본, 투자계획, 생산계획과 관련한 자료, 주요생
산공정설비의 기술 및 유익성 분석자료, 건축공사와 관련
한 자료, 주요 원자재의 품종과 소요량, 생산제품의 판매
와 관련한 자료, 종업원의 채용 및 기술인원 양성계획, 단

계별 수익성 타산자료, 이밖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16조 투자하는 기계설비 및 자재명세에는 기계설비 및 자재이름, 규격, 단위, 수량, 용도, 단가, 총액, 생산공장 및 회사명, 이름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기계설비와 관련한 상품관리책을 첨부해야 한다.

제17조 투자하는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의 설명서에는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의 명칭, 소유자명, 실용가치, 유효기간 같은 것을 밝히고 기술문현 도면 조작지도서와 같은 기술자료, 평가가격의 계산근거, 공업소유권증서 사본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외국인기업 창설을 위한 심사승인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한다.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는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이 포함된다(이 아래부터는 ‘대외경제기관’이라 한다).

대외경제기관은 총 투자액 2천만원 이상의 하부구조건설대상과 하부구조건설대상 밖의 대상 가운데에서 총투자액 천만원 이상의 대상을 심사승인한다.

지대당국은 총투자액 2천만원까지의 하부구조건설대상과 하부구조건설대상 밖의 대상 가운데에서 천만원까지의 대상을 심사승인한다. 투자규모가 적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도 대상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경제기관이 심사승인할 수 있다.

제19조 지대당국은 대외경제기관이 심사승인하는 대상에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대외경제기관에 내야 한다.

제20조 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은(이 아래부터는 심사승인기관이라 한다)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80일 안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심의한 다음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 또는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21조 투자가는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를 받은날부터 30일 안으로 지대당국에 계획을 등록하고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업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업등록신청서에는 투자가의 이름, 주소, 국적, 직무, 외국인기업의 명칭, 주소, 외국인기업책임자의 이름, 국적, 직무,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조업날자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기업소재지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외국인기업은 지대 또는 다른 나라에 자기의 지사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같은 것을 두거나 새끼회사를 내울 수 있으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또는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도 있다.

지사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새끼 회사같은 것을 내오거나 기업을 연합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외국인기업은 필요한 건설을 공화국의 해당건설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 3 장 투자절차와 방법

제25조 외국인기업은 총투자액과 규모에 따라 정한 등록자본을 투자하여야 한다.

총투자액은 외국인기업의 고정재산과 유동재산의 총액이다. 등록자본은 총투자액 가운데서 지대당국에 등록한 자본의 총액이다.

제26조 등록자본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1. 총투자액 6백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65% 이상
2. 총투자액 6백만원 이상부터 2천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45% 이상(그 가운데에서 총투자액 9백만원까지는 410만원)
3. 총투자액 2천만원 이상부터 6천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35% 이상(그 가운데에서 총투자액이 2천 7백만원까지는 950만원)
4. 총투자액 6천만원 이상은 총투자액의 30% 이상(그 가운데서 총투자액의 3천 7백만원까지는 2천 6백만원)

제27조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데 따라 지대당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줄일 수 없다.

제28조 투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기술비결, 공유소유권같은 것으로 할수 있다. 이 경우 현물재산, 기술비결, 공업소유권의 가격은 투자가가 해당시기에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정한 다음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투자하는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같은 것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투자가의 소유권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

2. 경쟁력이 강한 수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의 평가액이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30조 외국인기업은 투자목으로 들여오는 기계설비를 대외 상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외상품검사기관은 검사의뢰서에 따라 기계설비를 검사하고 검사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대외상품검사기관이 기계설비를 검사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31조 투자가는 등록자본의 투자를 다음의 기간 안에 해야 한다.

1. 투자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2. 투자를 여러번에 나누어 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한다. 첫번째 투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등록자본의 15% 이상 되게 하여야 하며 첫번째 투자가 끝난 다음 다음번의 투자는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에 지적된 기간 안으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기간 안으로 한꺼번에 투자하지 않거나 첫번째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와 다음번의 투자기간이 끝난날

부터 30일이 지나도록 투자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기업 창설승인서와 기업등록증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외국인기업은 지대재정기관에 세무등록취소확인서와 기업등록증을 지대당국에 바치고 기업취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투자가는 등록자본의 투자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할 수 없는 경우 심사승인기관에 제기하여 투자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부구조 건설대상에 대하여서는 재투자분에 해당 한 소득세액 전액을, 그밖의 대상에 대하여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다.

재투자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았던 소득세액을 다시 바쳐야 한다.

제34조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투자할 때마다 투자검증보고서를 심사승인기관에 내야 한다. 투자검증보고서는 부기 검증사무소가 발급한다.

제 4 장 生산 및 유통

제35조 외국인기업은 영업허가증을 가져야 영업활동을 할수 있다.

영업허가증은 기업등록신청서에 밝힌 조업 예전날짜 안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영업허가증은 지대당국이 발급한다. 영업 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당국에 영업허가신청서를 내야 한다. 영업허가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투자 를 확인한 부기검증사무소에 투자검증보고서, 생산공정 및 시설물의 안전성과 환경보호를 담보하는 해당 기관의 확인 문건, 생산한 시제품의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대당국 은 영업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검토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해 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36조 경영활동은 승인받은 기본규약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생산 및 수출입계획을 자체로 만들어 지 대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7조 외국인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공화국 령 역 안에서 구입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가져올 수 있으며 자 기가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고 공화국 령역 안에 판 매할 수도 있다.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에서 생산한 물자 를 구입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 령역 안에 판 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하여

해야 한다.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에서 생산한 물자를 상업망을 통하여 직접 구입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상업망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사무용품과 경영용비품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

제38조 외국인기업이 투자목으로 들여오는 물자와 생산 및 경영활동에 쓰기 위하여 들여오는 물자, 자체로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제39조 외국인기업은 생산제품의 수출을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에 의탁하여 할수 있다.

제40조 외국인기업의 수출입 상품가격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한다(기술봉사요금 포함). 지대 안에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지대 밖의 공화국 령역 안에 판매하는 모든 상품의 가격과 지대 안에 판매하는 일부 대중필수품의 가격은 국가가격 재정기관이 정한다. 외국인기업은 탈세를 목적으로 수출입상품의 가격을 국제시장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실현하지 말아야 한다.

제41조 외국인기업은 수입한 물자의 보관 및 이용, 생산한 제품의 수출과 관련한 사항을 장부에 정상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정부기

제42조 외국인기업은 경영계산을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부기 계산규법에 따라 해야 한다.

제43조 외국인기업은 재정부기 계산을 조선원으로 하여야 한다. 재정부기 계산을 외화로 할 경우에는 해당거래시기 외화관리기관이 정한 환율로 계산된 조선원을 겹수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44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무역은행에 조선원 돈자리와 외화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공화국의 다른 은행이나 다른 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외화거래와 결제는 거래은행에 있는 자기 돈자리를 통해서만 할수 있다.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두었을 경우에는 분기마다 수불정형과 거래은행의 계산서를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45조 외국인기업의 결산연도는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이다. 외국인기업을 창설한 해의 결산연도는 기업창설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외국인기업을 동결하는 해의 결산연도는 그해 1월 1일부터 동결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46조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47조 외국인기업은 결산이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음 예비기금과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및 문화후생기금 같은 것을 조성해 놓아야 한다.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의 25%가 될 때까지 해마다 결산이윤의 5%씩 적립한다. 적립된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경영손실을 메꾸는 데만 쓸수 있다. 예비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을 적립하는 한도는 외국인기업이 자체로 정한다

제48조 외국인기업은 분기 및 연간 재정부기결산을 하여야 한다. 분기의 재정부기 결산문건은 분기 다음달 15일 안으로, 연간 재정부기 결산문건은 결산연도가 끝난 다음날부터 2개월 안으로 심사승인기관에 내야 한다. 분기 및 연간 재정부기 결산문건에는 재정상태표, 원가계산표, 생산 및 판매소득 계산표, 이윤 및 분배계산표, 손익계산표, 관리비 계산표, 고정재산 감가상각 등 계산표 같은 것이 포함된다. 연간 재정부기 결산문건은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49조 외국인기업은 기업 운영과정에 얻은 합법적 이윤과 기타 소득 및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을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50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은행 또는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

제51조 외국인기업은 재정부기 문건을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재정부기 결산서, 고정재산문건은 기업의 경영기간이 끝날때까지).

제52조 외국인기업은 필요한 경우 공화국의 재정부기 일군, 또는 다른 나라 재정부기 일군의 도움을 받아 재정부기 문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출된 비용은 투자가가 부담한다.

제 6 장 노력관리

제53조 외국인기업은 종업원을 공화국의 노력으로 채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54조 외국인기업이 공화국의 노력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 소재지의 노력알선기관과 노력채용계약을 맺어야 하며 다른 나라 사람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대외경제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55조 채용한 공화국의 노력을 계약 이행기간이 끝나기 전

에 해고하려고 할 경우에는 노력알선기관과 합의하고 계약 조건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56조 외국인기업은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57조 외국인기업의 종업원 노임기준은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노동규정에 따른다.

제58조 외국인기업의 종업원은 직업동맹조직 안에서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59조 직업동맹조직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경제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종업원들을 교양한다.
2. 종업원들에 대한 정치사상 교양사업과 과학지식 보급사업을 하며 체육 및 문예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한다.
3. 외국인기업과 노동조직, 노동보수, 노동보호와 관련한 단체 계약을 맺고 그 집행을 감독한다.
4. 외국인기업과 종업원들 사이에 발생되는 노동분쟁을 조정한다.
5. 종업원들의 권리, 이익과 관련한 문제 토의에 참가하여 돈을 주거나 권고안을 제기한다.

제60조 외국인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에 관련되는

문제를 직업동맹 대표와 합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61조 외국인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사업조건과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62조 외국인기업은 월마다 직업동맹조직에 다음과 같은 활동자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1. 종업원 500명까지는 전체 종업원 월 노임의 2%에 해당한 자금
2. 종업원 500명 이상부터 1,000명까지는 전체 종업원 월 노임의 1.5%에 해당하는 자금
3. 종업원 1,000명 이상은 전체 종업원 월 노임의 1%에 해당한 자금

제 7 장 경영기간과 해산

제63조 외국인기업의 경영기간은 기업등록증이 발급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64조 경영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경영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심사승인기관에 경영기간연장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승인기관은 경영기간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승인해 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65조 외국인기업은 경영기간을 연장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지대당국에 경영기간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6조 외국인기업이 해산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경영기간이 만기되었을 경우
2. 자연재해를 비롯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영을 더는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경영손실을 회복하기 곤란하여 투자가가 해산을 결심하였을 경우
4.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와 기업등록증이 취소되었을 경우
5.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이 선포되었을 경우

제67조 외국인기업을 해산하려 할 경우에는 기업해산신청서를 지대당국에 내야 한다. 지대당국은 접수한 기업해산신청서를 검토하고 자기가 심사승인한 대상에 대하여서는 직접 해산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며 대외경제기관이 심사승인한 대상에 대하여는 의견을 첨부하여 대외경제기관에 내야 한다. 심사승인기관이 해산을 승인한 날이 기업해산일로 된다.

제68조 외국인기업은 해산이 결정된 날부터 10일 안으로 기업해산을 공개하고 채권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 외국인기업은 기업해산을 공개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청산위원회 위원명단을 심사승인기관에 내어 합의를 받

아야 한다. 상설위원회는 합의받은 날부터 1주일 안으로 청산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70조 청산위원회에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기업의 책임자
2. 채권자의 대표
3. 심사승인기관의 대표
4. 부기검증원
5. 변호사

제71조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채권자 회의를 소집한다.
2. 기업의 재산을 넘겨받아 관할한다.
3. 채권 채무관계를 확정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4.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다.
5. 청산안을 작성한다.
6. 세금을 바치고 채권과 채무를 청산한다.
7.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처리한다.
8. 이밖에 청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제72조 청산과 관련한 비용은 해산되는 외국인기업의 남은 재산에서 먼저 지출한다.

제73조 외국인기업은 청산이 끝나기 전에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청산위원회는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 총액이 투자한 등록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4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청산보고서를 만들어 심사승인기관에 낸 다음 지대당국에 기업등록증과 경영허가증을 바치고 기업 및 채무취소 등록수속을 하며 해당 거래은행의 돈자리를 막아야 한다.

제 8 장 감독 통제 및 분쟁해결

제75조 심사승인기관은 외국인기업의 장부와 현물을 검열할 수 있다.

제76조 이 규정을 어기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를 변상시키거나 정도에 따라 외국인기업에는 1만원까지, 외국인에게는 2,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1. 등록질서를 어기었을 경우
2.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3. 투자기일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4. 수출입 법무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77조 탈세행위를 하였거나 세금을 제때에 물지 않았을 경

우에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르는 연체료와 벌금을 물린다.

제78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기업을 해산시킬 수 있다.

제79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거래에서 생기는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공화국의 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

제80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해당기관에 신소청원을 할수 있다. 신소청원을 받은 기관은 신소청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처리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해당 재판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바. 자유무역항규정*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중계무역점의 수송 및 보관과 같은 경제무역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며 자유무역항의 출입질서와 이용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자유무역항은 라진항, 선봉항, 청진항이다. 자유무역항에는 항지역과 항수역이 포함된다. 항지역에는 부두, 등대, 배수리기지, 짐의 야적장, 보관창고와 구내철길, 구내길 같은 것이 있는 지역이 속하며 항수역에는 배의 입출항수로, 가박지, 정박지 같은 것이 있는 수역이 속한다.

제 3 조 경제무역활동을 하거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배, 선원, 여객과 짐은 국적이나 출발지, 생산지에 관계없이 자유무역항에 나들 수 있다.

제 4 조 자유무역항(이 아래부터는 항이라 한다)에 나드는 배와 짐에는 관세·선박세·짐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 5 조 항에서는 배의 취급과 짐작업, 짐보관, 배수리와 같

* 1994. 4. 28, 정무원 결정 제20호

은 경제활동을 한다. 배길 안내, 짐을 싣거나 부리는 작업, 짐의 운반, 재포장, 가르기, 섞기 같은 작업과 봉사, 배 및 설비의 수리, 항시설물 및 설비의 임대, 보관창고의 운영과 같은 사업은 항관리운영기관(이 아래부터는 항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육상출입증을 발급하거나 배의 입출항승인을 하며 항 안의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 사업, 항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침몰된 배와 짐을 배 또는 짐임자의 부담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과 같은 사업은 항사업감독기관이 한다.

항에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확장, 개신하는 사업은 항건설기관이 한다.

제 6 조 외국투자가는 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창설하여 부두, 창고, 배수리소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기관과 합의한 다음 해당한 법과 규정에 따라 기업창설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 7 조 항에 나드는 배, 선원, 여객과 짐은 국경, 통행검사, 세관검사, 위생검역, 수의검역, 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중계무역짐은 해당검사, 검역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거나 검역을 한다.

제 8 조 항출입, 항에서의 경제무역활동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이 규정에 규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

당한 법과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이 규정은 항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 소라 한다)의 공민, 다른 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체, 기타 경제조직(이 아래부터는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체라 한다) 및 개인,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항 출입

제10조 항 출입은 지정된 육상 출입구와 입출항수로를 통하여야 한다. 육상출입구를 통하여 항에 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항사업감독기관이 발급한 출입증이 있어야 하며 입출항수로를 출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항사업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출항하려는 배의 임자 또는 선장은 배의 기술자료, 싣거나 부릴 짐명세서와 선원의 명단,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 배길안내지점의 도착 또는 출항예정시간을 밝힌 문건 같은 것을 항사업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제11조 입항하려는 배는 배길안내지점에 도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출항하려는 배의 선장은 해당한 지점에서 검사
검역을 받을 때마다 해당기관이 요구하는 문건을 내야
한다.

제13조 배가 입출항하거나 항 수역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배
길안내를 받아야 한다. 배길안내는 항기관의 배길안내원이
한다. 배가 입항할 때는 배길안내지점에서부터 가박지 또
는 부두까지 배길안내를 받아야 한다. 항기관의 승인이 있
을 경우에는 배길안내지점에서부터 외박까지 배길안내를
받지 않고 들어올 수 있다. 배가 출항할 때는 항가박지 또
는 부두에서부터 배길안내지점까지 배길안내를 받으며 경
우에 따라 일정한 지점까지만 배길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배길안내를 받은데에서 일어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배길
안내원이 지지 않는다.

제14조 기름수송배, 가스수송배와 같은 위험물질을 실은 배
는 항기관이 특별히 정한 수역에만 정박할 수 있다.

제 3 장 항 이용

제15조 짐을 싣거나 부리는 작업, 짐 운반, 재포장, 가르기,
섞기같은 작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항기관과 계약을 맺
어야 한다. 짐작업 계약서에는 짐의 이름, 수량, 작업의 종
류, 포장의 종류, 개당 중량, 배의 입항예정날자, 작업을

끝내는 날자와 시간, 취급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밝혀야 한다. 짐실이 작업인 경우에는 짐작업계약서에 짐모으기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

제16조 짐을 보관하려고 할 경우에는 항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짐 보관계약서에는 짐의 이름, 수량, 포장의 종류, 개당 중량, 도착날짜, 보관기관, 짐 보관과 관련한 주의사항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7조 항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요금을 물어야 한다. 요금에는 항사용료, 기름공급료, 물공급료, 짐보관료, 짐작업료, 짐운반료 같은 것이 포함된다. 항에 보관하는 짐은 10일간 가격을 받지 않는다.

제18조 배에 짐을싣고 부리는 작업은 배가 입항한 순위에 따라 한다. 부페 변질될 수 있는 짐은 배가 입항한 순위에 관계없이 먼저 싣거나 부릴 수 있다.

제19조 짐을 싣거나 부리는 과정에 배에서 생기는 로동재해에 대한 책임은 배임자가 진다.

제20조 공화국의 해당기관, 기업소는 항을 이용하는 다른 나라의 배임자 또는 짐임자의 대리사업을 하는 대리인기관을 설치하고 항안에 해당기관이나 외국인투자기업과 사업할

수 있다.

제21조 다른나라 기관, 기업체와 개인은 직접 또는 대리인 기관을 통하여 항안의 해당기관이나 외국인투자기업과 사업할 수 있다.

제22조 항의 관리운영과 설비개조에 필요한 자금은 항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보장한다.

제23조 항기관은 항관리운영을 위한 항련합위원회를 조직 운영할 수 있다. 항련합위원회에는 항기관과 항사업 감독 기관, 철도운수기관, 세관, 검사기관, 검역기관, 배 및 짐 대리인기관, 항을 이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참가한다. 항련합위원회 책임자는 항장이다. 항련합위원회는 한달에 1회이상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 항안에서는 해당 항 및 해저에 대한 조사, 연구, 관측을 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 항의 출입 및 이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4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25조 항사업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제재를 적용한다.

1. 항의 구조물, 시설물, 설비를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입은 손해를 보상시키고 정도에 따라 5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배와 짐을 취급하는데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2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3. 기름을 항수역에 흘렸을 경우에는 오염된 수역의 평방 미터당 1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4. 독이 있는 물질, 오수와 오물을 항수역에 버리거나 항 지역의 정한 장소 밖에 버렸을 경우에는 건당 2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5. 피치, 송진과 같은 가연성 물질을 태워 환경오염을 시켰거나 화재위험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건당 1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6. 배가 수속없이 출항하는 경우에는 배를 억류하고 2만원 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7. 요금을 정한기간 안에 물지 않을 경우에는 수송수단과 짐을 유치할 수 있다.
8. 해당기관의 승인없이 측심, 전파탐지, 무선기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해당기재 또는 배를 몰수한다.

제26조 항사업감독기관은 사법검찰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법검찰기관에 의해 당 문건에 의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수송수단 또는 짐을 억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억류하거나 유치하는 기관에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 위험은 억류 또는 유치를 요구한 자가 진다.

제27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28조 항운영과 이용에서 제기되는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한다.

사.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체류및거주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외국인의 체류 및 거주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외국인의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 체류 및 거주는 이 규정에 따라 한다.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도 이 규정에 따라 지대에 체류 및 거주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규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외국인 체류와 관련한 공화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외국인은 지대에 단기체류하거나 장기체류할 수 있다.

단기체류는 90일까지의 체류, 장기체류는 90일이상의 체류이다. 1년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대에 거주할 수 있다.

제 4 조 지대안의 외국인 체류 및 거주와 관련한 사업은 지대당국의 출입국사업부서(이 아래부터는 출입국사업부서라 한다)가 한다.

출입국사업부서에는 체류지 출입국사업부서가 포함된다.

* 1994. 6. 14, 정무원 결정.

제 5 조 지대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도착한 다음날부터 48시간안으로 출입국사업부서에 체류등록신청서를 내고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신청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민족별, 직장직위, 거주지, 체류하려는 곳, 기간, 체류리유 같은 것을 밝히고 려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나 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체류등록수속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를 초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대신하여 할수 있다.

제 7 조 지대안에 들어왔다가 들어온 다음날부터 48시간안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지대안의 무역항에 들어온 외국배선원, 다른 나라 고위급 대표단성원, 우리 나라 주재 다른 나라 대표부에 상주하는 외국인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다.

제 8 조 외국인 려관, 숙소, 초대소에 숙박하려는 경우에는 숙박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당 려관, 숙소, 초대소는 외국인의 숙박정형을 출입국사업부서에 그날로 알려야 한다.

제 9 조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체류등록을 한 날부터 7일안으로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 발급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에
는 출입국 사업부서에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 발급신청서
를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민족별,
직장직위, 체류하거나 거주할 곳, 기간, 체류 또는 거주 리
유 같은 것을 밝히고 최근 90일안에 모자와 안경을 벗고
찍은 사진(4×3센치메터) 4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은 17살이상된 외국인에
게 발급한다. 17살에 이르지 못한 외국인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에 동반자로 등록하여
야 한다.

제12조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못쓰게 만들었거나 잃어
버렸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못쓰게 만들었거나 잃어버린 다음날부터 5일안으
로 해당한 리유서를 출입국사업부서에 내여 발급받아야 한
다. 리유서에는 사진 2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
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0일전에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출입국사업부서에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과 초청기관의 기간연장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어린이의 출생, 본인 또는 동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와 직업 및 거주지가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그날부터 7일안으로 해당한 신청서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출입국사업부서에 내야 한다.

제15조 출입국사업부서는 출생, 사망, 변동과 관련한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안으로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대안의 외국인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문건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문건에는 려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와 공화국의 해당기관이 발급한 체류증, 거주등록증, 여행증, 관광증, 출입증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17조 지대안에 체류하다가 완전히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업부서에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바치고 해당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대안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대밖에 있는 공화국이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여행하였다가 지

대로 다시 오는 경우 유효한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입국할 수 있다.

제19조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의 발급과 그 유효기간의 연장, 출생 및 사망등록, 직업 또는 거주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중앙재정기관이 정한다.

못쓰게 되었거나 분실한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재발급 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해진 수수료의 10배에 해당한 값을 내야 한다.

제20조 지대출입국사업부서는 이 규정을 어긴 외국인에게 정도에 따라 2,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리거나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회수하며 재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21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아. 외화관리법시행규정*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을 정확히 관철하여 외화의 관리 및 리용 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이 규정은 외화거래, 외화유가증권의 발행,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 및 귀금속의 반출입과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제 3 조 이 규정은 외화를 관리하거나 리용하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서 외화를 리용하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과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기관에는 대사관, 영사관, 무역 및 국제기구 대표부 같은것이 포함되며 외국투자기업에는 외국인투자기업(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외국기업이 포함된다.

제 4 조 외화에는 전환성 있는 외화와 전환성이 없는 외화가

* 1994. 6. 27, 정무원 결정.

포함된다.

전환성 있는 외화에는 임의의 시기와 장소에서 다른 나라 화폐로 바꿀수 있는 외국화폐(은행권, 보조화폐), 외화유가증권(외화로 표시된 국가채권, 지방채권, 회사채권, 출자증권, 주권과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권), 외화지불수단(외화로 표시된 수령, 행표, 려행신용장, 송금증서, 지불지시서)과 기타 외화자금(전환성외화돈자리와 국제결제계산단위로 표시된 돈자리의 금액), 귀금속(장식품을 제외한 금, 은, 백금과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화)이 속한다.

전환성이 없는 외화에는 임의의 시기와 장소에서 다른 나라의 돈과 바꿀수 없는 민족화폐와 민족화폐로 표시된 돈자리의 금액이 속한다.

제 5 조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외화관리기관이 맡아 한다.

외화관리기관은 외화의 수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그 지출을 통제한다.

제 6 조 외화관리기관은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법집행의 방법론적지시를 만들고 외국환자은행과 외국투자은행의 외국환사업무범위를 승인하며 조선원에 대한 외국환자의 기준시세를 정한다.

외화거래, 대외결제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 조선원에 대한 외화현금교환시세와 외국환자의 결제시세, 대외결제 취급

수수료를, 외화의 예금, 저금, 대부 리자리를은 무역은행이 정한다.

제 7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국환자업무를 하는 전문은행은 무역은행이다.

무역은행밖의 다른 은행도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환자 업무를 할수 있다.

제 8 조 정부들사이에 맺은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에 따르는 은행들사이의 지불협정은 무역은행이 맺는다.

제 9 조 공화국령역안에서는 외화현금을 유통시킬 수 없다.
외화현금은 지정된 은행 또는 외화교환소(외화교환대리소 포함)에서 조선원과 바꾸어써야 한다.
외화교환소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 곳에 내울 수 있다.

제10조 외화에 의한 결제는 외화 바꾼 조선원돈자리(이 아래부터는 외화원돈자리라 한다)를 통하여 한다.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 은행에 있는 외화돈자리를 통하여 거래에 따르는 결제를 할수 있다.

제11조 공화국령역안에서 외화를 팔고사거나 저금 또는 예금하며 저당잡히는것과 같은 외화거래는 외국환자업무를 하는 은행을 통해서만 할수 있다.

제12조 조선원과 교환할 수 있는 화폐와 환자거래에 리용할 수 있는 외화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다.

외화관리기관이 정한 외화밖의 다른 외화로 거래하려고 할 경우에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공화국령역안에서 생산 및 봉사활동 같은 것을 하여 얻은 외화와 로동보수로 얻은 외화, 다른 나라로부터 송금 하여왔거나 가지고 온 외화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그것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제14조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외화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외화를 관리하는 은행도 거래기관, 기업소의 외화리용에 대하여 감독통제할 수 있다.

제 2 장 외화의 리용

제15조 외화는 무역거래, 무역밖의 거래, 자본거래, 외화를 사거나 파는 것과 같은 거래에 리용할 수 있다.

무역거래에는 상품의 수출입과 그와 직접관계되는 거래가 포함된다.

무역밖의 거래에는 려비 또는 리자, 배당금, 경비, 유지비와 같은 지불거래, 봉사제공과 관련한 거래, 증여, 상속, 보증과 관련한 거래 같은 것이 포함된다.

자본거래에는 예금, 신탁, 대부, 채무보증, 외화지불수단 또는 채권의 매매, 증권의 발행 또는 취득, 부동산취득 같은 거래가 포함된다.

제16조 경제거래에 따르는 자금결제는 거래은행에 개설된 조선원 또는 외화원, 외화돈자리를 통하여 무현금으로 한다.

조선원돈자리에는 공화국령역안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조선원을 넣는다. 이 돈자리에 있는 돈은 외화로 전환할 수 없다.

외화원돈자리에는 전환성외화를 조선원으로 전환한 돈을 넣는다.

이 돈자리에 있는 돈은 임의의 시기에 요구하는 외화로 전환할 수 있다.

외화돈자리에는 지정된 외화를 화폐별로 넣을 수 있다. 이 돈자리에 있는 돈은 임의의 시기에 요구하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 또는 외화로 지불할 수 있다.

조선원, 외화원, 외화돈자리의 잔고에 대하여서는 리자를 계산하여주지 않는다.

제17조 대외경제거래에 따르는 외화결제는 신용장, 송금, 대금청구 및 지불위탁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18조 기관, 기업소는 거래은행에 외화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화원돈자리에는 기관, 기업소가 번 외화를 조선원으로 전환하여 넣으며 외화의 지불도 외화원돈자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19조 공화국령역안에 상주하는 외국기관은 무역은행에 조선원 또는 외화원돈자리, 외화돈자리를 둘 수 있다.

조선원돈자리에는 두 나라사이의 합의에 따라 공하국령역안에서 받은 조선원을 넣으며 이 조선원은 지정된 항목에만 쓸수 있다.

외화원돈자리 또는 외화돈자리에는 외국기관 유지비로 보내온 외화를 조선원으로 전환하여 넣거나 외화그대로 넣으며 그것을 현금 또는 무현금으로 쓸수 있다.

제20조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무역은행이나 공화국령역안의 다른 은행에 조선원 또는 외화원돈자리, 외화돈자리를 둘 수 있다.

조선원돈자리에는 공화국령역안에서 경제활동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조선원을 넣으며 이 조선원은 지정된 항목에만 쓸수 있다.

외화원돈자리에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을 넣으며 이 자금은 공화국령역안에서 외화 또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 거래에 쓸수 있다.

외화돈자리는 다른 나라 또는 공화국의 무역기관이나 외국

인투자기업들사이에 이루어진 채권채무관계를 결제하는데
리용할 수 있다.

제21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합의하
는데 필요한 문건을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22조 외국투자기업은 외화와 바꾼 조선원 또는 외화를 은
행에 외화원 혹은 외화예금돈자리를 두고 예금할 수 있으
며 공화국공민 및 외국인(이 아래부터는 개인이라 한다)
은 은행에 외화와 바꾼 조선원이나 외화를 외화원 저금돈
자리 또는 외화저금돈자리를 두고 저금할 수 있다.
은행은 외화의 예금 또는 저금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정해진 리자를 계산하여 준다.

제23조 돈자리를 개설하려는 기관, 기업소와 외국투자기업
은 은행돈자리개설 신청서를 돈자리를 개설하려는 은행에
내야 한다.

은행돈자리 개설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은행
거래에 쓰는 도장표와 기업창설승인서사본, 외화관리기관
이 발급한 돈자리 개설 승인서사본 같은 것을 첨부하여
야 한다.

기관, 기업소는 하나의 대외결제은행에만 돈자리를 개설하
여야 한다.

제24조 은행은 돈자리에 있는 자금을 돈자리관리자의 요구에 의해서만 낼 수 있으며 돈자리관리자는 돈자리 잔고법 위안에서만 자금지출을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은행과 돈자리관리자사이에 일정한 돈자리 잔고한도를 초과하여도 결제해줄 데 대한 계약이 맺어졌을 경우에는 그 한도안에서 잔고를 초과하여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돈자리잔고초과지불액에 대하여 정해진 리자를 받는다.

제25조 은행은 돈자리에서 일어난 거래의 당일 입출금통지서를 다음 업무일까지, 그달에 있은 거래의 월계시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돈자리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돈자리관리자는 받은 입출금통지서를 다음 업무일까지, 월계시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5일안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해당 은행에 알려야 한다.

제26조 기관, 기업소는 번 외화를 해당 거래은행에 입금시켜야 하며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없이 외화를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예금하거나 기관, 회사, 기업체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에게 맡겨둘 수 없다.

제27조 국가로부터 외화를 받아쓰는 기관, 기업소는 외화를 쓰려고 할 경우 외화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체의 외화수입으로 계획에 예견된 외화지출을 보장하게 되여있는 기관, 기업소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없이 자기가 번 외화범위안에서 해당 거래은행을 통해서만 외화를 쓸수 있다.

제28조 은행은 외화지출계획과 외화보유액 범위안에서 외화를 지출하여야 한다.

제29조 기관, 기업소는 다른 나라와의 경제거래에서 생기는 재계산차액, 거래잔액, 수수료, 체선료, 위약금, 해약금과 같은 외화수입금을 그 수입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안으로 거래은행에 넣어야 한다.

제30조 기관, 기업소는 다른 나라에서 벌었거나 쓰다남은 외화가운데서 전환성외화는 거래은행에 넣으며 비전환성 외화는 해당 나라에 있는 공화국의 대표기관에 맡기고 그 보관증을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대표기관에 맡긴 보관금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쓸 수 있다.

제31조 비무역외화수입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는 벌어 들인 외화를 해당거래은행을 통하여 무역은행에 넣어야 한다.

제32조 기관, 기업소는 비무역외화를 지정된 항목과 기준법

위안에서만 써야 한다.

비무역외화를 쓰려고 할 경우에는 쓰려는 외화에 해당하는 조선원을 해당 은행에 넣어야 한다.

제33조 기관, 기업소는 다른 나라에 나가 외화를 리용하였을 경우 그 정형을 견별로 정해진 기간안에 외화를 내준 은행에 가서 총화하여야 한다.

제34조 기관, 기업소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지방채권, 회사채권, 출자증권 같은 외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35조 다른 나라에 있는 공화국의 대표기관은 정한 항목과 한도안에서만 외화를 써야 한다.

제36조 다른 나라에 있는 공화국의 대표기관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이 없이 기관, 기업소의 외화를 보관하거나 리용 할 수 없다.

제37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령역안에 돈자리를 둔 은행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한 외화를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넣으려는 경우에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외국투자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공화국의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제39조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밑에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를 할 수 있다.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를 하는 은행은 비거주자로부터 정기예금, 통지예금과 같은 예금을 받아들이거나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에게 대부를 주며 약속수형을 발행하거나 증권투자를 할 수 있다.

제40조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둔 외국투자기업은 분기마다 분기가 끝난 다음날부터 30일안에 그 돈자리에서의 외화 수입, 지출과 관련한 문건을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41조 외국투자기업은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년간 외화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표, 외화수지보고표를 다음해 2월안으로, 다음해 외화수지예산서를 그전해 11월안으로, 분기외화재정상태표와 외화수지보고표를 다음분기 첫달안으로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42조 외국인은 다른 나라에서 송금하여 왔거나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우리 나라 은행에 팔거나 저금할 수 있다.

공화국공민은 외화와 바꾼 조선원으로 2,000원에 해당한 외화만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상되는 외화현금은 저금하거나 외화와 바꾼 조선원으로 가지고 있어

야 한다. 외화교환증명서나 외화현금지불문건에 지적된 범위안의 외화현금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제43조 공화국공민은 송금하여왔거나 저금한 외화를 외화현금으로 찾을 수 없다.

저금한 외화를 외화와 바꾼 조선원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그 시기의 외화교환시세에 따라 내준다.

송금하여왔거나 예금 또는 저금한 외화를 다른 나라에서 쓰기 위하여 외화현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출국증명문건을 확인하고 지불해 줄수 있다.

제44조 공화국령역을 떠나는 외국인의 외화와 바꾼 조선원을 다시 외화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에 출국증명문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5조 외화의 바꾼 조선원은 지정된 사업, 봉사 부문에서만 쓸수 있다.

개인들사이에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을 팔고 살 수 없으며 기관, 기업소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을 쓸수 없다.

제 3 장 외화의 반출입

제46조 외화는 제한없이 공화국령역안에 들여올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 개인은 은행이 발행한 외화교환증명문건, 현금지불문건이나 입국할때 세관에 신고한 범위안에서 외화현금을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48조 외국투자가는 기업을 하여 얻은 리윤과 소득금,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을 공화국령역밖으로 세금없이 내갈수 있다.

제49조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외화자금을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1. 생산용 원료, 자재 및 설비 같은것을 수입하기 위한 자금
2. 경영용물자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3. 다른 나라에 설치한 지사,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의 경비자금
4. 다른 나라의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
5. 이밖에 따로 정한 자금

제50조 공화국령역밖으로 외화를 송금하려고 할 경우에는 송금신청서를 거래은행에 내야 한다.

송금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송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 문건, 채권자의 대금청구서 같은 증빙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 공화국령역안에서 발행한 회사채권, 출자증권과 같

은 외화유가증권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
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외화유가증권은 승인을 받지 않
고 내갈수 있다.

제52조 공화국의 은행이 발행하였거나 판매한 려행행표, 려
행신용장 같은 것은 해당한 증명문건이 없이 공화국령역밖
으로 내갈수 있다.

제53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외화교환증명문건이나 세관
신고없이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 외화지불수단을 공화국
령역밖으로 가지고 나갈수 있다.

제54조 귀금속(국가가 수출하는 귀금속과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귀금속은 제외)을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가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화국령역안에
서 구입한 장식품을 제외한 귀금속제품은 판매자가 발급한
증명문건에 따라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55조 외국인은 로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60
%까지를 공화국령역밖으로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갈 수
있다. 60%를 넘는 금액을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가려는
경우에는 외화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 공화국정부와 다른 나라사이에 상대방 화폐를 반출

입할데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외화를 반출입한다.

제 4 장 제 재

제57조 외화관리질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업무를 중지시키고 다음과 같은 제재를 준다.

1. 승인받은 업종밖의 외국환자업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얻은 영업수익금을 몰수하거나 5,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외화결제, 외화대부, 외화양도 질서를 어겼을 경우와 국가가 정한 질서밖에서 외화 현금으로 물자를 거래하였을 경우에는 결제 또는 대부, 양도한 외화와 거래한 물자를 몰수하거나 2,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3. 외화를 밀매하였을 경우에는 밀매한 금액을 몰수한다.
4.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외화를 예금 또는 보관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10일안으로 몰수하여 국가에 바치며 해당 예금 또는 보관액의 50%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5. 이밖의 외화관리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제재는 이 조의 류사한 위반행위에 따라 한다.

제58조 외화관리질서를 어겨 국가에 외화적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외화로 보상시키고 손해액의 50 %까지 벌금을 물린다.

제59조 벌금과 몰수금지불을 거절하였거나 지정된 기간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거래은행에 있는 기관, 기업 소 돈자리에서 강제로 회수할 수 있다.

제60조 기관, 기업소와 공민에게 물리는 벌금은 벌금과 관련한 법규법에 따라 부과한다.

제6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과 이 규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자. 토지임대법 시행규정*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공화국령역안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다른 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외국인과 공화국령역의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토지를 임차할 수 있다.

제 3 조 임대한 토지의 소유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다.

토지를 임차한 자(이 아래부터는 토지임차자라 한다)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만을 가진다.

땅속 또는 물밑에 있는 천연자원, 매장되어 있거나 은닉된 문화유적유물, 귀금속과 같은 가치물을 토지리용권에 속하지 않는다.

제 4 조 토지임대와 관련한 사업은 국토관리기관이 한다.

국토관리기관에는 중앙국토관리기관과 지방국토관리기관(도, 시, 군 국토관리기관)이 속한다.

* 1994. 9. 7, 정무원 결정.

중앙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대차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하며 도국토관리기관이 제기한 토지임대계획을 심사 승인 한다.

도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차자와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리행하며 시, 군 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대와 관련한 등록 사업을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토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시행정경제위원회(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가 임대한다.

제 5 조 합영, 합작기업에 토지를 출자하려는 공화국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는 도국토관리기관 또는 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토지임대기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토지리용권을 가질수 있다.

기관, 기업소가 합영, 합작 기업에 출자한 토지의 리용권은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제 6 조 토지의 임대기간은 토지용도와 투자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최고 50년을 넘을수 없다.

제 7 조 임차한 토지리용권은 토지임차자의 재산권으로 한다.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기업에 투자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저당할 수 있다.

제8조 토지임차자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토지임차자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토지를 관리리용한다.

제 2 장 토지의 임대방법

제9조 토지의 임대는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차희망자 사이에 협상의 방법으로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 입찰과 경매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에 의한 토지임대는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차희망자사이에 임대료, 투자 및 개발 조건을 비롯한 임대차조건을 직접 합의한 다음 토지임대차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한다.

제11조 토지임대기관은 토지임차희망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위치와 면적, 지형도
2. 토지의 용도
3. 건축면적, 토지개발과 관련한 계획
4. 건설기간, 투자의 최저한계액

5. 환경보호, 위생방역, 소방과 관련한 요구조건
6. 토지임대기간
7. 토지의 개발상태
8. 이밖의 필요한 자료

제12조 토지임차희망자는 협상을 통하여 토지를 임차하려고 할 경우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받은 토지자료를 연구한 다음 토지리용신청서를 토지임대기관에 내야 한다.

제13조 토지리용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기업창설 또는 거주승인을 확인하는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임차자의 이름과 국적 또는 기업의 명칭, 법정대표
2. 임차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3. 토지임차자의 법정주소
4. 토지의 용도
5. 건설총투자액
6. 건설완공기일
7. 임차기간
8. 임대료와 그 지불화폐 및 지불방식
9. 이밖의 필요한 사항

제14조 기업창설승인을 확인하는 문건에는 지대당국 또는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의 심사승인을 받은 기업창설승인서

또는 그 사본이 포함된다.

거주승인을 확인하는 문건에는 거주지 출입국사업부서의 거주 등록 또는 승인확인서가 포함된다.

제15조 기업을 창설하지 않고 개발할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 하려는 희망자는 토지리용신청문건에 투자승인확인서와 자금 담보 또는 신용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토지리용신청문건을 받은 토지임대기관은 토지리용 신청문건을 20일안으로 심의한 다음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 토지 임대기관과 임차희망자는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제되어야 한다.

1. 토지 위치, 면적
2. 임대차 목적과 기간
3. 토지의 용도, 리용범위
4. 총투자액, 건설투자액
5. 단계별 투자액
6. 건설기간(단계별 건설계획, 건설완공기일)
7. 임대료 및 사용료와 그 지불방법
8. 특혜조건
9. 제재 및 분쟁해결방법

10. 이밖의 필요한 사항

제18조 토지의 입찰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규모가 크거나 주요한 개발대상의 토지임대에 적용할 수 있다.

입찰에 의한 토지임대는 토지임차희망자들이 지정된 기간 안에 임대료, 투자 및 개발조건을 비롯한 임차조건을 토지 임대기관에 비공개적으로 제출하게 하며 토지임대기관이 입찰에 참가한자(이 아래부터는 응찰자라 한다)들 가운데서 유리한 임차조건을 제기한 임차자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9조 토지의 입찰은 지대당국이 조직한다.

지대당국은 토지의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입찰문건의 작성 및 배포
2. 입찰과 관련한 상담
3. 응찰자의 자격심사
4. 개찰
5. 입찰심사조직과 락찰자의 선정
6. 락찰통지서의 발송
7. 이밖의 입찰과 관련한 업무사업

제20조 토지의 입찰문건에는 입찰장소, 입찰 및 개찰날자, 입찰절차, 입찰보증금과 같은 것을 밝힌 입찰안내서와 토

지입찰서, 토지임대차 계약서 초안, 토지자료와 같은 문건이 포함된다.

제21조 토지의 입찰은 출판보도수단을 통하여 응찰자를 모집하는 공개입찰의 형식으로 하거나 입찰조건에 적합하고 인정되는 대상에 토지입찰문건을 개별적으로 보내여 응찰자를 모집하는 지명입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 응찰자가 토지의 입찰에 참가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토지입찰문건을 산다.
2. 토지입찰문건을 연구한 다음 토지입찰서에 해당한 내용을 써 넣는 방법으로 입찰서를 작성한다.
3. 입찰안내서에 정한 기일안에 입찰보증금을 낸다.
4. 기업책임자의 도장을 찍은 토지입찰서를 봉인한 다음 입찰함에 넣거나 정한 장소에 보낸다.

제23조 입찰함에 넣었거나 정한 장소에 보낸 입찰서는 다시 꺼내거나 찾을 수 없다.

입찰서의 내용을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입찰서의 접수 기간이 끝나기전에 변경시킨 입찰서를 입찰함에 넣거나 지정된 장소에 보내고 원래의 입찰서를 폐기시킨다는 서면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지대당국은 응찰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가한 장소에

서 입찰서를 공개적으로 개찰하며 응찰자들이 제기한 입찰가격을 공개하고 예비당선자들을 발표한다.

제25조 지대당국은 경제실무일군과 전문가, 법률가, 공증인을 비롯한 관계부문의 성원들을 망라하여 토지의 입찰심사위원회를 조직한다.

제26조 토지입찰심사위원회는 입찰서를 개찰한 날부터 20일안으로 예비당선자들이 제기한 입찰가격과 개발계획, 자산과 신용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락찰자를 결정한다. 평가결과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락찰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체 입찰서를 부결시킬 수 있다.

제27조 토지임대기관은 입찰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락찰자에게 락찰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락찰되지 못한 응찰자에게는 락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안에 해당한 사유를 통지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준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에 대한 리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제28조 락찰자는 락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토지리용증을 발급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체결을 연기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한 기간이 끝나기 10일전에 토지임대기관에 신청하여 30일간 연기받을 수 있다.

락찰자가 정한 기간안에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임차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락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제29조 토지의 경매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부동산개발용지, 금융, 상업, 관광 및 오락 용지와 같은 경쟁성이 강한 토지의 임대에 적용할 수 있다.

경매에 의한 토지의 임대는 정한 시간과 장소에 임차희망자들을 모여놓고 공개적으로 임차경쟁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0조 토지경매의 조직은 토지임대기관이 한다.

토지임대기관은 경매하는 토지의 면적, 위치, 임대차계약의 기본조건, 토지의 경매 장소와 날자, 절차, 보증금 같은 것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 토지의 경매에 참가하려고 할 경우에는 자금 및 투자 능력을 확인하는 문건을 구비하고 정한 보증금을 낸 다음 경매참가번호를 받는다.

제32조 토지의 경매는 기준가격을 공포하고 그에 기초하여 응찰자들 사이의 가격경쟁을 붙이는 방법으로 한다.

경매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응찰자가 락찰자로 된다.

제33조 경매를 통한 토지임대차계약은 락찰되는 날부터 7일안에 맺어야 한다.

제34조 토지임대기관은 락찰되지 못한 응찰자들이 보증금을 경매가 끝나는 차제로 돌려주어야 한다.

제35조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5일안으로 임대료의 10%에 해당한 금액을 리행보증금으로 토지임대기관에 내야 한다.

리행보증금은 리자를 계산하지 않으며 보증기간이 끝났을 경우 임대료의 지불에 리용할 수 있다.

토지임대기관은 임차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한 기간안에 리행보증금을 물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리행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다른 임차희망자와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 경우 락찰자의 경매보증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제36조 토지임대기관은 토지임차자가 계약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물었을 경우 토지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 토지리용증을 발급받은 임차자는 시, 군 국토관리기관에 토지리용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은 그것을 등록한 때로부터 임차자에게 넘어간다.

토지임차자는 리용권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토지를 리용

할 수 없다.

제38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차계약에 정한 용도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정한 토지용도를 변경시키려는 토지임차자는 토지
임대기관에 용도변경내용, 투자규모변경내용 같은것을 밝
힌 토지용도변경승인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
를 변경하는 보충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39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리용권을 등록할 때 중앙재정기관
이 정한 등록수수료를 내어야 한다.

제 3 장 토지리용권의 양도와 저당

제40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
한 리용권을 토지임대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저당할 수 있다.

토지리용권의 양도에는 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이 포함
된다.

제41조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양도하거나 저당하는 기간
은 토지임대차계약에 정해진 기간안에서 남은 리용기간을
넘을수 없다.

양도받은 토지의 리용기간을 연기하려고 할 경우에는 토지

임대기관으로부터 토지를 다시 임차하여야 한다.

제42조 판매, 재임대, 증여를 통한 토지리용권의 양도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임차하였거나 토지임차자로부터 판매, 교환 형식으로 양도받은 토지의 리용권이여야 한다.
2. 토지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료 전액을 문 토지의 리용권이여야 한다.
3. 토지임대차계약에 지적된 기한과 조건에 따라 투자와 건설을 한 토지의 리용권이여야 한다.

제43조 토지리용권을 판매, 증여, 상속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 임대차계약에 밝힌 토지리용과 관련한 임차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도 받은자에게 넘어간다.

토지임대기관과 맺은 토지임대차계약에 지적된 모든 사항은 양도계약에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제44조 토지리용권은 토지에 있는 건축물, 기타 부착물의 리용권 또는 소유권과 분리시켜 양도할 수 없다.

제45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값을 받고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판매는 임차자가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값을 받고 제3

자에게 넘기는 행위이다.

제46조 토지리용권을 판매하려는자는 구매자와 양도(매매) 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다음 토지임대기관에 토지리용권 판매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토지리용권판매신청서에는 토지의 면적, 위치, 용도, 임차기간 및 리용한 기간, 판매목적, 판매가격, 임대료 및 사용료 납부정형, 구매자의 이름과 소속, 기업의 업종 같은 것을 밝히고 임대차계약서와 양도(매매) 계약서사본, 구매자의 투자능력을 확인하는 확인서 또는 신용답보서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 토지임대기관은 토지리용권판매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안으로 검토한 다음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9조 토지임대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지리용권판매 신청을 부결할 수 있다.

1. 토지리용권의 양도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2. 토지리용권양도(판매) 계약서가 임대차계약서와 이긋나게 작성되었을 경우
3. 구매자의 투자 및 경영 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가격을 비롯한 매매조건이 공정하지 못할 경우

제50조 토지리용권을 판매하였거나 구매하였을 경우 토지리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해당 시, 군 국토관리기관에 토지리용권 취소 및 명의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자는 토지리용권의 취소 등록을 하며 구매자는 토지리용권 명의변경등록을 한다.

토지리용권의 취소 및 명의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토지리용권의 매매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51조 토지임차자가 토지리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토지임대기관은 그것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토지임차자는 이미 구매자에게 제기한 판매조건을 토지임대기관의 구매에 불리하게 수정제기할 수 없다.

제52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를 재임대할 수 있다. 토지재임대는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그 리용권을 소유한 임차자가 임차한 토지를 개발하여 다시 제3자에게 리용권을 빌려주는 형식의 토지양도이다.

제53조 토지의 재임대는 임대차계약에 토지를 개발한 다음 재임대를 허용한 토지에 한한다.

제54조 토지를 재임대하려는 자는 토지의 양도(재임대) 계약을 맺고 토지임대기관에 토지재임대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재임대신청서에는 재임대하려는 토지의 면적, 위치,

용도, 임대기간, 임대료, 임대받는자의 이름 또는 기업명
칭, 업종 같은 것을 밝히 임대차계약서사본, 양도(재임대)
계약서사본, 토지를 재임대 받는자의 투자능력을 확인하는
문건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 토지임대기관은 토지재임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검토한 다음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
고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6조 토지를 재임대한자와 재임대받은자는 시, 군 국토관
리기관에 재임대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토지재임대계약은 등록수속을 끝낸 순간부터 효력을 가
진다.

제57조 토지를 재임대한자는 재임대받은자가 계약에 맞게
임대물을 관리리용하도록 요구하며 정한 임대료를 받을 권
리를 가진다.

제58조 토지를 재임대한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재임대한 토지의 보호, 류실방지, 류실된 토지의 복구
사업을 하여야 한다.
2. 재임대한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의 수리 및
보수 사업을 하여야 한다.
3. 재임대받은자의 정상적인 토지리용을 방해하는 봉락,
침몰과 같은 재해요소의 방지 및 제거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59조 토지를 재임대받은자는 토지양도(재임대) 계약에 따라 토지를 리용할 권리를 가지며 토지를 재임대한자가 이 규정 제58조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기 부담으로 그 의무를 수행하고 해당한 비용을 임대료에서 삭감하거나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 토지를 재임대받은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토지양도(재임대) 계약에 정한대로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2. 토지양도(재임대) 계약의 요구에 맞게 토지를 리용하여야 한다.
3. 토지의 리용권을 재양도할 수 없다.
4. 토지재임대자의 승인없이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에 개조 또는 해체하지 말아야 한다.
5. 토지를 정히 다루어야 하며 그에 손상을 주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6. 임차기간이 끝난 임대물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61조 토지재임대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토지재임대취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2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기관, 기업소나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증여할 수 있다.

증여는 토지임차자가 토지리용권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넘기는 형식의 양도이다.

제63조 토지리용권을 증여하려는자는 증여문건을 작성하고 토지임대기관에 토지리용권증여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임대기관은 토지리용권증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에 검토한 다음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4조 토지리용권을 증여하는자와 증여받는자는 증여한 토지리용권의 취소 및 명의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증여받은 토지리용권의 취소 및 명의변경등록질서의 토지리용권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와 같다.

토지리용권명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기관의 증여세납부 확인서를 내야 한다.

제65조 증여하는 토지리용권은 명의변경등록을 한 순간부터 증여받은자에게 넘어간다.

토지리용권의 명의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증여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66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상속할 수 있다.

토지리용권의 상속은 토지리용권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

우 법에 의하여 정해진 상속자 또는 유언이나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상속자에게 토지리용권을 무상으로 넘기는 형식의 양도이다.

제67조 토지리용권을 상속받으려는자는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거주지의 신분등록기관 또는 재판소가 발급한 상속확인서를 해당 거주지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토지임대기관에 내야 한다.

제68조 토지임대기관은 상속확인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으로 검토하고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9조 토지리용권을 상속받으려는자는 상속시키는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안에 상속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상속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리용권은 자동적으로 토지임대기관에 넘어간다.

제70조 토지리용권을 상속받은자는 시, 군 국토관리기관에 토지리용권의 명의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등록기관에 토지임대기관의 상속확인문건, 재정기관의 상속세납부확인서 같은 문건을 내야 한다.

제71조 토지리용권을 상속받은자는 임대차계약에 정한 토지임차자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넘겨받는다.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키려는 경우에는 토지임

대기관과 보충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72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저당할 수 있다.

토지리용권의 저당은 임차자가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부의 상환담보로 세우는 행위이다.

토지리용권을 저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저당된다.

제73조 토지리용권을 저당하려고 할 경우에는 저당하는자(이 아래부터 저당자라 한다)와 저당받는자(이 아래부터 저당권자라 한다)는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맞게 토지 저당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자에게 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양도계약서 사본, 토지리용증사본, 토지의 실태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4조 토지저당계약을 맺은 저당권자와 저당자는 저당계약을 맺은날부터 10일안으로 시, 군 국토관리기관에 토지리용권저당등록을 하여야 한다.

토지저당권은 등록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75조 토지리용권의 저당자는 저당기간에도 토지임차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토지저당자가 저당한 토지리용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76조 저당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저당받은 토지리용권을 처분할 수 있다.

1. 저당자가 기한이 되도록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저당자가 저당기간안에 기업을 해산하거나 파산당한 경우
3. 저당자가 저당기간안에 사망하였으나 상속자가 없을 경우와 상속자가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경우

제77조 저당받은 토지리용권을 처분하려는 저당권자는 토지임대기관에 저당물처분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당물처분신청서에는 토지의 면적, 위치, 용도, 저당자와 저당권자, 저당기일, 채무액, 저당물의 체권상환담보범위와 처분형식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저당물의 체권상환담보범위는 원금상환, 리자상환의 지연에 의한 손해배상과 저당물의 평가비용, 경매비용과 같은 저당권실시비용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

제78조 토지임대기관은 저당물처분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안으로 검토한 다음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토지저당계약내용에 맞지 않거나 이 규정 제76조에 정한 저당물의 처분조건이 명확치 못할 경우에는 저당물처분신

청을 부결할 수 있다.

제79조 저당물의 처분은 경매의 방법으로 할수 있으며 저당권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저당권자들의 협의하여 처분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저장물을 처분하여 얻은 자금에서 기타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상환받는다.

저당권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저당권을 국토관리기관에 등록한 순위대로 상환받는다.

제80조 저당권자가 처분한 저당물을 취득한자는 공중기관의 공중을 받은 다음 시, 군 국토관리기관에 명의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1조 저당권자가 처분한 토지리용권을 취득한자는 임대차 계약에 맞게 토지를 리용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토지임대 기관과 보충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82조 토지리용권에 대한 저당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멸된다.

1. 저당자가 채무를 상환하였을 경우
2.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스스로 포기하였을 경우
3. 저당권자와 저당자가 합의하여 채무상환을 다른 재산으로 대치하는 경우

제83조 저당권자와 저당자는 저당권이 소멸된 날부터 10일 안으로 토지리용권저당취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4조 토지리용권의 양도 또는 저당과 관련한 토지리용권의 취소 및 명의변경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재정기관이 정한 등록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제 4 장 토지의 임대료와 사용료

제85조 토지임차자는 토지임대기관에 토지임대료를 물어야 한다.

토지임대료는 토지리용권의 값이다.

제86조 협상을 통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임대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기준임대료에 기초하여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차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7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입찰과 경매를 통하여 임대하는 경우 입찰 및 경매기준가격은 지대당국이 정하며 락찰자가 제기한 가격을 임대료로 한다.

제88조 토지임대기관은 개발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에 토지개발비를 포함시켜 받아야 한다.

토지개발비에는 토지정리와 도로건설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 시설건설에 지출된 비용이 포함된다.

제89조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안에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물어야 한다.

장려부문이나 임대료가 2,000만원이상되는 토지개발부문의 임차자는 토지임대기관과의 합의밑에 임대료를 5년안에 분할하여 물수 있다. 이 경우 미납금에 해당한 리자를 물어야 한다.

토지임대료미납금에 대한 리자를은 토지임대기관과 임차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

제90조 토지임대료를 정한 기간안에 물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날부터 매일 미납금이 0.1%에 해당한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를 련속하여 50일간 물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불한 임대료를 되돌려주지 않는다.

제91조 임차한 토지의 리용자는 소재지재정기관에 해마다 정한 토지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토지사용료는 국가소유의 토지를 리용한 것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료금이다.

제92조 토지사용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토지사용료는 4년동안 변동시키지 않으며 변동시키는 경우에는 변동폭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93조 토지사용료의 납부자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자
2. 판매를 통하여 토지리용권을 넘겨받은 자
3. 토지를 재임대한 자
4. 합영 또는 합작 기업(토지를 출자몫으로 하였을 경우에 한함)

제94조 토지사용료는 토지리용권을 등록한 날부터 계산하며 해마다 12월 20일까지 지불하여야 한다.

토지사용료를 지불할 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달분에 해당한 사용료에 사용한 달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사용료를 계산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제95조 토지임대기관은 장려부문과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투자하는 대상에 대하여 투자 규모와 내용, 경제적효과성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10년까지 덜어주거나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제 5 장 토지리용권의 반환

제96조 임대기간이 끝난 토지리용권은 토지임대기관에 자동적으로 반환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무상으로 반환된다.

40년이상 임차한 토지에 임대기간이 끝나기 10년안에 준

공한 건설 총투자액 2,000만원이상되는 기본건물에 대하여
여서는 해당한 잔존가치를 보상하여 줄수 있다.

제97조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났을 경우 토지리용증
을 토지임대기관에 반환하고 토지리용취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8조 토지임대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토지임대기관에 토지리용연기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임대기관은 토지리용연기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
일안에 검토한 다음 토지리용연기를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9조 토지리용연기신청서에 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개
발정도와 연기하려는 리유, 기일, 투자계획 같은것을 밝혀
야 한다.

토지리용기간을 연기하여 토지를 새로 개발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토지리용연기신청서에 투자의향
서와 용도변경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0조 토지리용연기를 승인받은 임차자는 토지임대기관
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맺고 해당한 임대료를 문 다음
토지리용증을 재발급받으며 토지리용권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1조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났을 경우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안으로 토지임대기관이 넘겨받지 않는 건축물, 설비와 임시건물, 저장탱크, 창고, 구축물, 야적장, 구내철길과 같은 부대시설물을 자기 비용으로 철거하고 토지를 정리하여야 한다.

임차자가 토지를 정한 기간안에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 는 토지임대기관에 그 사유를 알리고 토지정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비용을 토지임차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제102조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은 임차기간안에 취소되지 않는다.

토지임대기관은 자연재해를 비롯한 불가항력적사정이 있거나 공공리익을 위하여 도시건설계획을 변경시켜야 할 요구가 제기되었을 경우 임대한 토지의 리용권을 기한전에 법적 수속을 걸쳐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임대기관은 토지리용권을 취소하기 6개월전에 토지 임차자에게 토지리용권의 취소리유, 토지의 위치와 범위, 취소기일 같은 것을 통지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제103조 토지임대기관은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토지리용권을 취소하는 경우 임차자에게 같은 조건의 토지로 교환해주거나 해당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

토지를 교환해주는 경우 토지임대기관과 임차자는 리용권

을 취소하는 토지와 교환한 토지의 값을 합의결정하여 차액을 청산한 다음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맺어야 하며 임차자는 토지리용증을 다시 발급받고 해당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6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104조 토지를 리용증이 없이 리용하거나 리용권을 등록하지 않고 리용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토지에 있는 시설물을 회수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토지를 원상복구시키며 300원부터 1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제105조 토지의 용도를 승인없이 변경시켰거나 임차한 토지 면적을 비법적으로 늘렸을 경우에는 기한을 주어 고치게 하고 4,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제106조 토지리용권을 승인없이 양도 또는 저당하거나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양도 또는 저당처분을 무효로 하고 정도에 따라 토지 리용권 또는 저당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7조 토지임대차계약에 정한 기간안에 투자하지 않거나 개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계약의무를 리행하도록 재촉하며 그래도 집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한 기한

이 지난 다음날부터 매일 투자를 미달한 액의 1%에 해당하는 별금을 물린다.

정한 기한안에 투자하여야 할 투자액의 50%을 투자하지 못하였거나 토지를 계약된대로 개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지리용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8조 토지임차자가 받은 제재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제재를 준 기관의 한급 높은 기관에 신소청원하거나 해당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09조 토지의 임대차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해결하며 당사자들이 합의한 데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